200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결과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목 차 】

제 1장 적용기준(토목,건축,설비)……1

제 2장 가설공사(토목,건축,설비)……3

제 5장 기초공사(토목,건축) ……136

제 6장 철근콘크리트공사(토목,건축) ……149

제10장 기계화시공(토목)……163

제11장 기계경비산정(토목)……166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공사(토목)……169

제16장 궤도공사(토목)……174

제20장 지반공사(토목)……177

제13장 방수공사(건축,토목) ……179

제 3장 위생 및 소화설비공사(설비)……198

제 장 단순문구 및 오기수정……200

제21장 측량공사(토목)……204

- 제1장 적용기준(토목, 건축, 기계설비)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1장 적용기준	보완	1-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신설"** 2.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3~6 "내용생략"	1-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제2항 이기시행 4~7. 제3~6항 "이기시행"	

- 제2장 가설공사(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개 정 목 차 】

현 행			개 정
토목		개정편제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2. 시험실의 규모	2-1	2-1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2. 시험실의 규모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2-2-1 목조 가설건축물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2-2 2-2-1 2-2-2	2-2 2-2-1 2-2-2 2-2-3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2-2-1 목조 가설건축물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 조립·해체 2. 손율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건축 품 발췌)**
2-3 규준틀 2-3-1 토공의 비탈 규준틀 2-3-2 수평 규준틀 2-3-3 세로 규준틀	2-3 2-3-1 2-3-2 2-3-3	2-4 2-4-1 2-4-2 2-4-3	2-3 가설울타리 2-3-1 조립식 가설 울타리 2-3-2 전기아연도금강판(EGI 휀스) 가설 울타리 **2-3-3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신설)** **2-3-4 가설방음벽** **1. 지주 설치** **2. 방음판 설치**
2-4 비계 및 동바리	2-4	삭제	2-4 규준틀 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 2-4-2 수평 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2. 면적당 규준틀(건축품 발췌)** 2-4-3 세로 규준틀
2-5 파이프 비계(강관비계) 2-5-1 강관비계 2-5-2 강관틀 비계	2-5 2-5-1 2-5-2	2-6 2-6-1 2-6-2 2-6-3 2-6-4 2-6-5 2-6-6	**2-5 구조물 동바리** 2-5-1 강관동바리 2-5-2 조립식 강관동바리 **2-5-3 알루미늄 폼 동바리(신설)**

현 행			개 정
토목		개정편제	
2-6 낙하물 방지	2-6	2-7	2-6 구조물 비계
2-6-1 비계목 사용	2-6-1	삭제	2-6-1 강관비계매기
2-6-2 강관사용	2-6-2	2-7-1	2-6-2 강관틀 비계매기
		2-7-2	2-6-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건축품 발췌)
			2-6-4 강관 비계다리(건축품 발췌)
			1. 슬로프식
			2. 계단식
			2-6-5 공기에 대한 손율(건축품 발췌)
			2-6-6 비계용 브라켓 설치(건축품 발췌)
2-7 가설울타리	2-7	2-3	2-7 낙하물 방지
2-7-1 목재가설울타리	2-7-1	삭제	2-7-1 강관 사용
2-7-2 조립식 가설 울타리	2-7-2	2-3-1	2-7-2 플라잉넷(신설)
2-7-3 전기아연도금강판(EGI 휀스) 가설 울타리	2-7-3	2-3-2	
2-7-4 가설방음벽	2-7-4	2-3-3	
	-	2-3-4	
2-8 동바리	2-8	2-5	2-8 보호막 설치
2-8-1 강관동바리	2-8-1	2-5-1	2-8-1 비계주위 보호막(건축품 발췌)
2-8-2 조립식 강관동바리	2-8-2	2-5-2	2-8-2 갱폼주위 보호막(신설)
		2-5-3	
2-9 파이프 루프공	2-9	2-16	2-9 건축물 보양(건축품 발췌)
2-10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2-10	2-17	2-10 건축물 현장정리(건축품 발췌)
		2-11	2-11 방진망 설치 및 철거(건축품 발췌)
		2-12	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건축품 발췌)
		2-13	2-13 자동세륜기 설치(건축품 발췌)
		2-14	2-14 쓰레기슈트 설치(건축품 발췌)
		2-15	2-15 축중계, 계측기(신설)
		2-16	2-16 파이프 루프공
		2-17	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 가설물의 한도</td>
<td>편제
수정</td>
<td>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table>
<tr><th rowspan="2">직 접 노 무 비</th><th colspan="2">현 장 사 무 소 (㎡)</th><th rowspan="2">기자재창고
(㎡)</th><th rowspan="2">숙 소
(㎡)</th></tr>
<tr><th>감독·감리자</th><th>수 급 자</th></tr>
<tr><td>1.5억미만</td><td>40</td><td>50</td><td>40</td><td>60</td></tr>
<tr><td>1.5 ~ 3억</td><td>60</td><td>75</td><td>50</td><td>70</td></tr>
<tr><td>3 ~ 9억</td><td>80</td><td>100</td><td>60</td><td>80</td></tr>
<tr><td>9 ~ 30억</td><td>100</td><td>130</td><td>80</td><td>100</td></tr>
<tr><td>30 ~90억</td><td>150</td><td>200</td><td>100</td><td>180</td></tr>
<tr><td>90 ~150억</td><td>200</td><td>300</td><td>120</td><td>260</td></tr>
<tr><td>150억 이상</td><td>250</td><td>430</td><td>120</td><td>350</td></tr>
</table>
*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td>
<td>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table>
<tr><th rowspan="2">직 접 노 무 비</th><th colspan="2">현 장 사 무 소 (㎡)</th><th rowspan="2">기자재창고
(㎡)</th><th rowspan="2">숙 소
(㎡)</th></tr>
<tr><th>감독·감리자</th><th>수 급 자</th></tr>
<tr><td>1.5억미만</td><td>40</td><td>50</td><td>40</td><td>60</td></tr>
<tr><td>1.5 ~ 3억</td><td>60</td><td>75</td><td>50</td><td>70</td></tr>
<tr><td>3 ~ 9억</td><td>80</td><td>100</td><td>60</td><td>80</td></tr>
<tr><td>9 ~ 30억</td><td>100</td><td>130</td><td>80</td><td>100</td></tr>
<tr><td>30 ~90억</td><td>150</td><td>200</td><td>100</td><td>180</td></tr>
<tr><td>90 ~150억</td><td>200</td><td>300</td><td>120</td><td>260</td></tr>
<tr><td>150억 이상</td><td>250</td><td>430</td><td>120</td><td>350</td></tr>
</table>
*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함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A=0.4\times\frac{N}{n}$(㎡)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3.3\sqrt{W}$
A=면적(㎡)
W=전력용량(kWH)
⑦ 상기 5, 6항 이외의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⑧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td>
<td>- 주기 이동</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 가설물의 한도</td><td>보완</td><td>

2. 시험실의 규모(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함)('98년, '06년 보완)

<table>
<tr><th>구 분</th><th>공 사 규 모</th><th>규모(㎡)</th><th>비 고</th></tr>
<tr><td>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td><td>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공사</td><td>100</td><td></td></tr>
<tr><td>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td><td>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공사로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td><td>50</td><td></td></tr>
<tr><td>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td><td>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td><td>발주자와 계약한 면적</td><td></td></tr>
</table>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산출

$A=0.4\times\frac{N}{n}(㎡)$

A=저장면적
N=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3.3\sqrt{W}$

A=면적(㎡)
W=전력용량(kWH)
⑦ 상기 5, 6항 이외의 가설건물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⑧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td><td></td><td>- 표 2. 위치이동

- 주기 이동</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 가설물의 한도</td><td></td><td>
<가설물 기준면적>
<table>
<tr><th>종 별</th><th>용 도</th><th>기준면적</th><th>비 고</th></tr>
<tr><td>식 당</td><td>30인 이상일 때</td><td>1㎡</td><td>1인당</td></tr>
<tr><td>근로자숙소</td><td></td><td>4.2㎡</td><td>1인당</td></tr>
<tr><td>휴 게 실</td><td>기거자 3명당 3㎡</td><td>1.0㎡</td><td>1인당</td></tr>
<tr><td>화 장 실</td><td>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td><td></td><td></td></tr>
<tr><td></td><td>여자 15명당 1기</td><td>2.2㎡</td><td>1변기당(대·소변)</td></tr>
<tr><td></td><td>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td><td></td><td></td></tr>
<tr><td>탈의실·샤워장</td><td></td><td>2.0㎡</td><td>1인당</td></tr>
<tr><td>창 고</td><td>시멘트용</td><td>1식</td><td>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td></tr>
<tr><td>목공작업장</td><td>거푸집용</td><td>20㎡</td><td>거푸집 사용량 1,000㎡당</td></tr>
<tr><td>철근공작업장</td><td>가공, 보관</td><td>30~60㎡</td><td>사용량 100ton당</td></tr>
<tr><td>철골공작업장</td><td>공작도 작성</td><td>30㎡</td><td>사용량 100ton당 (필요시)</td></tr>
<tr><td></td><td>현장가공및재료보관</td><td>200㎡</td><td>사용량 100ton</td></tr>
<tr><td>석공작업장</td><td>가공 및 공작도 작성</td><td>70~100㎡</td><td>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td></tr>
<tr><td>콘크리트</td><td>주위벽 막을 때</td><td>0.7㎡</td><td>골재 1㎥당</td></tr>
<tr><td>골재적치장</td><td>주위벽 안할 때</td><td>1.0㎡</td><td>골재 1㎥당</td></tr>
</table>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사 무 실</td><td>0.15</td><td rowspan="4">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td></tr>
<tr><td>창 고 류</td><td>0.06</td></tr>
<tr><td>작업장(일 간)</td><td>0.10</td></tr>
<tr><td>숙 소</td><td>0.075</td></tr>
</table>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td><td>
<가설물 기준면적>
<table>
<tr><th>종 별</th><th>용 도</th><th>기준면적</th><th>비 고</th></tr>
<tr><td>식 당</td><td>30인 이상일 때</td><td>1㎡</td><td>1인당</td></tr>
<tr><td>근로자숙소</td><td></td><td>4.2㎡</td><td>1인당</td></tr>
<tr><td>휴 게 실</td><td>기거자 3명당 3㎡</td><td>1.0㎡</td><td>1인당</td></tr>
<tr><td>화 장 실</td><td>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td><td></td><td></td></tr>
<tr><td></td><td>여자 15명당 1기</td><td>2.2㎡</td><td>1변기당(대·소변)</td></tr>
<tr><td></td><td>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td><td></td><td></td></tr>
<tr><td>탈의실·샤워장</td><td></td><td>2.0㎡</td><td>1인당</td></tr>
<tr><td>창 고</td><td>시멘트용</td><td>1식</td><td>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td></tr>
<tr><td>목공작업장</td><td>거푸집용</td><td>20㎡</td><td>거푸집 사용량 1,000㎡당</td></tr>
<tr><td>철근공작업장</td><td>가공, 보관</td><td>30~60㎡</td><td>사용량 100ton당</td></tr>
<tr><td>철골공작업장</td><td>공작도 작성</td><td>30㎡</td><td>사용량 100ton당 (필요시)</td></tr>
<tr><td></td><td>현장가공및재료보관</td><td>200㎡</td><td>사용량 100ton</td></tr>
<tr><td>석공작업장</td><td>가공 및 공작도 작성</td><td>70~100㎡</td><td>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td></tr>
<tr><td>콘크리트</td><td>주위벽 막을 때</td><td>0.7㎡</td><td>골재 1㎥당</td></tr>
<tr><td>골재적치장</td><td>주위벽 안할 때</td><td>1.0㎡</td><td>골재 1㎥당</td></tr>
</table>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사 무 실</td><td>0.15</td><td rowspan="4">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td></tr>
<tr><td>창 고 류</td><td>0.06</td></tr>
<tr><td>작업장(일 간)</td><td>0.10</td></tr>
<tr><td>숙 소</td><td>0.075</td></tr>
</table>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 가설물의 한도</td>
<td>보완</td>
<td>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92신설)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u>⑬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은 기 계약된 유사규모 공사의 시험실 규모를 의미한다.</u></td>
<td>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92신설)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u>2. 시험실의 규모(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함)('98년, '06년 보완, '09년 보완)</u>
<table>
<tr><th>구 분</th><th>공 사 규 모</th><th>규모(㎡)</th><th>비 고</th></tr>
<tr><td><u>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u></td><td><u>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건설공사</u></td><td><u>100이상</u></td><td><u>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u></td></tr>
<tr><td><u>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u></td><td><u>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u></td><td><u>50이상</u></td><td><u>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u></td></tr>
<tr><td><u>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u></td><td><u>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u></td><td><u>30이상</u></td><td><u>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u></td></tr>
<tr><td><u>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u></td><td><u>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u></td><td><u>발주자와 계약한 면적</u></td><td><u>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u></td></tr>
</table>
<u>[주]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은 기 계약된 유사규모 공사의 시험실 규모를 의미한다.</u></td>
<td>- 표2. 위치이동 및 표 내용 수정

- 주기 ⑬ 2.항목으로 이동</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편제 수정	2-2-1 목조 가설 건축물	2-2-1 목조 가설 건축물 **1. 재료 및 품**	

현 행

(㎡당)

종별	구분 / 사용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 (개)	짧은비계목(개)	골함석 (매)	루핑 (㎡)	부자재 (%)	건축목공 (인)	함석공 (인)	루핑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소	3개월미만	0.050	-	-	-	1.3	12.9	0.6~1.0	-	0.01	0.2~0.3
	6개월미만	0.075	-	-	0.4	-	11.4	0.6~1.0	0.03	-	0.2~0.3
	1개년미만	0.100	-	-.	0.6	-	10.6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10.1	0.6~1.0	0.03	-	0.2~0.3
창고류	3개월미만	0.040	-	-	-	1.3	4.7	0.35~0.6	-	0.01	0.15~0.2
	6개월미만	0.060	-	-	0.4	-	3.2	0.35~0.6	0.03	-	0.15~0.2
	1개년미만	0.080	-	-	0.6	-	2.4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01	-	-	0.8	-	1.8	0.35~0.6	0.03	-	0.15~0.2
헛간	3개월미만	-	0.07	0.03	-	1.3	19.5	0.05~0.1	-	0.01	0.20
	6개월미만	-	0.10	0.04	0.4	-	12.7	0.05~0.1	0.03	-	0.20
	1개년미만	-	0.14	0.06	0.6	-	8.3	0.05~0.1	0.03	-	0.20
	1개년이상	-	0.20	0.12	0.8	-	5.8	0.05~0.1	0.03	-	0.20

개 정

(㎡당)

종별	구분 / 사용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 (개)	짧은비계목(개)	골함석 (매)	루핑 (㎡)	부자재 (%)	건축목공 (인)	함석공 (인)	루핑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소	3개월미만	0.050	-	-	-	1.3	12.9	0.6~1.0	-	0.01	0.2~0.3
	6개월미만	0.075	-	-	0.4	-	11.4	0.6~1.0	0.03	-	0.2~0.3
	1개년미만	0.100	-	-	0.6	-	10.6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10.1	0.6~1.0	0.03	-	0.2~0.3
창고류	3개월미만	0.040	-	-	-	1.3	4.7	0.35~0.6	-	0.01	0.15~0.2
	6개월미만	0.060	-	-	0.4	-	3.2	0.35~0.6	0.03	-	0.15~0.2
	1개년미만	0.080	-	-	0.6	-	2.4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01	-	-	0.8	-	1.8	0.35~0.6	0.03	-	0.15~0.2
헛간	3개월미만	-	0.07	0.03	-	1.3	19.5	0.05~0.1	-	0.01	0.20
	6개월미만	-	0.10	0.04	0.4	-	12.7	0.05~0.1	0.03	-	0.20
	1개년미만	-	0.14	0.06	0.6	-	8.3	0.05~0.1	0.03	-	0.20
	1개년이상	-	0.20	0.12	0.8	-	5.8	0.05~0.1	0.03	-	0.20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현 행

종별	구분 / 사용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개)	짧은비계목(개)	골함석(매)	루핑(㎡)	부자재(%)	건축목공(인)	함석공(인)	루핑공(인)	보통인부(인)
휴게·식당	3개월미만	0.046	-	-	-	1.3	6.0	0.35~0.6	-	0.01	0.15~0.2
	6개월미만	0.068	-	-	0.4	-	4.0	0.35~0.6	0.03	-	0.15~0.2
	1개년미만	0.091	-	-	0.6	-	3.0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14	-	-	0.8	-	2.4	0.35~0.6	0.03	-	0.15~0.2
화장실	3개월미만	0.050	-	-	-	1.3	6.2	0.6~1.0	-	0.01	0.2~0.3
	6개월미만	0.075	-	-	0.4	-	4.2	0.6~1.0	0.03	-	0.2~0.3
	1개년미만	0.100	-	-	0.6	-	3.1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2.4	0.6~1.0	0.03	-	0.2~0.3

[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창호 및 유리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비에 대한 비율이며, **못**, 철물, 철선을 말한다.
⑤ 기구손료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표의 골함석 치수는 #31, 1.8m×0.9m, 철선은 지름 4.2mm(#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⑦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 루핑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루핑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특별시방서에 지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준한다.
⑧ 본 표 이외의 지붕잇기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특수구조의 가설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개 정

종별	구분 / 사용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개)	짧은비계목(개)	골함석(매)	루핑(㎡)	부자재(%)	건축목공(인)	함석공(인)	루핑공(인)	보통인부(인)
휴게·식당	3개월미만	0.046	-	-	-	1.3	6.0	0.35~0.6	-	0.01	0.15~0.2
	6개월미만	0.068	-	-	0.4	-	4.0	0.35~0.6	0.03	-	0.15~0.2
	1개년미만	0.091	-	-	0.6	-	3.0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14	-	-	0.8	-	2.4	0.35~0.6	0.03	-	0.15~0.2
화장실	3개월미만	0.050	-	-	-	1.3	6.2	0.6~1.0	-	0.01	0.2~0.3
	6개월미만	0.075	-	-	0.4	-	4.2	0.6~1.0	0.03	-	0.2~0.3
	1개년미만	0.100	-	-	0.6	-	3.1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2.4	0.6~1.0	0.03	-	0.2~0.3

[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창호 및 유리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비에 대한 비율이며, , 철물, 철선을 말한다.
⑤ 기구손료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표의 골함석 치수는 #31, 1.8m×0.9m, 철선은 지름 4.2mm(#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⑦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 루핑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루핑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특별시방서에 지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준한다.
⑧ 본 표 이외의 지붕잇기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특수구조의 가설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
<td></td>
<td>⑩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가 필요없는 지반에서 가설 건물의 골조공사(바닥제외)에 필요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의 마감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되며 건물의 내외벽 마감재료 및 창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설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기준(㎡당)>
<table>
<tr><th>구분 \ 수량</th><th></th><th>소 요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사
무
실</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내 벽</td><td>0.5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외 벽</td><td>0.5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천 정</td><td>1.0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4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 rowspan="4">창
고</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외 벽</td><td>1.2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able>
* 사무실창문(유리창)크기는 1.5m×1.4m 미서기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 크기는 0.9m×2.1m 여닫이 문을 기준하였음.
* 창고문은 1.3m×1.2m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 쌍여닫이 문으로 2.0m×1.2m를 기준하였음.</td>
<td>⑩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가 필요없는 지반에서 가설 건물의 골조공사(바닥제외)에 필요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의 마감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되며 건물의 내외벽 마감재료 및 창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설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기준(㎡당)>
<table>
<tr><th>구분 \ 수량</th><th></th><th>소 요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사
무
실</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내 벽</td><td>0.5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외 벽</td><td>0.5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천 정</td><td>1.0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4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 rowspan="4">창
고</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외 벽</td><td>1.2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able>
* 사무실창문(유리창)크기는 1.5m×1.4m 미서기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 크기는 0.9m×2.1m 여닫이 문을 기준하였음.
* 창고문은 1.3m×1.2m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 쌍여닫이 문으로 2.0m×1.2m를 기준하였음.</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
<td>보완</td>
<td>

[참 고]

ㅇ손율

구분 \ 사용기간별	3개월**미만** (%)	6개월**미만** (%)	1개년**미만** (%)	1개년이상 (%)
목 재	30	45	60	75
긴 비 계 목	25	35	50	75
짧 은 비 계 목	12	17	25	50
못	**100**	**100**	**100**	**100**
철 물	30	45	60	75
골 함 석	20	35	55	75
철 선	100	100	100	100
루 핑	100	100	100	100
창 호	30	40	60	75
유 리	60	65	75	100
흄 관	80	100	100	100
강 재 류	15	30	50	70
돌 망 태	100	100	100	100

[주] ① 본 품에 있어서 재료의 길이가 2m이하인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② ″ 신설″
② 타이롯트는 전부 스크랩 공제한다.
③ 본 품에서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등)는 토류벽과 가교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④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 × 신재단가 × 손율 + 할증량 × 신재단가 − 할증량 × 공제율 × 고재단가

</td>
<td>

2. 손율

구분 \ 사용기간별	3개월 (%)	6개월 (%)	1개년 (%)	1개년이상 (%)
목 재	30	45	60	75
긴 비 계 목	25	35	50	75
짧 은 비 계 목	12	17	25	50
철 물	30	45	60	75
골 함 석	20	35	55	75
철 선	100	100	100	100
루 핑	100	100	100	100
창 호	30	40	60	75
유 리	60	65	75	100
흄 관	80	100	100	100
강 재 류	15	30	50	70
돌 망 태	100	100	100	100

[주] ① 본 품에 있어서 재료의 길이가 2m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③ 타이롯트는 전부 스크랩 공제한다.
③ 본 품에서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등)는 토류벽과 가교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④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 × 신재단가 × 손율 + 할증량 × 신재단가 − 할증량 × 공제율 × 고재단가

</td>
<td>

- 표안 '미만' 삭제
- 표 안'못'삭제

- 주기
① 수정

</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보완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92년 신설)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92년 신설, **'09년 보완**)	- 주기 ① 수정

현 행

1. 조립·해체

(바닥면적 ㎡당)

구분	사용기간	주자재	부자재(%)	건축목공(인)	보통인부(인)
사무실	3 개 월	1식	16.8	0.40	0.20
	6 개 월	〃	15.4		
	1 년	〃	12.6		
	1 년 이 상	〃	11.2		
창고	3 개 월	1식	19.5	0.30	0.15
	6 개 월	〃	16.9		
	1 년	〃	14.3		
	1 년 이 상	〃	13.0		

[주] ① 본 품은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사무소	창고
Base Channel	두께 : 2.0㎜이상	m	0.44	0.44
Top Channel	두께 : 2.0㎜이상	〃	0.44	0.44
외부 Panel(벽)	1,200×2,400㎜	매	0.20	0.23
〃 (창문)	〃	〃	0.12	0.08
〃 (철재문)	〃	〃	0.03	0.04
내부 Panel(벽)	〃	〃	0.15	-
〃 (목재문)	〃	〃	0.05	-
Panel Joint (Al-Bar)	L=2,400㎜	조	0.31	0.31
Canopy(출입구채양)	600×1,200㎜	매	0.03	0.04
박공 Panel		〃	0.02	0.02
Roof Sheet	0.5㎜ color sheet	㎡	1.23	1.23
트러스	L=7.2m	개	0.07	0.07
중도리(Purin)	두께 : 2.0이상	〃	1.52	1.52
천정판	미장합판+50㎜ glass wool	매	0.69	-
T-bar		m	1.53	-

개 정

1. 조립·해체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 자 재	부자재(%)	건축목공(인)	보통인부(인)
사 무 실	3 개 월	1식	16.8	0.30	0.12
	6 개 월	〃	15.4		
	1 년	〃	12.6		
	1 년 이 상	〃	11.2		
창 고	3 개 월	1식	19.5	0.23	0.10
	6 개 월	〃	16.9		
	1 년	〃	14.3		
	1 년 이 상	〃	13.0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사 무 소	창 고
BASE CHANNEL	두께 : 2.0㎜이상	m	0.44	0.44
TOP CHANNEL	두께 : 2.0㎜이상	〃	0.44	0.44
외부 PANEL(벽)	1,200×2,400㎜	매	0.20	0.23
〃 (창문)	〃	〃	0.12	0.08
〃 (철재문)	〃	〃	0.03	0.04
내부 PANEL(벽)	〃	〃	0.15	-
〃 (목재문)	〃	〃	0.05	-
PANEL JOINT(AL-BAR)	L=2,400㎜	조	0.31	0.31
CANOPY(출입구채양)	600×1,200㎜	매	0.03	0.04
박공 PANEL		〃	0.02	0.02
ROOF SHEET	0.5㎜ COLOR SHEET	㎡	1.23	1.23
트러스	L=7.2m	개	0.07	0.07
중도리(PURIN)	두께 : 2.0이상	〃	1.52	1.52
천정판	미장합판+50㎜ GLASS WOOL	매	0.69	-
T-BAR		m	1.53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품(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정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인력(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정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규준틀</td><td>보완</td><td>

2-3-1 토공의 비탈 규준틀

(개소당)

<table>
<tr><th>판 재</th><th>말 뚝</th><th>못</th><th>건축목공</th><th>보통인부</th></tr>
<tr><td>두께 1.2㎝
폭 12㎝
길이 4m</td><td>말구 6㎝
길이 1.8m
2 본</td><td>0.03kg</td><td>0.2인</td><td>0.2인</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u>제작, 가설, 철거</u>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td><td>

<u>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09년 보완)</u>

(개소당)

<table>
<tr><th><u>종 류</u></th><th><u>단 위</u></th><th><u>수 량</u></th></tr>
<tr><td><u>건축목공</u></td><td><u>인</u></td><td><u>0.16</u></td></tr>
<tr><td><u>보통인부</u></td><td><u>인</u></td><td><u>0.14</u></td></tr>
</table>

[주] <u>①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u>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u>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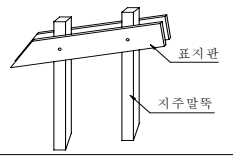

</td><td>-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③ 추가</td></tr>
<tr><td></td><td>보완</td><td>

2-3-2 수평 규준틀

(개소당)

<table>
<tr><th>종별 / 단위 / 구분</th><th></th><th>평 규 준 틀</th><th>귀 규 준 틀</th></tr>
<tr><td>목 재</td><td>㎥</td><td>0.014</td><td>0.022</td></tr>
<tr><td>못</td><td>kg</td><td>0.03</td><td>0.06</td></tr>
<tr><td>건 축 목 공</td><td>인</td><td>0.15</td><td>0.30</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30</td><td>0.4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u>제작, 가설, 철거</u>를 포함한 것이다.
<u>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u>

</td><td>

<u>2-4-2 수평규준틀</u>

<u>1. 개소당 규준틀('09년 보완)</u>

(개소당)

<table>
<tr><th>종 류</th><th><u>단 위</u></th><th><u>수 량</u></th></tr>
<tr><td>건축목공</td><td><u>인</u></td><td><u>0.21</u></td></tr>
<tr><td>보통인부</td><td><u>인</u></td><td><u>0.19</u></td></tr>
</table>

[주] <u>①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u>
<u>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u>
<u>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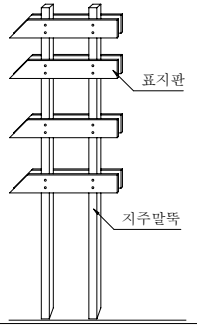

</td><td>- 품 개정

- 주기
①,② 수정
③ 추가</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규준틀</td><td>건축품
발췌</td><td></td><td>2. 면적당 규준틀('09년 보완)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목 재</td><td>㎥</td><td>0.002</td></tr><tr><td>건 축 목 공</td><td>인</td><td>0.018</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16</td></tr></table>[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td><td>편제
수정</td><td>2-3-3 세로 규준틀
(개소당)
<table><tr><th>구분
종별</th><th>목재(㎥)</th><th>못(kg)</th><th>건축목공(인)</th><th>보통인부(인)</th></tr><tr><td>귀규준틀(1층)</td><td>0.056</td><td>0.032</td><td>0.18</td><td>0.2</td></tr><tr><td>평규준틀(1층)</td><td>0.062</td><td>0.050</td><td>0.18</td><td>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높이 3.6m를 기준한 것으로, 3.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② 목재 손율은 30%로 한다.</td><td>2-4-3 세로 규준틀
<현행과 동일></td><td></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4 비계 및 동바리	삭제	2-4 비계 및 동바리	<삭제>	

(10공㎥당)

종류	규격	단위	기준수량		사용횟수별 기준수량에 대한 비율(%)		
			비계 1회	동바리 1회	횟수별	비계 및 동바리	
						재료비(%)	노무비(%)
통나무	길이 3.6~7.0m 중경 12cm 말구 12cm	㎥	0.094	0.062	1회 사용	100	100
					2회	67.0	100
판 재	폭 21cm 두께 2.5cm 길이 3.6m	㎥	0.0015	-	3회	56.5	100
					4회	51.6	100
각 재		㎥	-	0.041	5회	48.9	100
꺽 쇠		kg	-	0.11	6회	47.3	100
철 선	ϕ4m/m	kg	0.2	0.3	7회	46.2	100
볼 트		kg	-	0.15	8회	45.4	100
형틀목공		인	-	0.5	9회	42.7	100
비계공		인	2.0	1.0	10회	40.5	100
보통인부		인	2.0	2.5			
잡재료		식	재료비의 5%	재료비의 5%			

[주] ① 본 표의 기준수량은 비계와 동바리를 1회 사용시 기준한 것이며, 사용횟수별로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코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을 적용한다.
② 비계는 직고 2m미만인 경우는 계상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직고 7m까지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④ 잡재료는 재료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계산예]
동바리 사용시의 단가계산(4회, 8회, 10회)
1회 사용시의 단가는,

통나무 0.062㎥×A_1=1
각 재 0.041㎥×A_2=2
꺽 쇠 0.11kg ×A_3=3
철 선 0.3 kg ×A_4=4
볼 트 0.15kg ×A_5=5
잡 재 (1+2+3+4+5)×5%
재료비 합계 = A

목 공 0.5인×A_6=6
비계공 1.0인×A_7=7
인 부 2.5인×A_8=8
노무비 합 계 = B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4 비계 및 동바리</td><td>삭제</td><td>① 동바리 4회 사용시 10공㎥당단가=(A×0.516)+B
② 동바리 8회 사용시 10공㎥당단가=(A×0.454)+B
③ 동바리 10회 사용시 10공㎥당단가=(A×0.405)+B
[참 고]
○ 손 율
<table>
<tr><th>사용횟수</th><th>구 입 량</th><th>구입량에 대한 손율</th><th>매횟수의 손율</th></tr>
<tr><td>1</td><td>100%</td><td>37.1%</td><td>37.0%</td></tr>
<tr><td>2</td><td>110</td><td>45.1</td><td>24.8</td></tr>
<tr><td>3</td><td>120</td><td>52.4</td><td>20.9</td></tr>
<tr><td>4</td><td>130</td><td>59.0</td><td>19.1</td></tr>
<tr><td>5</td><td>140</td><td>64.9</td><td>18.1</td></tr>
<tr><td>6</td><td>150</td><td>70.2</td><td>17.5</td></tr>
<tr><td>7</td><td>160</td><td>75.0</td><td>17.1</td></tr>
<tr><td>8</td><td>170</td><td>79.3</td><td>16.8</td></tr>
<tr><td>9</td><td>180</td><td>79.3</td><td>15.8</td></tr>
<tr><td>10</td><td>190</td><td>79.3</td><td>15.0</td></tr>
</table>
[주] ① 본 표는 거푸집 부재의 표준치수를 참작하여 동바리 설치 재료를 산정한 후 구입량에 대한 손율을 계상할 때 적용한다.
② 매 횟수의 손율이란 소요량에 대하여 사용하는 매횟수마다의 손율을 말한다.
[계산예] 동바리 소요량이 100이고 6회 반복 사용할 때
① 구입량에 의한 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구입량 : 100개×150% = 150개
소모량 : 150개×70.2% = 105.3개
② 매횟수의 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모량 : 100개×17.5%×6회 = 105개</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5 파이프 비계
(강관비계)</td>
<td>보완</td>
<td>

2-5-1 강관비계

1. 조립·해체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48.6mm×2.4mm	m	3.99	
이 음 철 물		개	0.5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	2.08	
받 침 철 물		〃	0.04	
철 물	앵커용	〃	0.04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10	

[주] ① 본 품은 강관복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단관비계 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본 손율을 적용한다.**
② 강관복식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기 동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지상첫째는 2.0m임)
비 계 폭	1.2m
전 면 보 강 가 세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 평 수 직 보 강 가 세	필요할 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 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2-6 구조물 비계

2-6-1 강관비계('09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48.6mm×2.4mm	m	3.99	
이 음 철 물		개	0.5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	2.08	
받 침 철 물		〃	0.04	
철 물	앵커용	〃	0.04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08**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매기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강관비계 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복식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기 동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지상첫째는 2.0m임)
비 계 폭	1.2m
전 면 보 강 가 세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 평 수 직 보 강 가 세	필요할 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 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5 파이프 비계 (강관비계)	편제 수정	2. 공기에 대한 손율	2-6-5 공기에 대한 손율	

현 행

재료 / 공기	손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세	손율: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손율: 조임철물 이음철물	손율: 철물(앵커용)	비고
3개월	6%	9%	12%	100%	
6 〃	10 〃	15 〃	20 〃	100 〃	
12 〃	19 〃	29 〃	38 〃	100 〃	
18 〃	28 〃	42 〃	56 〃	100 〃	
24 〃	37 〃	56 〃	74 〃	100 〃	
30 〃	46 〃	69 〃	92 〃	100 〃	
36 〃	55 〃	83 〃	100 〃	100 〃	
42 〃	64 〃	96 〃	100 〃	100 〃	
48 〃	73 〃	100 〃	100 〃	100 〃	
54 〃	84 〃	100 〃	100 〃	100 〃	
60 〃	91 〃	100 〃	100 〃	100 〃	
66 〃	100 〃	100 〃	100 〃	100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회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보관에 대한 손율은 1식으로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비계매기의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등)에는 그 공사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개 정

재료 / 공기	손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세	손율: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손율: 조임철물 이음철물	손율: 철물(앵커용)	비고
3개월	6%	9%	12%	100%	
6 〃	10 〃	15 〃	20 〃	100 〃	
12 〃	19 〃	29 〃	38 〃	100 〃	
18 〃	28 〃	42 〃	56 〃	100 〃	
24 〃	37 〃	56 〃	74 〃	100 〃	
30 〃	46 〃	69 〃	92 〃	100 〃	
36 〃	55 〃	83 〃	100 〃	100 〃	
42 〃	64 〃	96 〃	100 〃	100 〃	
48 〃	73 〃	100 〃	100 〃	100 〃	
54 〃	84 〃	100 〃	100 〃	100 〃	
60 〃	91 〃	100 〃	100 〃	100 〃	
66 〃	100 〃	100 〃	100 〃	100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회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보관에 대한 손율은 1식으로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비계매기의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등)에는 그 공사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5 파이프 비계 (강관비계)	보완	**2-5-2 강관틀 비계** **1.조립・해제**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비계기본틀(기둥) / 1.2m×1.9m / 개 / 0.36 비계장선틀 / 1.0m×1.9m / 〃 / 0.34 가세 / 1.2m×1.9m / 〃 / 0.68 조절받침철물 / / 〃 / 0.04 이음철물 / 삽입걸이 / 〃 / 0.68 철물 / 앵커용 / 〃 / 0.04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본 손율을 적용한다.** ② 강관틀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기구손료는 인건비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45m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중량작업을 할 때의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2. 공기에 대한 손율 : "2-5-1 강관비계"에 준함.**	**2-6-2 강관틀 비계**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비계기본틀(기둥) / 1.2m×1.9m / 개 / 0.36 비계장선틀 / 1.0m×1.9m / 〃 / 0.34 가세 / 1.2m×1.9m / 〃 / 0.68 조절받침철물 / / 〃 / 0.04 이음철물 / 삽입걸이 / 〃 / 0.68 철물 / 앵커용 / 〃 / 0.04 비계공 / 조립해체 / 인 / 0.0302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틀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기구손료는 인건비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45m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중량작업을 할 때의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 주기 ① 수정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낙하물 방지</td><td>삭제</td><td>2-6-1 비계목 사용
(㎡당)
<table><tr><th>구분
종별</th><th>철망(㎡)</th><th>발(㎡)</th><th>비계목(개)</th><th>못(kg)</th><th>철선(kg)</th><th>비계공(인)</th></tr><tr><td>철 망</td><td>1.1</td><td>-</td><td>1</td><td>0.05</td><td>0.28</td><td>0.03</td></tr><tr><td>발</td><td>-</td><td>1.1</td><td>-</td><td>0.05</td><td>-</td><td>0.04</td></tr></table>[주] ① 본 품은 기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철망 및 발치기 품은 높이 7m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철망 및 발치기에 있어서 높이 7m 이상일 때는 외부비계중 외줄 비계매기품에 준한다.
④ 비계목은 짧은 비계목(길이 3.6m)이다.
⑤ 철망의 규격은 #21 아연도금 철망이며 손율은 30~50%이다.
⑥ 발은 소모품으로 한다.
⑦ 목재손율은 외부비계에 준한다.
⑧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3.5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m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10mm눈 크기 이하의 철망 또는 이와 동등한 발이나 망 등을 친다.</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6 낙하물 방지</td>
<td>보완</td>
<td>
2-6-2 강관 사용
<table>
<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r>
<tr><td>강 관</td><td>φ48.6mm×2.4mm</td><td>m</td><td>2.7</td></tr>
<tr><td>브 라 켓</td><td></td><td>개</td><td>0.26</td></tr>
<tr><td>클 램 프</td><td></td><td>개</td><td>0.27</td></tr>
<tr><td>철 선</td><td></td><td>kg</td><td>0.25</td></tr>
<tr><td>발</td><td>90합</td><td>㎡</td><td>1.24</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품이다.
② 본 품은 높이 8m 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높이 8m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높이(m)</th><th>8~20</th><th>20~30</th><th>비고</th></tr>
<tr><td>비계공(인)</td><td>0.07</td><td>0.10</td><td></td></tr>
</table>
단, 30m 이상일 때는 매 3.5m 증가마다 품을 10%씩 비례하여 계상한다.
④ 철선 및 발은 소모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5 파이프 비계”(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⑥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8m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20-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0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가로×세로 35mm 그물코 이하의 합성섬유(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td>
<td>
2-7-1 강관 사용(‘09년 보완)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7</td></tr>
<tr><td>브 라 켓</td><td></td><td>개</td><td>0.26</td></tr>
<tr><td>철 선</td><td></td><td>kg</td><td>0.25</td></tr>
<tr><td>클 램 프</td><td></td><td>개</td><td>0.27</td></tr>
<tr><td>그 물 망</td><td></td><td>㎡</td><td>1.24</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3</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구조물 첫 단(지상으로부터 약 8m)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설치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철선 및 그물망은 소모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⑤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8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20~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0m 이내마다 2-7-2 플라잉넷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그물망)은 가로×세로 35㎜ 그물코 이하의 합성섬유(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이어야 한다.
</td>
<td>-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 주기
②, ③ 삭제
- 주기
④, ⑤ 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가설울타리</td><td>삭제</td><td>
2-7-1 목재가설울타리

1. 설치
(m당)
<table>
<tr><th>재료및품
공정별</th><th>목재
(㎥)</th><th>철재
(kg)</th><th>못
(kg)</th><th>건축목공
(인)</th><th colspan="2">보통인부</th><th>콜탈
(ℓ)</th></tr>
<tr><th></th><th></th><th></th><th></th><th></th><th>가설(인)</th><th>철거(인)</th><th></th></tr>
<tr><td>판 장 울 1.8m</td><td>0.045</td><td>-</td><td>0.15</td><td>0.12</td><td>0.056</td><td>0.094</td><td>0.06</td></tr>
<tr><td>판 장 울 2.7m</td><td>0.083</td><td>-</td><td>0.22</td><td>0.18</td><td>0.072</td><td>0.12</td><td>0.06</td></tr>
<tr><td>판 장 울 3.6m</td><td>0.158</td><td>-</td><td>0.33</td><td>0.28</td><td>0.11</td><td>0.18</td><td>0.06</td></tr>
<tr><td>철 조 망 울 1.8m</td><td>0.008</td><td>철조망 14m</td><td>0.03</td><td>0.027</td><td>0.055</td><td>0.044</td><td>0.03</td></tr>
<tr><td>골 절 판 울 1.8m</td><td>0.063</td><td>골함석 1.6매</td><td>0.035</td><td>0.072</td><td>0.04</td><td>0.072</td><td>0.06</td></tr>
</table>
[주] ① 가설 울타리는 공사현장의 관리보안상 필요로 인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재료, 구조, 미관 등에 대하여 시방서에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에 준한다.
② 외부를 대패질할 때는 별도 가산한다.
③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는 건축부문 “제19장 칠공사”편에 의거 별도 계상한다.
④ 출입구의 문을 설치할 경우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철조망울의 널재란의 “간격 20cm 대각선”은 철조망을 수평간격 20cm로 하여 기둥에 U형 <u>못</u>으로 고정하고 기둥간을 대각선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⑥ 가설표준
<table>
<tr><th>재료
공종별</th><th>기 둥</th><th>버팀기둥</th><th>널재</th><th>띠장</th></tr>
<tr><td>판 장 울 1.8m</td><td>7.5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40cm로 한다.</td><td>7.5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cm, 간격은 3.6m(기둥하나걸음)로 한다.</td><td>두께 1.2cm</td><td>3×6cm 각재간격 90cm</td></tr>
</table>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가설울타리</td><td>삭제</td><td>
<table>
<tr><th>재료 / 공종별</th><th>기 둥</th><th>버팀기둥</th><th>널재</th><th>띠장</th></tr>
<tr><td>판 장 울 2.7m</td><td>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5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cm로 한다.</td><td>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5cm, 간격은 3.6m(기둥하나걸음)로 한다.</td><td>두께 1.5cm</td><td>3×6cm 각재간격 90cm</td></tr>
<tr><td>판 장 울 3.6m</td><td>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9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cm로 한다.</td><td>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9cm, 간격은 3.6m(기둥하나걸음)로 한다.</td><td>두께 1.8cm</td><td>3×6cm 각재간격 90cm</td></tr>
<tr><td>철 조 망 1.8m</td><td>7.5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cm로 한다.</td><td></td><td>가시철선지름 2mm(#14) 수평간격 20cm 대각선으로 보강한다.</td><td></td></tr>
<tr><td>골철판울 1.8m</td><td>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9cm, 간격은 1.3m 지중매립은 90cm로 한다.</td><td>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무리 지름 9cm, 간격은 3.6m(기둥하나걸음)로 한다.</td><td>골함석 #30 (66cm×180cm)</td><td></td></tr>
</table>
</td><td><삭제></td><td>삭제</td></tr>
<tr><td></td><td>삭제</td><td>2. 공기에 대한 손율
<table>
<tr><th>사용기간 / 재료명</th><th>3개월 (%)</th><th>4~6개월 (%)</th><th>7~8개월 (%)</th><th>9~10개월 (%)</th><th>11~12개월 (%)</th><th>1년이상 (%)</th></tr>
<tr><td>나 무 기 둥</td><td>30</td><td>45</td><td>60</td><td>75</td><td>90</td><td>100</td></tr>
<tr><td>철 물</td><td>30</td><td>45</td><td>60</td><td>75</td><td>90</td><td>100</td></tr>
<tr><td>못, 기 타</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able>
[주] 1년이상 사용하는 가설물의 재료의 손율은 100%로 계상하며 장기를 요하는 공사(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에서는 재료의 손율은 반복 계상할 수 없다.</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

<u>2-7-2</u> 조립식 가설울타리

1.설치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칼 라 철 판	800×2,000×0.45mm	매	1.33	
기 둥	각파이프 60×60mm	m	1.76	
띠 장	C-60×30×10×2.2mm	m	3	
콘 크 리 트	기초	㎥	0.038	
건 축 목 공		인	0.1	
인 부		인	0.05	

[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 설 표 준
높 이	2.0m
기 둥	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25cm로 한다.
버팀기둥	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간격은 3.6m로 한다.
널 재	800×2,000mm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cm로 한다.
띠 장	C형강(60×30×10×2.2mm)을 사용하고 간격은 85cm로 한다.

⑥ 기둥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파이프 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 공기에 대한 손율

재료 / 사용시간	손 율 (%)	
	칼라철판	기둥 및 띠장
3개월	16	6
6개월	25	10
12개월	38	19
24개월	53	37
36개월	70	55
48개월	100	73

</td><td>

<u>2-3-1</u> 조립식 가설울타리

1.설치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칼 라 철 판	800×2,000×0.45mm	매	1.33	
기 둥	각파이프 60×60mm	m	1.76	
띠 장	C-60×30×10×2.2mm	m	3	
콘 크 리 트	기초	㎥	0.038	
비 계 공		인	0.1	
보 통 인 부		인	0.05	

[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 설 표 준
높 이	2.0m
기 둥	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25cm로 한다.
버팀기둥	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간격은 3.6m로 한다.
널 재	800×2,000mm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cm로 한다.
띠 장	C형강(60×30×10×2.2mm)을 사용하고 간격은 85cm로 한다.

⑥ 기둥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파이프 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 공기에 대한 손율

재료 / 사용시간	손 율 (%)	
	칼라철판	기둥 및 띠장
3개월	16	6
6개월	25	10
12개월	38	19
24개월	53	37
36개월	70	55
48개월	100	73

</td><td>- 품 개정</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7 가설울타리	보완	**2-7-3**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 울타리	**2-3-2**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 울타리**('09년 보완)**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표 내용 수정 - 주기 ⑦ 수정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G I 철 판	500×2400	매	2	
강관 파이프	ϕ48.6	m	6.6	
클램프	자동	개	0.28	
	고정	개	2.26	
연결핀		개	0.56	
볼트/넛트		개	13.33	
비 계 공		인	**0.08**	
인 부		인	0.02	

[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울타리 상단에 설치하는 분진망은 별도 계상한다.
③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 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손율은 **"2-7-2 조립식 가설울타리"**의 손율을 적용한다.
⑧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설표준
높 이	2.4m
기 둥	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25cm로 한다.**
버 팀 기 둥	버팀기둥 간격은 3.6m로 한다.
띠 장	띠장은 강관파이프를 사용하고 간격은 100cm로 한다.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G I 철 판	500×2400	매	2	
강관 파이프	ϕ48.6	m	6.6	
클 램 프	자동	개	0.28	
	고정	개	2.26	
연 결 핀		개	0.56	
볼트/ 넛트		개	13.33	
비 계 공		인	**0.04**	
보통인부		인	0.02	
굴 삭 기	**0.2 ㎥**	hr	**0.05**	

[주] ① **본 품은 0.2㎥ 굴삭기를 사용하여 EGI 휀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품이다.**"
②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울타리 상단에 설치하는 분진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본 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 품의 40%를 별도 가산한다.
⑦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손율은 **"2-3-1 조립식 가설울타리"**의 손율을 적용한다
⑨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가 설 표 준
높 이	2.4m
기 둥	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1.5m를 기준으로 한다.**
버 팀 기 둥	버팀기둥 간격은 3.6m로 한다.
띠 장	띠장은 강관파이프를 사용하고 간격은 100㎝로 한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

<u>2-7-4</u> 가설방음벽

1. 지주 설치('07년 신설)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1</td></tr>
<tr><td>굴삭기(0.2㎥)</td><td>hr</td><td><u>0.18</u></td></tr>
</table>

[주]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매입강관 및 지주(수직, 수평, 보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평탄작업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강관의 규격은 Ø48×2.3T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2. 방음판 설치('07년 신설)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2</td></tr>
<tr><td>트럭탑재형크레인(5ton)</td><td>hr</td><td>0.2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방음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기구 설치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방음판의 규격은 500㎜×30T×1,980㎜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td><td>

<u>2-3-4</u> 가설방음벽<u>('09년 보완)</u>

1. 지주 설치('07년 신설)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1</td></tr>
<tr><td>굴삭기(0.2㎥)</td><td>hr</td><td><u>0.05</u></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매입강관 및 지주(수직, 수평, 보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평탄작업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강관의 규격은 Ø48×2.3T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2. 방음판 설치('07년 신설)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2</td></tr>
<tr><td>트럭탑재형크레인(5ton)</td><td>hr</td><td>0.2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방음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기구 설치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방음판의 규격은 500㎜×30T×1,980㎜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td><td>- 품개정</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8 동바리</td>
<td>보완</td>
<td>

2-8-1 강관동바리

(10공㎥당)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명칭</th><th rowspan="2">규격</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수 량</th></tr>
<tr><th>암거구조물</th><th>교량구조물</th></tr>
<tr><td rowspan="4">동
바
리</td><td>강 관 동 바 리</td><td rowspan="3">내관 φ48.6×2.4
외관 φ60.5×2.3</td><td>본</td><td>3.8</td><td>8.0</td></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7</u></td><td><u>1.9</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5</u></td><td><u>1.0</u></td></tr>
<tr><td>잡 재 료</td><td>식</td><td colspan="2">재료비의 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동바리 사용높이 4.2m까지 적용하며, 특수한 구조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조립·해체 및 재료의 할증과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다.
③ 강관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사 용 월 별	3개월	6개월	12개월
손 율(%)	6	10	19

④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 이내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의 재료량 및 품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때,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강 관	φ48.6mm×2.4mm	m	2.52	
이 음 철 물		개	0.32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개	2.68	
형 틀 목 공	조립, 해체	인	0.03	

* 전체동바리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td>
<td>

2-5 구조물 동바리('09년 보완)

2-5-1 강관동바리

(10공㎥당)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명칭</th><th rowspan="2">규격</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수 량</th></tr>
<tr><th>암거구조물</th><th>교량구조물</th></tr>
<tr><td rowspan="4">동
바
리</td><td>강 관 동 바 리</td><td rowspan="3">내관 φ48.6×2.4
외관 φ60.5×2.3</td><td>본</td><td>3.8</td><td>8.0</td></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6</u></td><td><u>1.6</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3</u></td><td><u>0.6</u></td></tr>
<tr><td>잡 재 료</td><td>식</td><td colspan="2">재료비의 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동바리 사용높이 4.2m까지 적용하며, 특수한 구조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조립·해체 및 재료의 할증과 소운반이 포함된 것이다.
③ 강관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사 용 월 별	3개월	6개월	12개월
손 율(%)	6	10	19

④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 이내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의 재료량 및 품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때,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강 관	φ48.6mm×2.4mm	m	2.52	
이 음 철 물		개	0.32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개	2.68	
형 틀 목 공	조립, 해체	인	0.03	

* 전체동바리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td>
<td>- 품 개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8 동바리</td>
<td>보완</td>
<td>
2-8-2 조립식 강관동바리('01년 신설)
(10공㎥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작 업 반 장</td><td>인</td><td>0.24</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48</td></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0.72</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72</td></tr>
<tr><td>크 레 인</td><td>시간</td><td>0.1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슬라브두께 130c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의 슬라브 두께는 평균두께로 한다.
③ 본 품은 동바리 설치높이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table>
<tr><th>높 이</th><th>10m초과~20m이하</th><th>20m초과~30m이하</th></tr>
<tr><td>할 증 율(%)</td><td>10</td><td>20</td></tr>
</table>
④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⑤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⑥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용월별</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⑦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높 이</th><th>20m이하</th><th>20m초과~30m이하</th></tr>
<tr><td>크레인 규격</td><td>15톤</td><td>20톤</td></tr>
</table>
⑧ 동바리 설치를 위한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td>
<td>
2-5-2 조립식 강관동바리('01년 신설, '09년 보완)
(10공㎥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작 업 반 장</td><td>인</td><td>0.08</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28</td></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0.50</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36</td></tr>
<tr><td>크 레 인</td><td>hr</td><td>0.1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슬라브두께 130c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의 슬라브 두께는 평균두께로 한다.
③ 본 품은 동바리 설치높이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table>
<tr><th>높 이</th><th>10m초과~20m이하</th><th>20m초과~30m이하</th></tr>
<tr><td>할 증 율(%)</td><td>10</td><td>20</td></tr>
</table>
④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⑤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⑥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용월별</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⑦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높 이</th><th>20m이하</th><th>20m초과~30m이하</th></tr>
<tr><td>크레인 규격</td><td>15톤</td><td>20톤</td></tr>
</table>
⑧ 동바리 설치를 위한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9 파이프 루프공</td>
<td>보완</td>
<td>
2-9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1. 장비조립해체
(회당)
<table>
<tr><th>구분</th><th>명칭</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
<tr><td>편성인원</td><td><u>기계운전사</u>
<u>기계설치공</u>
<u>비 계 공</u>
<u>보 통 인 부</u></td><td></td><td>인
〃
〃
〃</td><td><u>1</u>
<u>1</u>
<u>1</u>
<u>1</u></td><td>파이프추진기</td></tr>
<tr><td>편성장비</td><td>트럭크레인</td><td>20톤</td><td>대</td><td>1</td><td></td></tr>
<tr><td rowspan="2">소요일수</td><td>조 립</td><td></td><td>일</td><td>3</td><td></td></tr>
<tr><td>해 체</td><td></td><td>일</td><td>2</td><td></td></tr>
</table>
2. 강관추진공
가. 작업편성인원
(일당)
<table>
<tr><th rowspan="2">명 칭</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3">추 진 관 경</th></tr>
<tr><th>300~600㎜</th><th>700~900㎜</th><th>1,000~1,200㎜</th></tr>
<tr><td>중급기술자</td><td>인</td><td><u>1</u></td><td><u>1</u></td><td><u>1</u></td></tr>
<tr><td>특별인부</td><td>인</td><td><u>1</u></td><td><u>1</u></td><td><u>1</u></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u>2</u></td><td><u>2</u></td><td><u>3</u></td></tr>
<tr><td>용 접 공</td><td>인</td><td><u>1</u></td><td><u>2</u></td><td><u>2</u></td></tr>
<tr><td><u>비 계 공</u></td><td><u>인</u></td><td><u>1</u></td><td><u>1</u></td><td><u>1</u></td></tr>
</table>
</td>
<td>
2-16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u>'09년 보완</u>)

1. 장비조립해체
(회당)
<table>
<tr><th>구분</th><th>명칭</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
<tr><td>편성인원</td><td><u>기계운전사</u>
<u>기계설치공</u>
<u>보 통 인 부</u></td><td></td><td>인
〃
〃</td><td><u>1</u>
<u>1</u>
<u>2</u></td><td>파이프추진기</td></tr>
<tr><td>편성장비</td><td>트럭크레인</td><td>20톤</td><td>대</td><td>1</td><td></td></tr>
<tr><td rowspan="2">소요일수</td><td>조 립</td><td></td><td>일</td><td>3</td><td></td></tr>
<tr><td>해 체</td><td></td><td>일</td><td>2</td><td></td></tr>
</table>
2. 강관추진공
가. 작업편성인원
(일당)
<table>
<tr><th rowspan="2">명 칭</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4">추 진 관 경</th></tr>
<tr><th>300~600㎜</th><th>700~900㎜</th><th>1,000~1,200㎜</th><th><u>1,300~1,500mm</u></th></tr>
<tr><td>중급기술자</td><td>인</td><td><u>1</u></td><td><u>1</u></td><td><u>1</u></td><td><u>1</u></td></tr>
<tr><td>특별인부</td><td>인</td><td><u>2</u></td><td><u>2</u></td><td><u>2</u></td><td><u>2</u></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u>1</u></td><td><u>1</u></td><td><u>2</u></td><td><u>3</u></td></tr>
<tr><td>용 접 공</td><td>인</td><td><u>2</u></td><td><u>2</u></td><td><u>2</u></td><td><u>2</u></td></tr>
</table>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0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td>
<td>보완</td>
<td>
2-10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100㎡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물탱크(살수차)</td><td>16,000ℓ</td><td>시간</td><td>0.012</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3.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1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td>
<td>
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100㎡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물탱크(살수차)</td><td>16,000ℓ</td><td>시간</td><td>0.008</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1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개정
- 주기
② 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td>건축품 발췌</td><td></td><td>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09년 보완)
<table>
<tr><th rowspan="2">길이
폭</th><th colspan="2">3M</th><th colspan="2">6M</th><th colspan="2">9M</th><th colspan="2">12M</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비계공</th><th>특별 인부</th><th>비계공</th><th>특별 인부</th><th>비계공</th><th>특별 인부</th><th>비계공</th><th>특별 인부</th></tr>
<tr><td>2.4M</td><td>0.17</td><td>0.08</td><td>0.28</td><td>0.15</td><td>0.35</td><td>0.11</td><td>0.36</td><td>0.18</td><td rowspan="5">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td></tr>
<tr><td>3.0M</td><td>0.20</td><td>0.09</td><td>0.29</td><td>0.17</td><td>0.39</td><td>0.20</td><td>0.38</td><td>0.19</td></tr>
<tr><td>3.5M</td><td>0.20</td><td>0.13</td><td>0.31</td><td>0.17</td><td>0.42</td><td>0.21</td><td>0.50</td><td>0.25</td></tr>
<tr><td>4.8M</td><td>0.25</td><td>0.13</td><td>0.38</td><td>0.19</td><td>0.47</td><td>0.24</td><td>0.70</td><td>0.35</td></tr>
<tr><td>6.0M</td><td>0.28</td><td>0.14</td><td>0.40</td><td>0.20</td><td>0.51</td><td>0.26</td><td>0.75</td><td>0.38</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1시간 기준이다. 두 개 이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2개 연결시 2시간, 3개 연결시 3시간).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가설울타리</td><td>신설</td><td></td><td>
2-3-3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09년 신설)
(m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20</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7</td><td></td></tr>
<tr><td>굴 삭 기</td><td>0.2㎥</td><td>hr</td><td>0.05</td><td></td></tr>
<tr><td>트럭탑재형크레인</td><td>5ton</td><td>hr</td><td>0.12</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 설치에 대한 품으로 지반평탄작업, 소운반, 강관 매입, 지주(H형강) 설치 및 띠장 매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타설에 소요되는 재료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재생플라스틱 판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용월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h>24개월</th><th>36개월</th><th>48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2</td><td>24</td><td>48</td><td>72</td><td>100</td></tr>
</table>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8 동바리</td><td>신설</td><td></td><td>2-5-3 알루미늄 폼 동바리 ('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0.028</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10</td></tr></table>[주] ①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알루미늄 폼 동바리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알루미늄 폼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table></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5 파이프 비계 (강관비계)</td><td>건축품 발췌</td><td></td><td>2-6-3 강관 조립말비계('09년 보완)
(1대당 높이 2m기준)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비계기본틀(기둥)</td><td>H1700×W1219</td><td>개</td><td>2</td><td></td></tr><tr><td>가 새</td><td>L1518-2개</td><td>조</td><td>2</td><td></td></tr><tr><td>수 평 띠 장</td><td>L1829</td><td>개</td><td>4</td><td></td></tr><tr><td>손 잡 이 기 둥</td><td></td><td>개</td><td>4</td><td></td></tr><tr><td rowspan="2">손 잡 이</td><td>L1219</td><td>개</td><td>2</td><td></td></tr><tr><td>L1829</td><td>개</td><td>4</td><td></td></tr><tr><td>바 퀴</td><td></td><td>개</td><td>4</td><td></td></tr><tr><td>자 키</td><td></td><td>개</td><td>4</td><td></td></tr><tr><td>발 판</td><td>45×200×2000</td><td>장</td><td>7</td><td></td></tr><tr><td>보 통 인 부</td><td>가설·해체</td><td>인</td><td>0.6</td><td></td></tr></table>[주] ①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②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파이프 비계
(강관비계)</td><td>건축품
발췌</td><td></td><td>
2-6-4 강관 비계다리
1. 슬로프식('09년 보완)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15.0</td><td></td></tr>
<tr><td>이 음 철 물</td><td></td><td>개</td><td>1.97</td><td></td></tr>
<tr><td>조 임 철 물</td><td>직교, 자재</td><td>개</td><td>7.23</td><td></td></tr>
<tr><td>받 침 철 물</td><td></td><td>개</td><td>0.26</td><td></td></tr>
<tr><td>철 물</td><td>앙카용</td><td>개</td><td>0.04</td><td></td></tr>
<tr><td>발 판</td><td>P.S.P 420×3,040×3</td><td>매</td><td>0.94</td><td></td></tr>
<tr><td>각 재</td><td>육 송</td><td>㎥</td><td>0.0115</td><td></td></tr>
<tr><td>철 선</td><td>#8~10</td><td>kg</td><td>0.265</td><td></td></tr>
<tr><td>비 계 공</td><td>조립, 해체</td><td>인</td><td>0.273</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며, 계단참은 길이 5.4m, 폭 1.8m를 기준한 것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2. 계단식('09년 신설)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8.956</td><td></td></tr>
<tr><td>조 임 철 물</td><td>직교, 회전</td><td>개</td><td>37.037</td><td></td></tr>
<tr><td>발 판</td><td>250×900</td><td>매</td><td>4.377</td><td></td></tr>
<tr><td>비 계 공</td><td>조립, 해체</td><td>인</td><td>0.320</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 비계다리(계단식)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강관비계다리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파이프 비계
(강관비계)</td><td>건축품
발췌</td><td></td><td>2-6-6 비계용 브라켓 설치
(10개소당)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비 계 공 (인)</th></tr><tr><th>설 치</th><th>해 체</th><th>계</th></tr><tr><td>벽 용 브 라 켓</td><td>0.45</td><td>0.34</td><td></td></tr><tr><td>스 라 브 발 코 니
난 간 용 브 라 켓
지 지 보 수 대</td><td>0.34</td><td>0.26</td><td></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6 낙하물 방지</td><td>신설</td><td></td><td>2-7-2 플라잉넷(‘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0.167</td></tr><tr><td>브 라 켓</td><td></td><td>개</td><td>0.116</td></tr><tr><td>사 다 리</td><td>폭 30㎝×길이 3m 기준</td><td>m</td><td>0.111</td></tr><tr><td>와이어로프</td><td>φ 6</td><td>m</td><td>0.764</td></tr><tr><td>클 램 프</td><td></td><td>개</td><td>0.127</td></tr><tr><td>그 물 망</td><td>5cm 이하</td><td>㎡</td><td>1.39</td></tr></table><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첫 단 이후(8m 이상)에 설치하는 플라잉넷의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⑤ 사용된 그물망은 1회 사용 후 손율 100%로 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8 보호막 설치</td><td>건축품
발췌</td><td></td><td>2-8-1 비계주위 보호막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막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호막이란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시공안전 및 미관 등을 목적으로 시공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8 보호막 설치</td><td>신설</td><td></td><td>2-8-2 갱폼 주위 보호막('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tr><td>비 계 공</td><td>인</td><td>0.004</td></tr></table>[주] ① 본 품은 갱폼 주위 보호막 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막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재료 할증을 포함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9 건축물 보양	건축품 발췌		2-9 건축물 보양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보양면적 ㎡당)

보양개소 \ 구분	종 류	단위	수 량	인력 (인) 구 분	인력 (인) 수 량
콘 크 리 트	가마니양생	매	0.12	보통인부	0.012
	살 수			보통인부	0.004
석 재 면 테 라 조 면 타 일	하 드 롱 지	㎡	1.2	보통인부	0.01
	풀	kg	0.06		
	톱 밥	ℓ	30	보통인부	0.002
기 타 부 분	목 재	㎥	0.007	건축목공	0.03

[주] ①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
② 가마니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6-1-1의 콘크리트 타설품을 계상한 경우 본 표의 콘크리트 보양 품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④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⑥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⑦ 보양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양 생 개 소	양 생 방 법
콘크리트	살수, 가마니덮기
목공사, 치장재	하드롱지바르기 또는 비닐씌우기
대리석, 테라조, 일반석재	하드롱지바르기, 판재·각재로
타일, 테라콧타	주위보호
아스팔트 방수층	가마니덮기, 톱밥깔기
	가마니덮기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0 건축물 현장정리</td><td>건축품
발췌</td><td></td><td>2-10 건축물 현장정리
(연면적 ㎡)
<table>
<tr><th>구 분</th><th>철근콘크리트조</th><th>목 조</th><th>철골조</th><th>조적조</th><th>철골·철근콘크리트조</th></tr>
<tr><td>보통인부
(인)</td><td>0.15</td><td>0.07</td><td>0.07</td><td>0.07</td><td>0.1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공사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② 청소용 소모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11 방진망 설치</td><td>건축품
발췌</td><td></td><td>2-11 방진망 설치및 철거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방 진 망</td><td></td><td>㎡</td><td>1.06</td><td></td></tr>
<tr><td>철 선</td><td></td><td>kg</td><td>0.115</td><td></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19</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소운반·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후 100%로 한다.
③ 방진망 설치를 위해 비계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2 엘리베이터형자재운반용 타워설치</td><td>건축품
발췌</td><td></td><td>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09년 보완)
(m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tr><td>특수비계공</td><td>인</td><td>0.26</td><td>0.13</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EV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5ton 지게차를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6.4㎥) 및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며,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13 자동세륜기 설치</td><td>건축품
발췌</td><td></td><td>2-13 자동세륜기 설치('09년 보완)
(대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tr><td>비 계 공</td><td>인</td><td>2</td><td>2</td><td></td></tr><tr><td>지 게 차</td><td>hr</td><td>1</td><td>1</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 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본 품은 5ton 지게차를 이용하여 세륜기를 설치할 때의 품이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세륜기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사용장비의 사양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과 급수배관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4 쓰레기슈트 설치</td><td>건축품 발췌</td><td></td><td>2-14 쓰레기슈트 설치('99년 신설)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폴리에틸렌관</td><td>Y관 φ450㎜</td><td>m</td><td>1.20</td></tr><tr><td>난간용브라켓</td><td></td><td>개</td><td>0.77</td></tr><tr><td>철 선</td><td>#8</td><td>kg</td><td>0.19</td></tr><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4</td></tr><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4</td></tr></table>[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난간용 브라켓에 대한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④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15 축중계 설치</td><td>신설</td><td></td><td>2-15 축중계('09년 신설)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r><tr><td>비 계 공</td><td>인</td><td>0.127</td><td>0.127</td></tr></table>[주] ①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축중계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d>개월수</td><td>3</td><td>6</td><td>9</td><td>12</td><td>24</td><td>36</td><td>48</td><td>60</td><td>120</td></tr><tr><td>손율(%)</td><td>3</td><td>5</td><td>8</td><td>10</td><td>20</td><td>30</td><td>40</td><td>50</td><td>100</td></tr></table></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 제2장 가설공사(건축)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개 정 목 차 】

현 행			개 정
건축	건축	개정편제	
2-1 가설물의 한도	2-1	2-1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2. 시험실의 규모			2. 시험실의 규모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2-2	2-2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2-2-1 목조가설건축물	2-2-1	2-2-1	2-2-1 목조가설건축물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2-2-2	2-2-2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 조립·해체	2-2-3	2-2-3	1. 조립·해체
2. 손율			2. 손율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2-3 가설울타리	2-3	2-3	2-3 가설울타리
2-3-1 목재 가설 울타리	**2-3-1**	**삭제**	삭제
2-3-2 조립식 가설 울타리	**2-3-2**	**2-3-1**	2-3-1 조립식 가설 울타리
2-3-3 전기아연도금강판 (EGI휀스) 가설울타리	**2-3-3**	**2-3-2**	2-3-2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울타리
		2-3-3	**2-3-3 재생프라스틱 가설울타리 (신설)**
		2-3-4	**2-3-4 가설방음벽 (토목품 발췌)**
			1. 지주 설치
			2. 방음판 설치
2-4 규준틀	2-4	2-4	2-4 규준틀
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	2-4-1	2-4-1	**2-4-1 토공의 비탈규준틀 (토목품 발췌)**
2-4-2 수평규준틀	2-4-2	2-4-2	2-4-2 수평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2. 면적당 규준틀			2. 면적당 규준틀
2-4-3 세로규준틀	2-4-3	2-4-3	2-4-3 세로규준틀
2-5 구조물 동바리	2-5	2-5	2-5 구조물 동바리
2-5-1 목재동바리	**2-5-1**	**삭제**	삭제
2-5-2 강관동바리	**2-5-2**	**2-5-1**	2-5-1 강관동바리
2-5-3 조립식 강관동바리	**2-5-2**	**2-5-2**	2-5-2 조립식 강관동바리
		2-5-3	**2-5-3 알루미늄 폼 동바리(신설)**

현 행			개 정
건축	건축	개정편제	
2-6 구조물 비계	2-6	2-6	2-6 구조물 비계
2-6-1 통나무 비계	2-6-1	삭제	-
1. 재료규격			
2. 비계매기			
3. 외부비계			
4. 내부비계			
5. 비계다리			
6. 철골조용 비계(현장 리벳팅용)			
2-6-2 파이프 비계(강관비계)	2-6-2	삭제	삭제
1. 강관비계매기		2-6-1	2-6-1 강관비계매기
2. 강관틀 비계매기		2-6-2	2-6-2 강관틀 비계매기
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2-6-3	2-6-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4. 강관 비계다리		2-6-4	**2-6-4 강관 비계다리**
			1. 슬로프식
			2. 계단식
5. 공기에 대한 손율		2-6-5	2-6-5 공기에 대한 손율
6. 비계용 브라켓 설치		2-6-6	2-6-6 비계용 브라켓 설치
2-7 낙하물 방지	2-7	2-7	2-7 낙하물 방지
2-7-1 비계목사용	2-7-1	삭제	삭제
2-7-2 강관사용	2-7-2	2-7-1	2-7-1 강관 사용
		2-7-2	**2-7-2 플라잉넷(신설)**
2-8 보호막 설치	2-8	2-8	2-8 보호막 설치
		2-8-1	**2-8-1 비계주위 보호막**
		2-8-2	**2-8-2 갱폼주위 보호막(신설)**
2-9 건축물 보양	2-9	2-9	2-9 건축물 보양
2-10 건축물 현장정리	2-10	2-10	2-10 건축물 현장정리
2-11 방진망 설치	2-11	2-11	2-11 방진망 설치 및 철거
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2-12	2-12	**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
2-13 자동세륜기 설치	2-13	2-13	2-13 자동세륜기 설치
2-14 쓰레기슈트 설치	2-14	2-14	2-14 쓰레기슈트 설치
		2-15	**2-15 축중계, 계측기(신설)**
		2-16	**2-16 파이프 루프공(토목품 발췌)**
		2-17	**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토목품 발췌)**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 가설물의 한도</td>
<td>편제
수정</td>
<td>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table>
<tr><th>본건물의 구분
단위
종 별</th><th></th><th>1,000㎡
이 하</th><th>3,000㎡
이 하</th><th>6,000㎡
이 하</th><th>6,000㎡
초 과</th></tr>
<tr><td>감 독·감 리 사 무 소</td><td>㎡</td><td>18</td><td>38</td><td>46</td><td>80</td></tr>
<tr><td>수 급 자 사 무 소</td><td>㎡</td><td>24</td><td>50</td><td>60</td><td>100</td></tr>
<tr><td>기 타 자 재 창 고</td><td>㎡</td><td>70</td><td>100</td><td>130</td><td>180</td></tr>
</table>

<u>2. 시험실의 규모(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함)('98년, '06년 보완)</u>
<table>
<tr><th>구 분</th><th>공 사 규 모</th><th>규모(㎡)</th><th>비 고</th></tr>
<tr><td><u>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u></td><td><u>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u></td><td><u>100</u></td><td></td></tr>
<tr><td><u>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u></td><td><u>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공사로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공사</u></td><td><u>50</u></td><td></td></tr>
<tr><td><u>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u></td><td><u>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u></td><td><u>발주자와
계약한
면적</u></td><td></td></tr>
</table>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③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 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④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A = 0.4 \times \frac{N}{n}$ (㎡)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td>
<td>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table>
<tr><th>본건물의 구분
단위
종 별</th><th></th><th>1,000㎡
이 하</th><th>3,000㎡
이 하</th><th>6,000㎡
이 하</th><th>6,000㎡
초 과</th></tr>
<tr><td>감 독·감 리 사 무 소</td><td>㎡</td><td>18</td><td>38</td><td>46</td><td>80</td></tr>
<tr><td>수 급 자 사 무 소</td><td>㎡</td><td>24</td><td>50</td><td>60</td><td>100</td></tr>
<tr><td>기 타 자 재 창 고</td><td>㎡</td><td>70</td><td>100</td><td>130</td><td>180</td></tr>
</table>
[주] ① 가설물 부지 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③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 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④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A = 0.4 \times \frac{N}{n}$ (㎡)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td>
<td>
- 품 개정
'2.'의 주기
'1.'로 이동

- '2'의 표
위치 변경
및
보완
</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 가설물의 한도</td><td>보완</td><td>⑤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 = $\sqrt{W}$×3.3
A : 면적(㎡)
W : 전력용량(kWH)
⑥ 위의 ④, ⑤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개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기준면적>
<table><tr><th>종 별</th><th>용 도</th><th>기준면적</th><th>비 고</th></tr><tr><td>식 당</td><td>30인 이상일 때</td><td>1㎡</td><td>1인당</td></tr><tr><td>근 로 자 숙 소</td><td></td><td>4.2㎡</td><td>1인당</td></tr><tr><td>휴 게 실</td><td>기거자 3명당 3㎡</td><td>1.0㎡</td><td>1인당</td></tr><tr><td>화 장 실</td><td>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td><td></td><td></td></tr><tr><td></td><td>여자 15명당 1기</td><td>2.2㎡</td><td>1변기당(대·소변)</td></tr><tr><td></td><td>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td><td></td><td></td></tr><tr><td>탈의실·샤워장</td><td></td><td>2.0㎡</td><td>1인당</td></tr><tr><td>창 고</td><td>시멘트용</td><td>1식</td><td>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td></tr><tr><td>목 공 작 업 장</td><td>거푸집용</td><td>20㎡</td><td>거푸집 사용량 1,000㎡당</td></tr><tr><td>철근공작업장</td><td>가공, 보관</td><td>30~60㎡</td><td>사용량 100ton당</td></tr><tr><td>철골공작업장</td><td>공작도 작성</td><td>30㎡</td><td>사용량 100ton당 (필요시)</td></tr><tr><td></td><td>현장가공 및 재료보관</td><td>200㎡</td><td>사용량 100ton당</td></tr><tr><td>미장공작업장</td><td>믹서 및 재료설치</td><td>7~15㎡</td><td>미장면적 330㎡당</td></tr><tr><td>함석공작업장</td><td>가공 및 재료설치</td><td>15~30㎡</td><td>함석 330㎡당</td></tr><tr><td>석 공 작 업 장</td><td>가공 및 공작도 작성</td><td>70~100㎡</td><td>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td></tr><tr><td>콘 크 리 트</td><td>주위벽 막을 때</td><td>0.7㎡</td><td>골재 1㎥당</td></tr><tr><td>골 재 적 치 장</td><td>주위벽 안할 때</td><td>1.0㎡</td><td>골재 1㎥당</td></tr></table></td><td>⑤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A = $\sqrt{W}$×3.3
A : 면적(㎡)
W : 전력용량(kWH)
⑥ 위의 ④, ⑤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개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식당, 근로자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가설물 기준면적>
<table><tr><th>종 별</th><th>용 도</th><th>기준면적</th><th>비 고</th></tr><tr><td>식 당</td><td>30인 이상일 때</td><td>1㎡</td><td>1인당</td></tr><tr><td>근 로 자 숙 소</td><td></td><td>4.2㎡</td><td>1인당</td></tr><tr><td>휴 게 실</td><td>기거자 3명당 3㎡</td><td>1.0㎡</td><td>1인당</td></tr><tr><td>화 장 실</td><td>대변기 : 남자 20명당 1기</td><td></td><td></td></tr><tr><td></td><td>여자 15명당 1기</td><td>2.2㎡</td><td>1변기당(대·소변)</td></tr><tr><td></td><td>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td><td></td><td></td></tr><tr><td>탈의실·샤워장</td><td></td><td>2.0㎡</td><td>1인당</td></tr><tr><td>창 고</td><td>시멘트용</td><td>1식</td><td>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비교</td></tr><tr><td>목 공 작 업 장</td><td>거푸집용</td><td>20㎡</td><td>거푸집 사용량 1,000㎡당</td></tr><tr><td>철근공작업장</td><td>가공, 보관</td><td>30~60㎡</td><td>사용량 100ton당</td></tr><tr><td>철골공작업장</td><td>공작도 작성</td><td>30㎡</td><td>사용량 100ton당 (필요시)</td></tr><tr><td></td><td>현장가공 및 재료보관</td><td>200㎡</td><td>사용량 100ton당</td></tr><tr><td>미장공작업장</td><td>믹서 및 재료설치</td><td>7~15㎡</td><td>미장면적 330㎡당</td></tr><tr><td>함석공작업장</td><td>가공 및 재료설치</td><td>15~30㎡</td><td>함석 330㎡당</td></tr><tr><td>석 공 작 업 장</td><td>가공 및 공작도 작성</td><td>70~100㎡</td><td>매월 가공량 10㎥당 (필요시)</td></tr><tr><td>콘 크 리 트</td><td>주위벽 막을 때</td><td>0.7㎡</td><td>골재 1㎥당</td></tr><tr><td>골 재 적 치 장</td><td>주위벽 안할 때</td><td>1.0㎡</td><td>골재 1㎥당</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 가설물의 한도</td><td>보완</td><td>
⑧ 자재창고 기준
(m^2당)
<table>
<tr><th>구 분</th><th>자재종류</th><th>규 격</th><th>단위</th><th>수 량</th><th>쌓기단수</th></tr>
<tr><td>미장재료창고</td><td>석 회</td><td>17㎏들이</td><td>포</td><td>75~100</td><td>15~20</td></tr>
<tr><td>철물잡품창고</td><td>함 석</td><td>#28.90㎝×180㎝</td><td>매</td><td>100~300</td><td>200~600</td></tr>
<tr><td></td><td>못</td><td>60㎏/통, 직경 48㎝</td><td>통</td><td>4~8</td><td>1~2</td></tr>
<tr><td></td><td>철 선</td><td>50㎏/권, #10
경 100㎝, 높이 17㎝</td><td>권</td><td>5~7</td><td>5~7</td></tr>
<tr><td></td><td>루 핑</td><td>19.8㎡/권, 경 21㎝
길이 97㎝</td><td>권</td><td>23~46</td><td>1~2</td></tr>
<tr><td></td><td>합 판</td><td>두께 6㎜, 90㎝×180㎝</td><td>매</td><td>50~100</td><td>100~200</td></tr>
<tr><td></td><td>텍 스</td><td>두께 12㎜, 90㎝×180㎝</td><td>매</td><td>50~75</td><td>100~150</td></tr>
<tr><td>도 료 창 고</td><td>페인트</td><td>25㎏, 22㎝×22㎝×40㎝</td><td>통</td><td>12~36</td><td>1~3</td></tr>
</table>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table>
<tr><th>구 분</th><th>수량</th><th>비고</th></tr>
<tr><td>사 무 소</td><td>0.15</td><td rowspan="4">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td></tr>
<tr><td>창 고</td><td>0.06</td></tr>
<tr><td>작 업 장 (일간)</td><td>0.10</td></tr>
<tr><td>숙 소</td><td>0.075</td></tr>
</table>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u>⑬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은 기 계약된 유사규모 공사의 시험실 규모를 의미한다.</u>
</td><td>
⑧ 자재창고 기준
(m^2당)
<table>
<tr><th>구 분</th><th>자재종류</th><th>규 격</th><th>단위</th><th>수 량</th><th>쌓기단수</th></tr>
<tr><td>미장재료창고</td><td>석 회</td><td>17㎏들이</td><td>포</td><td>75~100</td><td>15~20</td></tr>
<tr><td>철물잡품창고</td><td>함 석</td><td>#28.90㎝×180㎝</td><td>매</td><td>100~300</td><td>200~600</td></tr>
<tr><td></td><td>못</td><td>60㎏/통, 직경 48㎝</td><td>통</td><td>4~8</td><td>1~2</td></tr>
<tr><td></td><td>철 선</td><td>50㎏/권, #10
경 100㎝, 높이 17㎝</td><td>권</td><td>5~7</td><td>5~7</td></tr>
<tr><td></td><td>루 핑</td><td>19.8㎡/권, 경 21㎝
길이 97㎝</td><td>권</td><td>23~46</td><td>1~2</td></tr>
<tr><td></td><td>합 판</td><td>두께 6㎜, 90㎝×180㎝</td><td>매</td><td>50~100</td><td>100~200</td></tr>
<tr><td></td><td>텍 스</td><td>두께 12㎜, 90㎝×180㎝</td><td>매</td><td>50~75</td><td>100~150</td></tr>
<tr><td>도 료 창 고</td><td>페인트</td><td>25㎏, 22㎝×22㎝×40㎝</td><td>통</td><td>12~36</td><td>1~3</td></tr>
</table>
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table>
<tr><th>구 분</th><th>수량</th><th>비고</th></tr>
<tr><td>사 무 소</td><td>0.15</td><td rowspan="4">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td></tr>
<tr><td>창 고</td><td>0.06</td></tr>
<tr><td>작 업 장(일간)</td><td>0.10</td></tr>
<tr><td>숙 소</td><td>0.075</td></tr>
</table>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 및 전기·수도 인입시설, 층별간이화장실(기성제품), 소각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건설기계 주기장 산정기준
㉮ 대당 소요면적 : 36㎡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를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 가설물의 한도</td><td>보완</td><td></td><td>2. 시험실의 규모(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함)('98년, '06년, '09년 보완)
<table><tr><th>구 분</th><th>공 사 규 모</th><th>규모(㎡)</th><th>비 고</th></tr><tr><td>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td><td>100이상</td><td>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tr><td>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td><td>50이상</td><td>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tr><td>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td><td>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td><td>30이상</td><td>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tr><td>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td><td>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td><td>발주자와 계약한 면적</td><td>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table>[주]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은 기 계약된 유사규모 공사의 시험실 규모를 의미한다.</td><td>- '2'의 표 위치 변경 및 보완

- 주기 ⑬ 2.항목으로 이동</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편제 수정	2-2-1 목조가설건축물	2-2-1 목조가설건축물 **1. 재료 및 품**	

(㎡당)

종별 \ 구분 / 사용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 (개)	짧은비계목 (개)	골함석 (매)	루핑 (㎡)	부자재 (%)	건축목공 (인)	함석공 (인)	루핑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소										
3개월이내	0.050	-	-	-	1.3	12.9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11.4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10.6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10.1	0.6~1.0	0.03	-	0.2~0.3
창고류										
3개월이내	0.040	-	-	-	1.3	4.7	0.35~0.6	-	0.01	0.15~0.2
6개월	0.060	-	-	0.4	-	3.2	0.35~0.6	0.03	-	0.15~0.2
1개년	0.080	-	-	0.6	-	2.4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01	-	-	0.8	-	1.8	0.35~0.6	0.03	-	0.15~0.2
헛간										
3개월이내	-	0.07	0.03	-	1.3	19.5	0.05~0.1	-	0.01	0.20
6개월	-	0.10	0.04	0.4	-	12.7	0.05~0.1	0.03	-	0.20
1개년	-	0.14	0.06	0.6	-	8.3	0.05~0.1	0.03	-	0.20
1개년이상	-	0.20	0.12	0.8	-	5.8	0.05~0.1	0.03	-	0.20
숙소·휴게실·식당										
3개월이내	0.046	-	-	-	1.3	6.0	0.35~0.6	-	0.01	0.15~0.2
6개월	0.068	-	-	0.4	-	4.0	0.35~0.6	0.03	-	0.15~0.2
1개년	0.091	-	-	0.6	-	3.0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14	-	-	0.8	-	2.4	0.35~0.6	0.03	-	0.15~0.2
화장실·샤워·탈의실										
3개월이내	0.050	-	-	-	1.3	6.2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4.2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3.1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2.4	0.6~1.0	0.03	-	0.2~0.3

종별 \ 구분 / 사용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 (개)	짧은비계목 (개)	골함석 (매)	루핑 (㎡)	부자재 (%)	건축목공 (인)	함석공 (인)	루핑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소										
3개월이내	0.050	-	-	-	1.3	12.9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11.4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10.6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10.1	0.6~1.0	0.03	-	0.2~0.3
창고류										
3개월이내	0.040	-	-	-	1.3	4.7	0.35~0.6	-	0.01	0.15~0.2
6개월	0.060	-	-	0.4	-	3.2	0.35~0.6	0.03	-	0.15~0.2
1개년	0.080	-	-	0.6	-	2.4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01	-	-	0.8	-	1.8	0.35~0.6	0.03	-	0.15~0.2
헛간										
3개월이내	-	0.07	0.03	-	1.3	19.5	0.05~0.1	-	0.01	0.20
6개월	-	0.10	0.04	0.4	-	12.7	0.05~0.1	0.03	-	0.20
1개년	-	0.14	0.06	0.6	-	8.3	0.05~0.1	0.03	-	0.20
1개년이상	-	0.20	0.12	0.8	-	5.8	0.05~0.1	0.03	-	0.20
숙소·휴게실·식당										
3개월이내	0.046	-	-	-	1.3	6.0	0.35~0.6	-	0.01	0.15~0.2
6개월	0.068	-	-	0.4	-	4.0	0.35~0.6	0.03	-	0.15~0.2
1개년	0.091	-	-	0.6	-	3.0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14	-	-	0.8	-	2.4	0.35~0.6	0.03	-	0.15~0.2
화장실·샤워·탈의실										
3개월이내	0.050	-	-	-	1.3	6.2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4.2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3.1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2.4	0.6~1.0	0.03	-	0.2~0.3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
<td></td>
<td>[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창호 및 유리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비에 대한 비율이며, 못, 철물, 철선을 말한다.
⑤ 공구손료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의 골함석 치수는 #31, 1.8m×0.9m, 철선은 지름 4.2㎜(#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⑦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이나 루핑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루핑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특기시방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준한다.
⑧ 본 품 이외의 지붕잇기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특수 구조의 가설 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⑩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가 필요 없는 지반에서 가설 건물의 골조공사(바닥제외)에 필요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의 마감재료 및 인력은 별도 계상하며 건물의 내외벽 마감재료 및 창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설건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기준>
(㎡당)
<table>
<tr><th>구분 \ 수량</th><th></th><th>소 요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사무실</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내 벽</td><td>0.5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외 벽</td><td>0.5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천 정</td><td>1.0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4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 rowspan="4">창 고</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외 벽</td><td>1.2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able>
* 사무실 창문(유리창) 크기는 1.5m×1.4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 크기는 0.9m×2.1m 여닫이 문을 기준하였음.
* 창고문은 1.3m×1.2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 쌍여닫이 문으로 2.0m×1.2m를 기준하였음.</td>
<td>[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창호 및 유리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비에 대한 비율이며, , 철물, 철선을 말한다.
⑤ 공구손료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의 골함석 치수는 #31, 1.8m×0.9m, 철선은 지름 4.2㎜(#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⑦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이나 루핑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루핑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특기시방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준한다.
⑧ 본 품 이외의 지붕잇기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특수 구조의 가설 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⑩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가 필요 없는 지반에서 가설 건물의 골조공사(바닥제외)에 필요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의 마감재료 및 인력은 별도 계상하며 건물의 내외벽 마감재료 및 창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설건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기준>
(㎡당)
<table>
<tr><th>구분 \ 수량</th><th></th><th>소 요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사무실</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내 벽</td><td>0.5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외 벽</td><td>0.5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천 정</td><td>1.0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4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 rowspan="4">창 고</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외 벽</td><td>1.2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able>
* 사무실 창문(유리창) 크기는 1.5m×1.4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 크기는 0.9m×2.1m 여닫이 문을 기준하였음.
* 창고문은 1.3m×1.2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 쌍여닫이 문으로 2.0m×1.2m를 기준하였음.</td>
<td>- 주기
'못' 삭제</td>
</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보완	**[참 고]** 사용기간별 / 구분 3개월**미만** (%) / 6개월**미만** (%) / 1개년**미만** (%) / 1개년이상 (%) 목재 30 45 60 75 긴비계목 25 35 50 75 짧은비계목 12 17 25 50 **못** **100** **100** **100** **100** 철물 30 45 60 75 골함석 20 35 55 75 철선 100 100 100 100 루핑 100 100 100 100 창호 30 40 60 75 유리 60 65 75 100	**2. 손율** 사용기간별 / 구분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1개년이상 (%) 목재 30 45 60 75 긴비계목 25 35 50 75 짧은비계목 12 17 25 50 철물 30 45 60 75 골함석 20 35 55 75 철선 100 100 100 100 루핑 100 100 100 100 창호 30 40 60 75 유리 60 65 75 100 흄관 80 100 100 100 강재류 15 30 50 70 돌망태 100 100 100 100 [주] ① 본 품에 있어서 재료의 길이가 2m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② 타이롯트는 전부 스크랩 공제한다. ③ 본 품에서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등)는 토류벽과 가교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④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 × 신재단가 × 손율 + 할증량 × 신재단가 - 할증량 × 공제율 × 고재단가	- 표안 '미만' 삭제 - 표 안'못'삭제 - 주기 ① 수정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보완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92년 신설) 1. 조립·해체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92년 신설, **'09년 보완**) 1. 조립·해체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 자 재	부자재(%)	건축목공 (인)	보통인부 (인)
사 무 실	3 개 월	1식	16.8	0.40	0.20
	6 개 월	〃	15.4		
	1 년	〃	12.6		
	1 년 이 상	〃	11.2		
창 고	3 개 월	1식	19.5	0.30	0.15
	6 개 월	〃	16.9		
	1 년	〃	14.3		
	1 년 이 상	〃	13.0		

[주] ① 본 품은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 자 재	부자재(%)	건축목공 (인)	보통인부 (인)
사 무 실	3 개 월	1식	16.8	0.30	0.12
	6 개 월	〃	15.4		
	1 년	〃	12.6		
	1 년 이 상	〃	11.2		
창 고	3 개 월	1식	19.5	0.23	0.10
	6 개 월	〃	16.9		
	1 년	〃	14.3		
	1 년 이 상	〃	13.0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사무소, 창고) BASE CHANNEL / 두께 : 2.0㎜이상 / m / 0.44 / 0.44 TOP CHANNEL / 두께 : 2.0㎜이상 / 〃 / 0.44 / 0.44 외부 PANEL(벽) / 1,200×2,400㎜ / 매 / 0.20 / 0.23 〃 (창문) / 〃 / 〃 / 0.12 / 0.08 〃 (철재문) / 〃 / 〃 / 0.03 / 0.04 내부 PANEL(벽) / 〃 / 〃 / 0.15 / - 〃 (목재문) / 〃 / 〃 / 0.05 / - PANEL JOINT(AL-BAR) / L=2,400㎜ / 조 / 0.31 / 0.31 CANOPY(출입구채양) / 600×1,200㎜ / 매 / 0.03 / 0.04 박공 PANEL / 〃 / 0.02 / 0.02 ROOF SHEET / 0.5㎜ COLOR SHEET / ㎡ / 1.23 / 1.23 트러스 / L=7.2m / 개 / 0.07 / 0.07 중도리(PURIN) / 두께 : 2.0이상 / 〃 / 1.52 / 1.52 천정판 / 미장합판+50㎜ GLASS WOOL / 매 / 0.69 / - T-BAR / / m / 1.53 / -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인력(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정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사무소, 창고) BASE CHANNEL / 두께 : 2.0㎜이상 / m / 0.44 / 0.44 TOP CHANNEL / 두께 : 2.0㎜이상 / 〃 / 0.44 / 0.44 외부 PANEL(벽) / 1,200×2,400㎜ / 매 / 0.20 / 0.23 〃 (창문) / 〃 / 〃 / 0.12 / 0.08 〃 (철재문) / 〃 / 〃 / 0.03 / 0.04 내부 PANEL(벽) / 〃 / 〃 / 0.15 / - 〃 (목재문) / 〃 / 〃 / 0.05 / - PANEL JOINT(AL-BAR) / L=2,400㎜ / 조 / 0.31 / 0.31 CANOPY(출입구채양) / 600×1,200㎜ / 매 / 0.03 / 0.04 박공 PANEL / 〃 / 0.02 / 0.02 ROOF SHEET / 0.5㎜ COLOR SHEET / ㎡ / 1.23 / 1.23 트러스 / L=7.2m / 개 / 0.07 / 0.07 중도리(PURIN) / 두께 : 2.0이상 / 〃 / 1.52 / 1.52 천정판 / 미장합판+50㎜ GLASS WOOL / 매 / 0.69 / - T-BAR / / m / 1.53 / -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인력(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정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
<td>보완</td>
<td>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table>
<tr><th rowspan="2">길이
폭</th><th colspan="2">3M</th><th colspan="2">6M</th><th colspan="2">9M</th><th colspan="2">12M</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r>
<tr><td>2.4M</td><td>0.29</td><td>0.14</td><td>0.44</td><td>0.22</td><td>0.53</td><td>0.16</td><td>0.61</td><td>0.3</td><td rowspan="5">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td></tr>
<tr><td>3.0M</td><td>0.33</td><td>0.17</td><td>0.5</td><td>0.25</td><td>0.59</td><td>0.29</td><td>0.67</td><td>0.33</td></tr>
<tr><td>3.5M</td><td>0.36</td><td>0.18</td><td>0.53</td><td>0.26</td><td>0.61</td><td>0.3</td><td>0.71</td><td>0.36</td></tr>
<tr><td>4.8M</td><td>0.44</td><td>0.22</td><td>0.61</td><td>0.3</td><td>0.71</td><td>0.36</td><td>0.77</td><td>0.38</td></tr>
<tr><td>6.0M</td><td>0.5</td><td>0.25</td><td>0.66</td><td>0.33</td><td>0.77</td><td>0.38</td><td>0.8</td><td>0.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2시간 기준이다.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td>
<td>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09년 보완)
<table>
<tr><th rowspan="2">길이
폭</th><th colspan="2">3M</th><th colspan="2">6M</th><th colspan="2">9M</th><th colspan="2">12M</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h>비계공</th><th>특별인부</th></tr>
<tr><td>2.4M</td><td>0.17</td><td>0.08</td><td>0.28</td><td>0.15</td><td>0.35</td><td>0.11</td><td>0.36</td><td>0.18</td><td rowspan="5">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td></tr>
<tr><td>3.0M</td><td>0.20</td><td>0.09</td><td>0.29</td><td>0.17</td><td>0.39</td><td>0.20</td><td>0.38</td><td>0.19</td></tr>
<tr><td>3.5M</td><td>0.20</td><td>0.13</td><td>0.31</td><td>0.17</td><td>0.42</td><td>0.21</td><td>0.50</td><td>0.25</td></tr>
<tr><td>4.8M</td><td>0.25</td><td>0.13</td><td>0.38</td><td>0.19</td><td>0.47</td><td>0.24</td><td>0.70</td><td>0.35</td></tr>
<tr><td>6.0M</td><td>0.28</td><td>0.14</td><td>0.40</td><td>0.20</td><td>0.51</td><td>0.26</td><td>0.75</td><td>0.38</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1시간 기준이다. 두 개 이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2개 연결시 2시간, 3개 연결시 3시간).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③ 수정</td>
</tr>
<tr>
<td>2-3 가설울타리</td>
<td>삭제</td>
<td>
2-3-1 목재 가설 울타리
(m당)
<table>
<tr><th colspan="2">재료 및 품
공종별</th><th>목 재
(㎥)</th><th>철 재
(kg)</th><th>못
(kg)</th><th>건축목공
(인)</th><th colspan="2">보 통 인 부</th></tr>
<tr><th></th><th></th><th></th><th></th><th></th><th></th><th>가설(인)</th><th>철거(인)</th></tr>
<tr><td rowspan="3">판 장 울</td><td>1.8m</td><td>0.045</td><td>-</td><td>0.15</td><td>0.12</td><td>0.056</td><td>0.094</td></tr>
<tr><td>2.7m</td><td>0.083</td><td>-</td><td>0.22</td><td>0.18</td><td>0.072</td><td>0.12</td></tr>
<tr><td>3.6m</td><td>0.158</td><td>-</td><td>0.33</td><td>0.28</td><td>0.11</td><td>0.18</td></tr>
<tr><td>철조망울</td><td>1.8m</td><td>0.008</td><td>철조망
14m</td><td>0.03</td><td>0.027</td><td>0.055</td><td>0.044</td></tr>
<tr><td>골철판울</td><td>1.8m</td><td>0.063</td><td>골함석
1.6매</td><td>0.035</td><td>0.072</td><td>0.04</td><td>0.072</td></tr>
</table>
</td>
<td>
2-3-1 목재 가설 울타리

<삭제>
</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td><td>[주] ① 가설 울타리는 공사 현장의 관리와 보안상의 필요로 인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재료·구조·미관 등에 대하여 시방서에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에 준한다.
② 외부를 대패질할 때는 대패질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페인트 칠할 경우의 재료 및 품은 “제19장 칠공사”에 의거 별도 계상한다.
④ 출입문의 문을 설치할 경우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철조망울의 널재란의 ‘간격 20㎝ 대각선’은 철조망을 수평간격 20㎝로 하여 기둥에 U형 못으로 고정하고 기둥간을 대각선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⑥ 가설 표준
<table>
<tr><th>재료 / 공종별</th><th>기 둥</th><th>버팀기둥</th><th>널 재</th><th>띠 장</th></tr>
<tr><td>판장울 1.8m</td><td>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40㎝로 한다.</td><td>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3.6m (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두 께 1.2㎝</td><td>3×6㎝ 각재, 간격 90㎝</td></tr>
<tr><td>판장울 2.7m</td><td>9㎝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로 한다.</td><td>9㎝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3.6m(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두 께 1.5㎝</td><td>3×6㎝ 각재, 간격 90㎝</td></tr>
<tr><td>판장울 3.6m</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로 한다.</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m (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두 께 1.8㎝</td><td>3×10㎝ 각재, 간격 90㎝</td></tr>
<tr><td>철조망울 1.8m</td><td>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로 한다.</td><td></td><td>가시철선 지름 2㎜ (#14) 수평간격 20㎝ 대각선으로 보강한다.</td><td></td></tr>
<tr><td>골철판울 1.8m</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로 한다.</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m (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골 함 석 #30 (66㎝×180㎝)</td><td></td></tr>
</table>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td><td>⑦ 손율
<table><tr><th>사용기간 / 재료명</th><th>3개월 (%)</th><th>4~6개월 (%)</th><th>7~8개월 (%)</th><th>9~10개월 (%)</th><th>11~12개월 (%)</th><th>1년이상 (%)</th></tr><tr><td>나 무 기 둥</td><td>30</td><td>45</td><td>60</td><td>75</td><td>90</td><td>100</td></tr><tr><td>철 물</td><td>30</td><td>45</td><td>60</td><td>75</td><td>90</td><td>100</td></tr><tr><td>못, 기 타</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table>* 1년이상 사용하는 가설물의 재료의 손율은 100%로 계상하며 장기를 요하는 공사(계속 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에서는 재료의 손율은 반복 계상할 수 없음.</td><td><삭제></td><td></td></tr>
<tr><td>2-3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u>2-3-2</u> 조립식 가설 울타리<u>('99년 보완)</u>
(m당)<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칼 라 철 판</td><td>800×2,000×0.45㎜</td><td>매</td><td>1.33</td><td></td></tr><tr><td>기 둥</td><td>각 파이프 60×60㎜</td><td>m</td><td>1.76</td><td></td></tr><tr><td>띠 장</td><td>C-60×30×10×2.2㎜</td><td>m</td><td>3</td><td></td></tr><tr><td>콘 크 리 트</td><td>기 초</td><td>㎥</td><td>0.038</td><td></td></tr><tr><td><u>건 축 목 공</u></td><td></td><td>인</td><td>0.1</td><td></td></tr><tr><td><u>인 부</u></td><td></td><td>인</td><td>0.05</td><td></td></tr></table>[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⑤ 손 율<table><tr><th>재 료 / 사용기간</th><th>손 율 (%)
칼 라 철 판</th><th>기둥 및 띠장</th></tr><tr><td>3개월</td><td>16</td><td>6</td></tr><tr><td>6개월</td><td>25</td><td>10</td></tr><tr><td>12개월</td><td>38</td><td>19</td></tr><tr><td>24개월</td><td>53</td><td>37</td></tr><tr><td>36개월</td><td>70</td><td>55</td></tr><tr><td>48개월</td><td>100</td><td>73</td></tr></table></td><td><u>2-3-1</u> 조립식 가설 울타리<u>('09년 보완)</u>
1.설치 (m당)<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칼 라 철 판</td><td>800×2,000×0.45mm</td><td>매</td><td>1.33</td><td></td></tr><tr><td>기 둥</td><td>각파이프 60×60mm</td><td>m</td><td>1.76</td><td></td></tr><tr><td>띠 장</td><td>C-60×30×10×2.2mm</td><td>m</td><td>3</td><td></td></tr><tr><td>콘 크 리 트</td><td>기초</td><td>㎥</td><td>0.038</td><td></td></tr><tr><td><u>비 계 공</u></td><td></td><td>인</td><td>0.1</td><td></td></tr><tr><td><u>보 통 인 부</u></td><td></td><td>인</td><td>0.05</td><td></td></tr></table>[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table><tr><th>구분</th><th>가 설 표 준</th></tr><tr><td>높 이</td><td>2.0m</td></tr><tr><td>기 둥</td><td>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25cm로 한다.</td></tr><tr><td>버팀기둥</td><td>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간격은 3.6m로 한다.</td></tr><tr><td>널 재</td><td>800×2,000mm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cm로 한다.</td></tr><tr><td>띠 장</td><td>C형강(60×30×10×2.2mm)을 사용하고 간격은 85cm로 한다.</td></tr></table>⑥ 기둥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파이프 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td><td>- 품 개정
- 주기 이동</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⑥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 분</th><th>가 설 표 준</th></tr><tr><td>높 이</td><td>2.0m</td></tr><tr><td>기 둥</td><td>각파이프(60㎜×60㎜)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25㎝로 한다.</td></tr><tr><td>버 팀 기 둥</td><td>각파이프(60㎜×60㎜)를 사용하고 간격은 3.6m로 한다.</td></tr><tr><td>널 재</td><td>800×2,000㎜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로 한다.</td></tr><tr><td>띠 장</td><td>C형강(60×30×10×2.2㎜)을 사용하고 간격은 85㎝로 한다.</td></tr></table>⑦ 기둥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파이프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td><td>2. 공기에 대한 손율
<table><tr><th>재료 / 사용시간</th><th>손 율 (%)
칼라철판</th><th>손 율 (%)
기둥 및 띠장</th></tr><tr><td>3개월</td><td>16</td><td>6</td></tr><tr><td>6개월</td><td>25</td><td>10</td></tr><tr><td>12개월</td><td>38</td><td>19</td></tr><tr><td>24개월</td><td>53</td><td>37</td></tr><tr><td>36개월</td><td>70</td><td>55</td></tr><tr><td>48개월</td><td>100</td><td>73</td></tr></table></td><td></td></tr>
<tr><td>2-3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u>2-3-3</u>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 울타리('02년 신설)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E G I 철 판</td><td>550×2400</td><td>매</td><td>2</td><td></td></tr><tr><td>강 관 파 이 프</td><td>φ 48.6</td><td>m</td><td>6.6</td><td></td></tr><tr><td>클 램 프</td><td>자동</td><td>개</td><td>0.28</td><td></td></tr><tr><td></td><td>고정</td><td>개</td><td>2.26</td><td></td></tr><tr><td>연 결 핀</td><td></td><td>개</td><td>0.56</td><td></td></tr><tr><td>볼 트 / 넛 트</td><td></td><td>개</td><td>13.33</td><td></td></tr><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u>0.08</u></td><td></td></tr><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2</td><td></td></tr></table>[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가설울타리 상단에 설치하는 분진망은 별도 계상한다.
③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 품의 40%를 별도 가산한다.
⑥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손율은 <u>"2-3-2 조립식 가설울타리"</u>의 손율을 적용한다.</td><td><u>2-3-2</u>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 울타리<u>('09년 보완)</u>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E G I 철 판</td><td>500 × 2400</td><td>매</td><td>2</td><td></td></tr><tr><td>강관 파이프</td><td>φ48.6</td><td>m</td><td>6.6</td><td></td></tr><tr><td>클 램 프</td><td>자동</td><td>개</td><td>0.28</td><td></td></tr><tr><td></td><td>고정</td><td>개</td><td>2.26</td><td></td></tr><tr><td>연 결 핀</td><td></td><td>개</td><td>0.56</td><td></td></tr><tr><td>볼트/ 넛트</td><td></td><td>개</td><td>13.33</td><td></td></tr><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u>0.04</u></td><td></td></tr><tr><td><u>보통인부</u></td><td></td><td>인</td><td>0.02</td><td></td></tr><tr><td><u>굴 삭 기</u></td><td><u>0.2 ㎥</u></td><td>hr</td><td><u>0.05</u></td><td></td></tr></table>[주] ① <u>본 품은 0.2㎥ 굴삭기를 사용하여 EGI 휀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품이다.</u>"
②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울타리 상단에 설치하는 분진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본 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 품의 40%를 별도 가산한다.
⑦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손율은 <u>"2-3-1 조립식 가설울타리"</u>의 손율을 적용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① 추가
- 주기
⑦ 수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⑧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 분</th><th>가 설 표 준</th></tr><tr><td>높 이</td><td>2.4m</td></tr><tr><td>기 둥</td><td>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25㎝로 한다.</td></tr><tr><td>버 팀 기 둥</td><td>버팀기둥 간격은 3.6m로 한다.</td></tr><tr><td>띠 장</td><td>띠장은 강관파이프를 사용하고 간격은 100㎝로 한다.</td></tr></table></td><td>⑧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 분</th><th>가 설 표 준</th></tr><tr><td>높 이</td><td>2.4m</td></tr><tr><td>기 둥</td><td>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1.5m를 기준으로 한다.</td></tr><tr><td>버 팀 기 둥</td><td>버팀기둥 간격은 3.6m로 한다.</td></tr><tr><td>띠 장</td><td>띠장은 강관파이프를 사용하고 간격은 100㎝로 한다.</td></tr></table></td><td>- 표 내용 수정</td></tr>
<tr><td>2-4 규 준 틀</td><td>보완</td><td>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
(개소당)
<table><tr><th>판 재</th><th>말 뚝</th><th>못(kg)</th><th>건축목공(인)</th><th>보통인부(인)</th></tr><tr><td>두께 1.2㎝
폭 12㎝
길이 4m</td><td>말구 6㎝
길이 1.8m
2 본</td><td>0.03</td><td>0.2</td><td>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td><td>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09년 보완)
(개소당)
<table><tr><th>종 류</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형틀목공</td><td>인</td><td>0.16</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14</td></tr></table>[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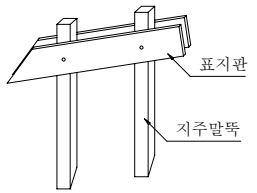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③ 추가</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 rowspan="3">2-4 규 준 틀</td><td>보완</td><td>2-4-2 수평 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개소당)
<table><tr><th>구분 \ 종별 / 단위</th><th></th><th>평 규 준 틀</th><th>귀 규 준 틀</th></tr><tr><td>목 재</td><td>㎥</td><td>0.014</td><td>0.022</td></tr><tr><td>못</td><td>kg</td><td>0.03</td><td>0.06</td></tr><tr><td>건 축 목 공</td><td>인</td><td>0.15</td><td>0.30</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30</td><td>0.45</td></tr></table>[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td><td>2-4-2 수평 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09년 보완)
(개소당)
<table><tr><th>구분 \ 종별 / 단위</th><th></th><th>평 규 준 틀</th><th>귀 규 준 틀</th></tr><tr><td>목 재</td><td>㎥</td><td>0.014</td><td>0.022</td></tr><tr><td>건 축 목 공</td><td>인</td><td>0.15</td><td>0.30</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30</td><td>0.45</td></tr></table>[주] ① 본 품은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td><td>- 품 개정
- 표 안‘못’삭제
- 주기
① 수정
② 수정
③ 추가</td></tr>
<tr><td>보완</td><td>2. 면적당 규준틀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목 재</td><td>㎥</td><td>0.002</td></tr><tr><td>못</td><td>kg</td><td>0.004</td></tr><tr><td>건 축 목 공</td><td>인</td><td>0.034</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34</td></tr></table>[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td><td>2. 면적당 규준틀(‘09년 보완)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목 재</td><td>㎥</td><td>0.002</td></tr><tr><td>건 축 목 공</td><td>인</td><td>0.018</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16</td></tr></table>[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표 안‘못’삭제</td></tr>
<tr><td>보완</td><td>2-4-3 세로 규준틀
(개소당)
<table><tr><th>구분 \ 종별</th><th>목재(㎥)</th><th>못(kg)</th><th>건축목공(인)</th><th>인부(인)</th></tr><tr><td>귀규준틀(1층)</td><td>0.056</td><td>0.032</td><td>0.18</td><td>0.2</td></tr><tr><td>평규준틀(1층)</td><td>0.062</td><td>0.050</td><td>0.18</td><td>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3.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③ 목재 손율은 30%로 한다.</td><td>2-4-3 세로 규준틀(’09년 보완)
(개소당)
<table><tr><th>구 분 \ 종 별</th><th>목재(㎥)</th><th></th><th>건축목공(인)</th><th>보통인부(인)</th></tr><tr><td>귀 규 준 틀 (1층)</td><td>0.056</td><td></td><td>0.18</td><td>0.2</td></tr><tr><td>평 규 준 틀 (1층)</td><td>0.062</td><td></td><td>0.18</td><td>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3.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② 목재 손율은 30%로 한다.</td><td>- 주기
①, ② 수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삭제</td><td>2-5-1 목재 동바리
(10공 ㎥당)<table><tr><th>종 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통 나 무</td><td>길이 3.6~7.0m
중경12㎝
말구12㎝</td><td>㎥</td><td>0.144</td><td></td></tr><tr><td>각 재</td><td></td><td>㎥</td><td>0.096</td><td></td></tr><tr><td>꺽 쇠</td><td></td><td>kg</td><td>0.7</td><td></td></tr><tr><td>철 선</td><td>φ 4㎜</td><td>kg</td><td>0.3</td><td></td></tr><tr><td>볼 트</td><td></td><td>kg</td><td>1.0</td><td></td></tr></table></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삭제</td><td>
<table>
<tr><th>종 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24</td><td></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53</td><td></td></tr>
<tr><td>잡 재 료</td><td></td><td>식</td><td>1</td><td>재료비의 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일반건축구조물을 기준한 것으로 필요한 때에만 계상하고, 특수구조에 대한 동바리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격쇠 및 볼트는 4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5회이상 사용시에는 4회로 계상하며 그 손율은 다음과 같고 필요한 때에만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th><th>1 회</th><th>2 회</th><th>3 회</th><th>4 회</th></tr>
<tr><td>손 율(%)</td><td>15</td><td>12.7</td><td>10.8</td><td>9.2</td></tr>
</table>
③ 본 품은 직고 7m 이하에서는 비계공을 제외한 것으로 하고 7m 이상에서는 비계공을 0.5인으로 한다.
④ 본 품은 직고 7m까지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m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⑤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용횟수</th><th>구 입 량 (%)</th><th>구입량에 대한 손율 (%)</th><th>매횟수의 손율 (%)</th></tr>
<tr><td>1</td><td>100</td><td>37.1</td><td>37.0</td></tr>
<tr><td>2</td><td>110</td><td>45.1</td><td>24.8</td></tr>
<tr><td>3</td><td>120</td><td>52.4</td><td>20.9</td></tr>
<tr><td>4</td><td>130</td><td>59.0</td><td>19.1</td></tr>
<tr><td>5</td><td>140</td><td>64.9</td><td>18.1</td></tr>
<tr><td>6</td><td>150</td><td>70.2</td><td>17.5</td></tr>
<tr><td>7</td><td>160</td><td>75.0</td><td>17.1</td></tr>
<tr><td>8</td><td>170</td><td>79.3</td><td>16.8</td></tr>
<tr><td>9</td><td>180</td><td>79.3</td><td>15.8</td></tr>
<tr><td>10</td><td>190</td><td>79.3</td><td>15.0</td></tr>
</table>
* 본 표는 거푸집 부재의 표준치수를 참작하여 동바리 설치 재료를 산정한 후 구입량에 대한 손율을 계상할 때 적용함.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삭제</td><td>* 매 회수의 손율이란 소요량에 대하여 사용하는 매회수마다의 손율을 뜻함.
* 동바리 소요량이 100이고 6회 반복 사용할 때
㉮ 구입량에 의한 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구입량 : 100개×150% = 150개
소모량 : 150개×70.2% = 105.3개
㉯ 매회수의 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모량 : 100개×17.5%×6회 = 105개
[계산예]
동 바 리 7회 사용시 (7경간)
통 나 무 0.144㎥×0.171× A1′ = A1
각 재 0.096㎥×0.171× A2′ = A2
꺽 쇠 0.7 ㎏×0.092× A3′ = A3
철 선 0.3 ㎏× A4′ = A4
볼 트 1.0 ㎏×0.092× A5′ = A5
형틀목공 0.24인× A6′ = A6
비 계 공 0.5 인× A7′ = A7 (7.0m 이상일 때 계상)
인 부 0.53인× A8′ = A8
잡 재 1식×(재료비의 5% 이내)× A9′ = A9

소 계 = A
계 A÷10공㎥당 = 1공㎥당 설계단가
※ A1′ , A2′ , A3′ , …… , A9′ = 단가
A1 + A2 + A3 + …… + A9 = A = 10공(㎥)당 단가</td><td><삭제></td><td></td></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편제 수정</td><td><u>2-5-2</u> 강관 동바리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관 동바리</td><td>내관 φ 48.6㎜×2.4㎜
외관 φ 60.5㎜×2.3㎜</td><td>본</td><td>1.34</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04</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2</td><td></td></tr>
<tr><td>잡 재</td><td>재료비의 5%</td><td>식</td><td>1</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므로 벽식구조인 경우는 본 품의 80%로 한다.</td><td><u>2-5-1</u> 강관 동바리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관 동바리</td><td>내관 φ 48.6㎜×2.4㎜
외관 φ 60.5㎜×2.3㎜</td><td>본</td><td>1.34</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04</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2</td><td></td></tr>
<tr><td>잡 재</td><td>재료비의 5%</td><td>식</td><td>1</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므로 벽식구조인 경우는 본 품의 80%로 한다.</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편제
수정</td><td>② 층고 4.2m 이상 또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는 재료 및 인력을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조립·해체 및 재료의 할증과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⑤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의 재료량 및 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52</td><td></td></tr>
<tr><td>이 음 철 물</td><td></td><td>개</td><td>0.32</td><td></td></tr>
<tr><td>조 임 철 물</td><td>직교·자재</td><td>개</td><td>2.68</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td><td></td></tr>
</table>
* 전체동바리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td><td>② 층고 4.2m 이상 또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는 재료 및 인력을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조립·해체 및 재료의 할증과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⑤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의 재료량 및 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52</td><td></td></tr>
<tr><td>이 음 철 물</td><td></td><td>개</td><td>0.32</td><td></td></tr>
<tr><td>조 임 철 물</td><td>직교·자재</td><td>개</td><td>2.68</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td><td></td></tr>
</table>
* 전체동바리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td><td></td></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보완</td><td><u>2-5-3</u> 조립식 강관동바리('01년 신설)
(10공㎥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작 업 반 장</td><td>인</td><td><u>0.24</u></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u>0.48</u></td></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72</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72</u></td></tr>
<tr><td>크 레 인</td><td>시간</td><td>0.1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슬라브두께 130㎝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의 슬라브 두께는 평균두께로 한다.
③ 본 품은 동바리 설치높이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td><td><u>2-5-2</u> 조립식 강관동바리('01년 신설, <u>09년 보완</u>)
(10공㎥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작 업 반 장</td><td>인</td><td><u>0.08</u></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u>0.28</u></td></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50</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36</u></td></tr>
<tr><td>크 레 인</td><td>hr</td><td>0.1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슬라브두께 130㎝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의 슬라브 두께는 평균두께로 한다.
③ 본 품은 동바리 설치높이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5 구조물동바리</td>
<td></td>
<td>
<table>
<tr><td>높 이</td><td>10m초과~20m이하</td><td>20m초과~30m이하</td></tr>
<tr><td>할증률(%)</td><td>10</td><td>20</td></tr>
</table>
④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⑤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⑥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d>사 용 월 별</td><td>3개월</td><td>6개월</td><td>12개월</td></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⑦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d>높 이</td><td>20m이하</td><td>20m초과~30m이하</td></tr>
<tr><td>크레인규격</td><td>15톤</td><td>20톤</td></tr>
</table>
⑧ 동바리 설치를 위한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td>
<td>
<table>
<tr><td>높 이</td><td>10m초과~20m이하</td><td>20m초과~30m이하</td></tr>
<tr><td>할증률(%)</td><td>10</td><td>20</td></tr>
</table>
④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⑤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⑥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d>사 용 월 수</td><td>3개월</td><td>6개월</td><td>12개월</td></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⑦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d>높 이</td><td>20m이하</td><td>20m초과~30m이하</td></tr>
<tr><td>크레인규격</td><td>15톤</td><td>20톤</td></tr>
</table>
⑧ 동바리 설치를 위한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td>
<td>- 주기
⑦ 추가</td>
</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삭제	2-6-1 통나무 비계 1. 재료규격	<삭 제>	

구 분	종 별	규 격		비 고
		지 름(㎝)	길 이(m)	
긴 비 계 목	낙 엽 송	7.5~12	5.4~7.2	
짧 비 계 목	낙 엽 송	6~12	1.2~3.6	
발 판	육송·삼송	두께 3.6 폭 21~27	2.7~3.6	
	P.S.P	폭 42	3.04	
철 선	누구린 것	#8~10	50㎏ 다발 30㎏ 다발	1개소당 1.5m
새 끼		1.2~1.5	65m 다발	1개소당 8m

[주] ① 철선 및 새끼는 소모품으로 한다.
② 재료의 손율은 다음과 같다.

사용월별 / 구 분	3개월미만 (%)	6개월미만 (%)	1개년미만 (%)	1개년이상 (%)
긴 비 계 목	25	35	50	75~100
짧 비 계 목	10~12	15~17	20~25	30~50
발 판	25	35	50	75~100
P.S.P 철 판	10	15	20	30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삭제	2. 비계매기	<삭 제>	

구분	단위	높이(m)	수량 비계공(인) 3~7	7~10	10~13	13~16	16~20	20~23	23~26
외부	외줄비계	㎡당	0.03	0.04	0.05	0.06	0.09	0.13	0.19
외부	겹 비 계	㎡당	0.04	0.05	0.06	0.09	0.12	0.19	0.25
외부	쌍줄비계	㎡당	0.05	0.07	0.09	0.12	0.15	0.24	0.37
내부	수평비계	㎡당	0.06						
내부	말 비 계	㎡당	0.03						
비계다리		㎡당	0.40	0.70	0.90	1.35	1.7	2.3	3.48

[주] ① 본 품은 비계높이 26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이프비계매기(강관비계매기)와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택한다.
② 본 품에서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의 높이는 지상에서 비계 최상부까지의 높이이다.

[계산예]
쌍줄비계(건물고 12m, 공사기간 9개월)
① 손료(㎡당)
긴 비 계 목 : 0.45개×0.5 = 0.225개
짧은비계목 : 0.3개×0.25 = 0.075개
발 판 : 0.15매×0.5 = 0.075매
철 선 : 0.36㎏ × 1 = 0.36㎏

② 품(㎡당)
비계공 : $\frac{0.05 \times A_1 + 0.07 \times A_2 + 0.09 \times A_3}{A_1 + A_2 + A_3}$

A1 : 지상에서 높이 7m까지의 비계면적
A2 : 지상에서 높이 7~10m 구간의 비계면적
A3 : 지상에서 높이 10~12m 구간의 비계면적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삭제	3. 외부비계 (비계면적 ㎡당) 종 별 / 단위 / 구분 긴 비 계 목 개 0.24 0.30 0.45 짧 은 비 계 목 개 0.1 0.15 0.3 발 판 매 0.1 0.1 0.15 철 선 kg 0.18 0.25 0.36 새 끼 다발 0.06 0.075 0.15 [주] ① 쌍줄비계폭은 90㎝일 때의 기준물량이다. ② 비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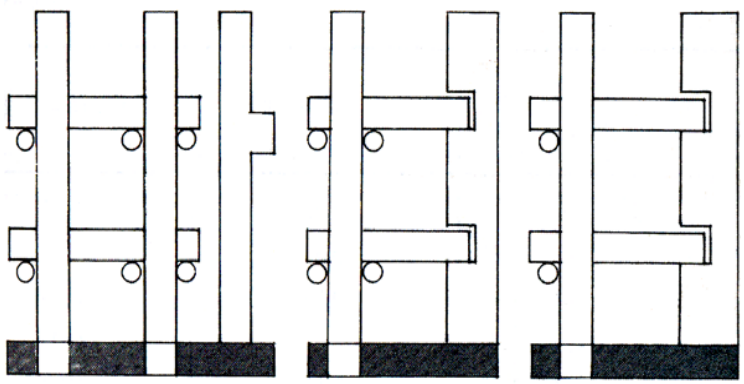 쌍줄비계 겹비계 외줄비계	<삭 제>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삭제</td><td>
③ 가설표준
<table>
<tr><th>구 분</th><th>복식비계(쌍줄비계)</th><th>단식비계(외줄비계)</th></tr>
<tr><td>비계기둥</td><td>1.8m 간격으로 배치하고 지중으로 60㎝ 매립한다.</td><td>간격 1.8~2.1m, 벽체와의 거리는 30~45㎝로 한다.</td></tr>
<tr><td>비계띠장</td><td>수평간격 1.65m이하, 지면에서 첫 번째 띠장까지 거리는 3m로 한다.</td><td>한 손으로 작업할 때는 1.2~1.5m 간격, 두 손으로 작업할 때는 0.9m 간격으로 한다.</td></tr>
<tr><td>비계장선</td><td>비계 띠장에 1.5m 간격으로 배치하고 띠장에서 양쪽 머리가 10㎝이상 나가게 한다.</td><td></td></tr>
<tr><td>가새</td><td>비계 기둥 간격 10m 내외, 각도 45° 내외로 하며 띠장 및 기둥에 긴결한다.</td><td>비계 기둥간에 45° 각도로 가설한다.</td></tr>
</table>
④ 결속재는 철선, 새끼중 한 가지만 사용한다.
⑤ 긴 비계목은 5.4m이고, 짧은 비계목은 1.8m를 표준으로 한 것이다.
⑥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는 말비계 또는 이동식 비계로 가름한다.
⑦ 경미한 페인트공사, 뿜칠공사, 청소등은 외부비계와 말비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사용한다.

4. 내부비계
(비계면적 ㎡당)
<table>
<tr><th>종 별
단위
구분</th><th></th><th>수 평 비 계</th><th>말비계(발돋움)</th></tr>
<tr><td>긴 비 계 목</td><td>개</td><td>0.27</td><td>0.02</td></tr>
<tr><td>짧 은 비 계 목</td><td>개</td><td>0.6</td><td>-</td></tr>
<tr><td>발 판</td><td>매</td><td>0.15</td><td>0.15</td></tr>
<tr><td>각 목(9㎝×9㎝×3.6m)</td><td>개</td><td>-</td><td>0.05</td></tr>
<tr><td>새 끼</td><td>다발</td><td>0.1</td><td>0.03</td></tr>
</table>
</td><td><삭 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삭제</td><td>
[주] ① 수평비계는 2가지 이상의 복합공사나 또는 단일공사로서도 작업이 복잡한 경우에 계상한다.
② 말비계는 3.6m 미만의 경미한 내부공사에 사용한다.
③ 본 품은 층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새끼 대신 철선을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5. 비계다리
<table>
<tr><th rowspan="2">면적 및 개소당 단위
구분</th><th rowspan="2"></th><th rowspan="2">비계다리면적
(㎡당)</th><th colspan="3">1 개 소 당</th></tr>
<tr><th>2 층</th><th>3 층</th><th>4 층</th></tr>
<tr><td>긴 비 계 목</td><td>개</td><td>0.3</td><td>28</td><td>68</td><td>138</td></tr>
<tr><td>짧 은 비 계 목</td><td>개</td><td>0.55</td><td>28~38</td><td>65</td><td>103</td></tr>
<tr><td>발 판</td><td>매</td><td>0.9</td><td>12</td><td>18</td><td>24</td></tr>
<tr><td>각 재</td><td>개</td><td>0.7</td><td>9.35</td><td>14.0</td><td>18.7</td></tr>
<tr><td>철 선</td><td>kg</td><td>0.3</td><td>15~21</td><td>20~30</td><td>30~40</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td><td>6</td><td>15</td><td>3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에 붙여서 비계다리를 가설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각재는 4.5㎝×9.0㎝×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비계다리 가설 표준은 다음과 같다.
㉮ 폭은 90㎝이다.
㉯ 승강비탈은 30° 이하로 하고 15° 이상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슬립용 재료를 30㎝내외 간격으로 못 박아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75㎝ 내외의 손잡이(두겁대)를 가설한다.
④ 본 품의 층별 높이는 2층은 9m, 3층은 14m, 4층은 18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가설 및 철거품은 포함되어 있다.
⑥ 각재의 손율은 2-6-1의 “1. 재료규격”의 [주] ②항의 ‘발판’ 손율에 따른다.
6. 철골조용 비계(현장 리벳팅용)
(비계발판면적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긴 비 계 목</td><td>개</td><td>0.25~0.3</td></tr>
<tr><td>발 판</td><td>매</td><td>0.1</td></tr>
<tr><td>철 선 (φ 16)</td><td>kg</td><td>0.8</td></tr>
<tr><td>철 선 (3.3㎜)</td><td>kg</td><td>0.1</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06</td></tr>
</table>
[주]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td><td><삭 제></td><td></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보완	2-6-2 파이프 비계(강관비계) 1. 강관비계매기 (㎡당)	2-6-1 강관비계매기('09년 보완) (㎡당)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현 행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48.6㎜×2.4㎜	m	3.99	
이 음 철 물		개	0.5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	2.08	
받 침 철 물		〃	0.04	
철 물	앵 커 용	개	0.04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1	

[주] ① 본 품은 강관복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강관비계 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복식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기 둥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m(지상에서 첫 번째는 2.0m임)
비 계 폭	1.2m
전 면 보 강 가 새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 평 · 수 직 보 강 가 새	필요할 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개 정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48.6㎜×2.4㎜	m	3.99	
이 음 철 물		개	0.5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	2.08	
받 침 철 물		〃	0.04	
철 물	앵 커 용	개	0.04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08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매기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강관비계 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복식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기 둥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m(지상에서 첫 번째는 2.0m임)
비 계 폭	1.2m
전 면 보 강 가 새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 평 · 수 직 보 강 가 새	필요할 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6 구조물 비계</td>
<td>보완</td>
<td>
2 강관틀 비계매기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1.2m × 1.9m</td><td>개</td><td>0.36</td><td></td></tr>
<tr><td>비계장선틀</td><td>1.0m × 1.9m</td><td>〃</td><td>0.34</td><td></td></tr>
<tr><td>가세</td><td>1.2m × 1.9m</td><td>〃</td><td>0.68</td><td></td></tr>
<tr><td>조절받침철물</td><td></td><td>〃</td><td>0.04</td><td></td></tr>
<tr><td>이음철물</td><td>삽입걸이</td><td>〃</td><td>0.68</td><td></td></tr>
<tr><td>철물</td><td>앵커용</td><td>〃</td><td>0.04</td><td></td></tr>
<tr><td>비계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02</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틀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방지, 작업대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45m 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중량작업을 할 때의 비계 안전상의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2-6-2 강관틀 비계매기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1.2m × 1.9m</td><td>개</td><td>0.36</td><td></td></tr>
<tr><td>비계장선틀</td><td>1.0m × 1.9m</td><td>〃</td><td>0.34</td><td></td></tr>
<tr><td>가세</td><td>1.2m × 1.9m</td><td>〃</td><td>0.68</td><td></td></tr>
<tr><td>조절받침철물</td><td></td><td>〃</td><td>0.04</td><td></td></tr>
<tr><td>이음철물</td><td>삽입걸이</td><td>〃</td><td>0.68</td><td></td></tr>
<tr><td>철물</td><td>앵커용</td><td>〃</td><td>0.04</td><td></td></tr>
<tr><td>비계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02</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틀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방지, 작업대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45m 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중량작업을 할 때의 비계 안전상의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주기
① 수정</td>
</tr>
<tr>
<td>2-6 구조물 비계</td>
<td>보완</td>
<td>
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1대당 높이 2m기준)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H1700×W1219</td><td>개</td><td>2</td><td></td></tr>
<tr><td>가새</td><td>L1518-2개</td><td>조</td><td>2</td><td></td></tr>
<tr><td>수평띠장</td><td>L1829</td><td>개</td><td>4</td><td></td></tr>
<tr><td>손잡이기둥</td><td></td><td>개</td><td>4</td><td></td></tr>
<tr><td rowspan="2">손잡이</td><td>L1219</td><td>개</td><td>2</td><td></td></tr>
<tr><td>L1829</td><td>개</td><td>4</td><td></td></tr>
</table>
</td>
<td>
2-6-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09년 보완)
(1대당 높이 2m기준)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H1700×W1219</td><td>개</td><td>2</td><td></td></tr>
<tr><td>가새</td><td>L1518-2개</td><td>조</td><td>2</td><td></td></tr>
<tr><td>수평띠장</td><td>L1829</td><td>개</td><td>4</td><td></td></tr>
<tr><td>손잡이기둥</td><td></td><td>개</td><td>4</td><td></td></tr>
<tr><td rowspan="2">손잡이</td><td>L1219</td><td>개</td><td>2</td><td></td></tr>
<tr><td>L1829</td><td>개</td><td>4</td><td></td></tr>
</table>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td><td>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보 통 인 부	가설·해체	인	<u>1.0</u>	

[주] <u>① 본 품은 도장 및 천장텍스 붙임시 적용한다.</u>
②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u>③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u>
</td><td>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보 통 인 부	가설·해체	인	<u>0.6</u>	

[주] ①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u>②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u>
</td><td>- 품 개정

- 주기
① 삭제

- 주기
③ 수정</td></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편제
수정</td><td>

<u>4. 강관 비계다리</u>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ϕ 48.6㎜×2.4㎜	m	15.0	
이 음 철 물		개	1.97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개	7.23	
받 침 철 물		개	0.26	
철 물	앙카용	개	0.04	
발 판	P.S.P 420×3,040×3	매	0.94	
각 재	육 송	㎥	0.0115	
철 선	#8~10	kg	0.265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273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다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며, 계단참은 길이 5.4m, 폭 1.8m를 기준한 것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u>2-6-4 강관 비계다리</u>

<u>1. 슬로프식</u>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ϕ 48.6㎜×2.4㎜	m	15.0	
이 음 철 물		개	1.97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개	7.23	
받 침 철 물		개	0.26	
철 물	앙카용	개	0.04	
발 판	P.S.P 420×3,040×3	매	0.94	
각 재	육 송	㎥	0.0115	
철 선	#8~10	kg	0.265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273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며, 계단참은 길이 5.4m, 폭 1.8m를 기준한 것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항목 수정
(‘1. 슬로프식’)</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신설</td><td></td><td>2. 계단식('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8.956</td><td></td></tr><tr><td>조 임 철 물</td><td>직교, 회전</td><td>개</td><td>37.037</td><td></td></tr><tr><td>발 판</td><td>250×900</td><td>매</td><td>4.377</td><td></td></tr><tr><td>비 계 공</td><td>조립, 해체</td><td>인</td><td>0.320</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강관 비계다리(계단식)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강관비계다리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2. 계단식’ 신설</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편제
수정</td><td>

5. 공기에 대한 손율

재료 / 공기	손율				비 고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	철 물 (앵커용)	
3 개 월	6 %	9 %	12 %	100 %	
6 개 월	10 %	15 %	20 %	100 %	
12 개 월	19 %	29 %	38 %	100 %	
18 개 월	28 %	42 %	56 %	100 %	
24 개 월	37 %	56 %	74 %	100 %	
30 개 월	46 %	69 %	92 %	100 %	
36 개 월	55 %	83 %	100 %	100 %	
42 개 월	64 %	96 %	100 %	100 %	
48 개 월	73 %	100 %	100 %	100 %	
54 개 월	84 %	100 %	100 %	100 %	
60 개 월	91 %	100 %	100 %	100 %	
66 개 월	100 %	100 %	100 %	100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 회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 보관에 대한 손율은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파이프 비계매기에 대한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등)에는 그 공사 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 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td><td>

2-6-5 공기에 대한 손율

재료 / 공기	손율				비 고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	철 물 (앵커용)	
3 개 월	6 %	9 %	12 %	100 %	
6 개 월	10 %	15 %	20 %	100 %	
12 개 월	19 %	29 %	38 %	100 %	
18 개 월	28 %	42 %	56 %	100 %	
24 개 월	37 %	56 %	74 %	100 %	
30 개 월	46 %	69 %	92 %	100 %	
36 개 월	55 %	83 %	100 %	100 %	
42 개 월	64 %	96 %	100 %	100 %	
48 개 월	73 %	100 %	100 %	100 %	
54 개 월	84 %	100 %	100 %	100 %	
60 개 월	91 %	100 %	100 %	100 %	
66 개 월	100 %	100 %	100 %	100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 회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 보관에 대한 손율은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파이프 비계매기에 대한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등)에는 그 공사 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 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td><td></td></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편제
수정</td><td>

6. 비계용 브라켓 설치

(10개소당)

구 분	비계공 (인)		
	설 치	해 체	계
벽용브라켓	0.45	0.34	
스라브발코니 난간용브라켓 지지보수대	0.34	0.26	

[주] ①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2-6-6 비계용 브라켓 설치

<현행과 동일>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7 낙하물 방지	삭제	2-7-1 비계목 사용 (㎡당) 구분 / 종별 | 철망(㎡) | 발(㎡) | 비계목(개) | 못(kg) | 철선(kg) | 비계공(인) 철 망 | 1.1 | - | 1 | 0.05 | 0.28 | 0.03 발 | - | 1.1 | - | 0.05 | - | 0.04 [주] ① 본 품은 기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철망 및 발치기 품은 높이 7m 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철망 및 발치기에 있어서 높이 7m 이상일 때는 외부비계중 외줄 비계매기품에 준한다. ④ 비계목은 짧은 비계목(길이 3.6m)이다. ⑤ 철망의 규격은 #21 아연도금 철망이며 손율은 30~50%이다. ⑥ 발은 소모품으로 한다. ⑦ 목재 손율은 외부비계에 준한다. ⑧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3.5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5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10㎜ 눈크기 이하의 철망 또는 이와 동등한 발이나 망 등을 친다.	<삭제>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7 낙하물 방지</td>
<td>보완</td>
<td>
<u>2-7-2 강관사용</u>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7</td></tr>
<tr><td>브 라 켓</td><td></td><td>개</td><td>0.26</td></tr>
<tr><td>철 선</td><td></td><td>kg</td><td>0.25</td></tr>
<tr><td>클 램 프</td><td></td><td>개</td><td>0.27</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u>발</u></td><td><u>90합</u></td><td>㎡</td><td>1.24</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u>0.04</u></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u>기존의 강관비계를 이용하여</u>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u>② 본 품은 높이 8m 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u>
<u>③ 높이 8m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u>
<table>
<tr><th><u>높 이 (m)</u></th><th><u>8~20</u></th><th><u>20~30</u></th><th><u>비 고</u></th></tr>
<tr><td><u>비 계 공 (인)</u></td><td><u>0.07</u></td><td><u>0.10</u></td><td></td></tr>
</table>
<u>단,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u>
④ 철선 및 발은 소모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⑥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8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20~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0m 이내마다 <u>방지망을</u>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가로×세로 35㎜ 그물코 이하의 합성섬유(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td>
<td>
<u>2-7-1 강관 사용(‘09년 보완)</u>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7</td></tr>
<tr><td>브 라 켓</td><td></td><td>개</td><td>0.26</td></tr>
<tr><td>철 선</td><td></td><td>kg</td><td>0.25</td></tr>
<tr><td>클 램 프</td><td></td><td>개</td><td>0.27</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u>그 물 망</u></td><td></td><td>㎡</td><td>1.24</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u>0.03</u></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구조물 첫 단(지상으로부터 약 8m)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설치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철선 및 <u>그물망</u>은 소모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⑤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8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20~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0m 이내마다 <u>2-7-2 플라잉넷을</u>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그물망)은 가로×세로 35㎜ 그물코 이하의 합성섬유(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이어야 한다.
</td>
<td>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 주기
개정안
② 추가
- 주기
②, ③ 삭제
- 주기
⑥ ㉮ 수정
</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8 보호막 설치</td><td>보완</td><td>2-8 보호막 설치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막의 손율은 60%이다.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호막이란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시공안전 및 미관 등을 목적으로 시공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td><td>2-8-1 비계주위 보호막(‘09년 보완)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막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호막이란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시공안전 및 미관 등을 목적으로 시공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주기
② 수정</td></tr>
<tr><td>2-11 방진망 설치</td><td>보완</td><td>2-11 방진망 설치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방 진 망</td><td></td><td>㎡</td><td>1.06</td><td></td></tr><tr><td>철 선</td><td></td><td>kg</td><td>0.115</td><td></td></tr><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26</td><td></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소운반·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방진망의 손율은 60%이다.
③ 방진망 설치를 위해 비계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td><td>2-11 방진망 설치및 철거(‘09년 보완)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방 진 망</td><td></td><td>㎡</td><td>1.06</td><td></td></tr><tr><td>철 선</td><td></td><td>kg</td><td>0.115</td><td></td></tr><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19</td><td></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소운반·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후 100%로 한다.
③ 방진망 설치를 위해 비계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td><td>- 품 개정
- 주기
② 내용 개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2 엘리베이터형자재운반용 타워설치</td>
<td>보완</td>
<td>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m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
<tr><td>특수비계공</td><td>인</td><td>0.32</td><td>0.16</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EV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5ton 지게차를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6.4㎥) 및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며,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td>
<td>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09년 보완)
(m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
<tr><td>특수비계공</td><td>인</td><td>0.26</td><td>0.13</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EV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5ton 지게차를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6.4㎥) 및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며,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td>
</tr>
<tr>
<td>2-13 자동세륜기 설치</td>
<td>보완</td>
<td>2-13 자동세륜기 설치
(대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
<tr><td>비 계 공</td><td>인</td><td>3</td><td>3</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 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본 품은 10ton 크레인을 이용하여 세륜기를 설치할 때의 품이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세륜기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사용장비의 사양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과 급수배관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td>
<td>2-13 자동세륜기 설치('09년 보완)
(대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
<tr><td>비 계 공</td><td>인</td><td>2</td><td>2</td><td></td></tr>
<tr><td>지 게 차</td><td>hr</td><td>1</td><td>1</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 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본 품은 5ton 지게차를 이용하여 세륜기를 설치할 때의 품이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세륜기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사용장비의 사양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과 급수배관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② 내용 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4 쓰레기슈트 설치 ('99년 신설)</td>
<td>보완</td>
<td>2-14 쓰레기슈트 설치('99년 신설)
(m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폴리에틸렌관</td><td>Y관 φ450㎜</td><td>m</td><td>1.20</td></tr>
<tr><td>난간용브라켓</td><td></td><td>개</td><td>0.77</td></tr>
<tr><td>철 선</td><td>#8</td><td>kg</td><td>0.19</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4</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난간용 브라켓에 대한 <u>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u>에 따른다.
④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td>
<td>2-14 쓰레기슈트 설치('99년 신설, 09년 보완)
(m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폴리에틸렌관</td><td>Y관 φ450㎜</td><td>m</td><td>1.20</td></tr>
<tr><td>난간용브라켓</td><td></td><td>개</td><td>0.77</td></tr>
<tr><td>철 선</td><td>#8</td><td>kg</td><td>0.19</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4</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난간용 브라켓에 대한 <u>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u>에 따른다.
④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주기
③ 내용 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신설</td><td></td><td>2-3-3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09년 신설)
(m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20</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7</td><td></td></tr>
<tr><td>굴 삭 기</td><td>0.2㎥</td><td>hr</td><td>0.05</td><td></td></tr>
<tr><td>트럭탑재형크레인</td><td>5ton</td><td>hr</td><td>0.12</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 설치에 대한 품으로 지반평탄작업, 소운반, 강관 매입, 지주(H형강) 설치 및 띠장 매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타설에 소요되는 재료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재생플라스틱 판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용월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h>24개월</th><th>36개월</th><th>48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2</td><td>24</td><td>48</td><td>72</td><td>100</td></tr>
</table></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
<td>2-3 가설울타리</td>
<td>토목
품
발췌</td>
<td></td>
<td>
2-3-4 가설방음벽('09년 보완)
1. 지주 설치('07년 신설)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1</td></tr>
<tr><td>굴삭기(0.2㎥)</td><td>hr</td><td>0.0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매입강관 및 지주(수직, 수평, 보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평탄작업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강관의 규격은 Ø48×2.3T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2. 방음판 설치('07년 신설)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2</td></tr>
<tr><td>트럭탑재형크레인
(5ton)</td><td>hr</td><td>0.2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방음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기구 설치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방음판의 규격은 500㎜×30T×1,980㎜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td>
<td></td>
</tr>
<tr>
<td>2-5 구조물동바리</td>
<td>신설</td>
<td></td>
<td>
2-5-3 알루미늄 폼 동바리('09년 신설)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0.028</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1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알루미늄 폼 동바리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알루미늄 폼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
<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
</table>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낙하물 방지</td><td>신설</td><td></td><td>2-7-2 플라잉넷('09년 신설)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0.167</td></tr>
<tr><td>브 라 켓</td><td></td><td>개</td><td>0.116</td></tr>
<tr><td>사 다 리</td><td>폭 30㎝×길이 3m 기준</td><td>m</td><td>0.111</td></tr>
<tr><td>와이어로프</td><td>φ 6</td><td>m</td><td>0.764</td></tr>
<tr><td>클 램 프</td><td></td><td>개</td><td>0.127</td></tr>
<tr><td>그 물 망</td><td>5cm 이하</td><td>㎡</td><td>1.39</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첫 단 이후(8m 이상)에 설치하는 플라잉넷의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⑤ 사용된 그물망은 1회 사용 후 손율 100%로 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8 보호막 설치</td><td>신설</td><td></td><td>2-8-2 갱폼 주위 보호막('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tr><td>비 계 공</td><td>인</td><td>0.004</td></tr></table>
[주] ① 본 품은 갱폼 주위 보호막 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막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재료 할증을 포함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15 축중계, 계측기 설치</td><td>신설</td><td></td><td>2-15 축중계('09년 신설)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r><tr><td>비 계 공</td><td>인</td><td>0.127</td><td>0.127</td></tr></table>
[주] ①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축중계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d>개월수</td><td>3</td><td>6</td><td>9</td><td>12</td><td>24</td><td>36</td><td>48</td><td>60</td><td>120</td></tr><tr><td>손율(%)</td><td>3</td><td>5</td><td>8</td><td>10</td><td>20</td><td>30</td><td>40</td><td>50</td><td>100</td></tr></table></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16 파이프 루프공	토목 품 발췌		2-16 파이프 루프공('09년 보완) 1.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편성 인원 | 기계운전사 | | 인 | 1 | 파이프추진기 〃 | 기계설치공 | | 〃 | 1 | 〃 | 보통인부 | | 〃 | 2 | 편성장비 | 트럭크레인 | 20톤 | 대 | 1 | 소요 일수 | 조립 | | 일 | 3 | 〃 | 해체 | | 일 | 2 | 2. 강관추진공 가.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칭 | 단위 | 추진관경 | | | | | 300~600㎜ | 700~900㎜ | 1,000~1,200㎜ | 1,300~1,500mm 중급기술자 | 인 | 1 | 1 | 1 | 1 특별인부 | 인 | 2 | 2 | 2 | 2 보통인부 | 인 | 1 | 1 | 2 | 3 용접공 | 인 | 2 | 2 | 2 | 2 나. 작업편성장비 (일당)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파이프추진기 | 140~300톤 | 대 | 1 | 강관추진 트럭크레인 | 20톤 | 대 | 1 |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발전기 | 50kW | 대 | 1 | 용접기 | 200AMP | 대 | 2 | 강관 및 기타용접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16 파이프 루프공	토목 품 발췌		다. 작업능력 (m/일) 토질별 / 관경(㎜) / 추진 0~10m / 0~20m / 0~30m / 0~40m / 장 0~50m 점토·실트 300~500: 13 / 12 / 11 / 10.5 / 10 점토·실트 600~700: 10.5 / 10 / 8.5 / 8 / 8 점토·실트 800~1,000: 7.5 / 7 / 6.5 / 6 / 6 점토·실트 1,100~1,200: 6.5 / 6 / 5 / 4.5 / 4.5 사질토 300~500: 11.5 / 10.5 / 9.5 / 9 / 9 사질토 600~700: 9 / 8.5 / 7.5 / 7 / 7 사질토 800~1,000: 6.5 / 6 / 5.5 / 5 / 5 사질토 1,100~1,200: 5.5 / 5 / 4.5 / 4 / 4 자갈모래층 풍화암 300~500: 8.5 / 7.5 / 7 / 6.5 / 6.5 자갈모래층 풍화암 600~700: 6.5 / 6 / 5.5 / 5 / 5 자갈모래층 풍화암 800~1,000: 4.5 / 4 / 4 / 4 / 3.5 자갈모래층 풍화암 1,100~1,200: 4 / 3.5 / 3 / 3 / 3 호박돌 섞인 자갈모래층 300~500: - / - / - / - / - 호박돌 섞인 자갈모래층 600~700: 5 / 4.5 / 4 / 4 / 4 호박돌 섞인 자갈모래층 800~1,000: 3.5 / 3 / 3 / 3 / 3 호박돌 섞인 자갈모래층 1,100~1,200: 3 / 2.5 / 2.5 / 2.5 / 2.5 3. 기계이동 설치 (회당) 이동구분 / 이동용장비 / 소요시간(분) / 비고 수평이동 / 크레인(20톤) / 90 수직이동 / 크레인(20톤) / 120 수직이동 / 잭 / 180 경사이동 / 크레인(20톤) / 150 경사이동 / 잭 / 240 [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④ 본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td><td>토목
품
발췌</td><td></td><td>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9년 보완)
(100㎡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물탱크(살수차)</td><td>16,000ℓ</td><td>시간</td><td>0.008</td></tr></table>[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1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 제2장 가설공사(설비)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개 정 목 차 】

현 행			개 정
기계설비	기계설비	개정편제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2-1	2-1	2-1 가설물의 한도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2. 시험실의 규모(건축품발췌)**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2-2-1 목조가설건축물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 조립·해체 2. 손율	2-2 2-2-1 2-2-2	2-2 2-2-1 2-2-2 2-2-3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2-2-1 목조가설건축물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 조립·해체 2. 손율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건축품발췌)**
2-3 가설울타리 2-3-1 목재 가설 울타리 2-3-2 조립식 가설 울타리	2-3 2-3-1 2-3-2	2-3 삭제 2-3-1 2-3-2 2-3-3 2-3-4	2-3 가설울타리 삭제 2-3-1 조립식 가설 울타리 **2-3-2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울타리(건축품발췌)** **2-3-3 재생프라스틱 가설울타리 (신설)** **2-3-4 가설방음벽 (토목품 발췌)** **1. 지주 설치** **2. 방음판 설치**
2-4 규준틀 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 2-4-2 수평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2. 면적당 규준틀 2-4-3 세로규준틀	2-4 2-4-1 2-4-2 2-4-3	2-4 2-4-1 2-4-2 2-4-3	2-4 규준틀 **2-4-1 토공의 비탈규준틀 (토목품 발췌)** 2-4-2 수평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2. 면적당 규준틀 2-4-3 세로규준틀
2-5 구조물 동바리 2-5-1 목재동바리 2-5-2 강관동바리	2-5 2-5-1 2-5-2	2-5 삭제 2-5-1 2-5-2 2-5-3	2-5 구조물 동바리 삭제 2-5-1 강관동바리 **2-5-2 조립식 강관동바리(건축품발췌)** **2-5-3 알루미늄 폼 동바리(신설)**

현 행			개 정
기계설비	기계설비	개정편제	
2-6 구조물 비계	2-6	2-6	2-6 구조물 비계
2-6-1 통나무 비계	2-6-1	삭제	-
1. 재료규격			
2. 비계매기			
3. 외부비계			
4. 내부비계			
5. 비계다리			
6. 철골조용 비계(현장 리벳팅용)			
2-6-2 파이프 비계(강관비계)	2-6-2	삭제	
1. 강관비계매기		2-6-1	2-6-1 강관비계매기
2. 강관틀 비계매기		2-6-2	2-6-2 강관틀 비계매기
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2-6-3	2-6-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4. 강관 비계다리		2-6-4	**2-6-4 강관 비계다리**
			1. 슬로프식
			2. 계단식
5. 공기에 대한 손율		2-6-5	2-6-5 공기에 대한 손율
		2-6-6	**2-6-6 비계용 브라켓 설치(건축품발췌)**
2-7 낙하물 방지	2-7	2-7	2-7 낙하물 방지
2-7-1 비계목사용	2-7-1	삭제	삭제
2-7-2 강관사용	2-7-2	2-7-1	2-7-1 강관 사용
		2-7-2	**2-7-2 플라잉넷(신설)**
2-8 보호막 설치	2-8	2-8	2-8 보호막 설치
		2-8-1	**2-8-1 비계주위 보호막**
		2-8-2	**2-8-2 갱폼주위 보호막(신설)**
2-9 건축물 보양	2-9	2-9	2-9 건축물 보양
2-10 건축물 현장정리	2-10	2-10	2-10 건축물 현장정리
		2-11	**2-11 방진망 설치 및 철거(건축품 발췌)**
		2-12	**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건축품 발췌)**
		2-13	**2-13 자동세륜기 설치(건축품 발췌)**
		2-14	**2-14 쓰레기슈트 설치(건축품 발췌)**
		2-15	**2-15 축중계, 계측기(신설)**
		2-16	**2-16 파이프 루프공(토목품 발췌)(토목품 발췌)**
		2-17	**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토목품 발췌)**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 가설물의 한도</td>
<td>편제
수정</td>
<td>
1. <u>시설물 규모에 의한 규모</u>
<table>
<tr><th>본건물의 규모
단위
종 별</th><th></th><th>200㎡
이 하</th><th>1,000㎡
이 하</th><th>3,000㎡
이 하</th><th>6,000㎡
이 하</th><th>6,000㎡
이 상</th></tr>
<tr><td>감 독 사 무 소</td><td>㎡</td><td>6</td><td>12</td><td>25</td><td>30</td><td>50</td></tr>
<tr><td>도 급 자 사 무 소</td><td>㎡</td><td>12</td><td>24</td><td>50</td><td>60</td><td>100</td></tr>
<tr><td>기 타 자 재 창 고</td><td>㎡</td><td>10</td><td>20</td><td>30</td><td>40</td><td>60</td></tr>
<tr><td>작 업 헛 간</td><td>㎡</td><td>-</td><td>50</td><td>70</td><td>90</td><td>120</td></tr>
</table>
[주] ①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택한다.
②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 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시멘트 창고 필요면적
$A = 0.4 \times \frac{N}{n}$ (㎡)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동력소 및 변전소 필요면적 산출
⑤ 위의 ③, ④항 이외의 가설건물 규모는 필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노무자를 위한 숙소,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의 가설물 기준면적에 의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td>
<td>
1. <u>현장사무소 등의 규모</u>

“현행과 동일”
</td>
<td></td>
</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1 가설물의 한도	보완	⑦ 가설물 기준면적 ⑧ 자재창고 기준	“현행과 동일”	

⑦ 가설물 기준면적

종 별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사 무 소		3.3㎡	1인당
식 당	30인 이상일 때	1㎡	1인당
숙 소		2.5㎡	1인당
휴 게 실	기거자 3명당 3㎡	1.0㎡	1인당
화 장 실	대변기:남자 20명당 1기		
	여자 15명당 1기	2.2㎡	1변기당(대·소변)
	소변기 : 남자 30명당 1기		
탈의실·샤워장		2.0㎡	1인당
창 고	시멘트용	1식	수급계획에 의한 순환 저장용량 비교
목공작업장	거푸집용	20㎡	거푸집 사용량 1,000㎡당
철근공작업장	가공, 보관	30~60㎡	사용량 100ton당
철골공작업장	공작도 작성	30㎡	사용량 100ton당(필요시)
			사용량 100ton
	현장가공 및 재료보관	200㎡	
석공작업장	가공 및 공작도 작성	70~100㎡	매월 가공량 10㎡당(필요시)
콘 크 리 트	주위벽 막을 때	0.7㎡	골재 1㎥당
골재적치장	주위벽 안할 때	1.0㎡	골재 1㎥당

⑧ 자재창고 기준

(㎡당)

구 분	자재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쌓기단수
미장재료창고	석회	17kg들이	포	75~100	15~20
철물잡품창고	함석	#28.90㎝×180㎝	매	100~300	200~600
	못	60kg/통, 직경48㎝	통	4~8	1~2
	철선	50kg/권, #10경 100㎝, 높이 17㎝	권	5~7	5~7
	루핑	19.8㎡/권, 경 21㎝ 길이 97㎝	권	23~46	1~2
	합판	두께 6㎜, 90㎝×180㎝	매	50~100	100~200
	텍스	두께 12㎜, 90㎝×180㎝	매	50~75	100~150
도료창고	페인트	25kg 22㎝×40㎝	통	12~36	1~3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 가설물의 한도</td>
<td>건축품
발췌</td>
<td>⑨ 가설전등 기준
(등/㎡당)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사 무 실
창 고 류
작업장(일간)
숙 소</td><td>0.15
0.06
0.10
0.075</td><td>1. 등당 100W를 기준함.
2. 전등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td></tr>
</table>
⑩ 인공조명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한 개소 및 장소에서의 가설전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위생시설 및 전기, 수도 인입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td>
<td>“현행과 동일”

2. 시험실의 규모(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함)('98년, '06년, '09년 보완)
<table>
<tr><th>구 분</th><th>공 사 규 모</th><th>규모(㎡)</th><th>비 고</th></tr>
<tr><td>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5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건설공사</td><td>100이상</td><td>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
<tr><td>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td><td>50이상</td><td>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
<tr><td>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td><td>30이상</td><td>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
<tr><td>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td><td>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td><td>발주자와 계약한 면적</td><td>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td></tr>
</table>
[주]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서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은 기 계약된 유사규모 공사의 시험실 규모를 의미한다.</td>
<td>- ‘2’의 표 추가</td>
</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편제 수정	2-2-1 목조가설건축물	2-2-1 목조가설건축물 **1. 재료 및 품**	

(㎡당)

종별	구분 / 사용 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 (개)	짧은비계목 (개)	골함석 (매)	루핑 (㎡)	부자재 (%)	건축목공 (인)	함석공 (인)	루핑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소	3개월이내	0.050	-	-	-	1.3	12.9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11.4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10.6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10.1	0.6~1.0	0.03	-	0.2~0.3
창고류	3개월이내	0.040	-	-	-	1.3	4.7	0.35~0.6	-	0.01	0.15~0.2
	6개월	0.060	-	-	0.4	-	3.2	0.35~0.6	0.03	-	0.15~0.2
	1개년	0.080	-	-	0.6	-	2.4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01	-	-	0.8	-	1.8	0.35~0.6	0.03	-	0.15~0.2
헛간	3개월이내	-	0.07	0.03	-	1.3	19.5	0.05~0.1	-	0.01	0.20
	6개월	-	0.10	0.04	0.4	-	12.7	0.05~0.1	0.03	-	0.20
	1개년	-	0.14	0.06	0.6	-	8.3	0.05~0.1	0.03	-	0.20
	1개년이상	-	0.20	0.12	0.8	-	5.8	0.05~0.1	0.03	-	0.20
숙소·휴게실·식당	3개월이내	0.046	-	-	-	1.3	6.0	0.35~0.6	-	0.01	0.15~0.2
	6개월	0.068	-	-	0.4	-	4.0	0.35~0.6	0.03	-	0.15~0.2
	1개년	0.091	-	-	0.6	-	3.0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14	-	-	0.8	-	2.4	0.35~0.6	0.03	-	0.15~0.2
화장실·탈의실	샤워장 3개월이내	0.050	-	-	-	1.3	6.2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4.2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3.1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2.4	0.6~1.0	0.03	-	0.2~0.3

(㎡당)

종별	구분 / 사용 기간별	목재 (㎥)	긴비계목 (개)	짧은비계목 (개)	골함석 (매)	루핑 (㎡)	부자재 (%)	건축목공 (인)	함석공 (인)	루핑공 (인)	보통인부 (인)
사무소	3개월이내	0.050	-	-	-	1.3	12.9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11.4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10.6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10.1	0.6~1.0	0.03	-	0.2~0.3
창고류	3개월이내	0.040	-	-	-	1.3	4.7	0.35~0.6	-	0.01	0.15~0.2
	6개월	0.060	-	-	0.4	-	3.2	0.35~0.6	0.03	-	0.15~0.2
	1개년	0.080	-	-	0.6	-	2.4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01	-	-	0.8	-	1.8	0.35~0.6	0.03	-	0.15~0.2
헛간	3개월이내	-	0.07	0.03	-	1.3	19.5	0.05~0.1	-	0.01	0.20
	6개월	-	0.10	0.04	0.4	-	12.7	0.05~0.1	0.03	-	0.20
	1개년	-	0.14	0.06	0.6	-	8.3	0.05~0.1	0.03	-	0.20
	1개년이상	-	0.20	0.12	0.8	-	5.8	0.05~0.1	0.03	-	0.20
숙소·휴게실·식당	3개월이내	0.046	-	-	-	1.3	6.0	0.35~0.6	-	0.01	0.15~0.2
	6개월	0.068	-	-	0.4	-	4.0	0.35~0.6	0.03	-	0.15~0.2
	1개년	0.091	-	-	0.6	-	3.0	0.35~0.6	0.03	-	0.15~0.2
	1개년이상	0.114	-	-	0.8	-	2.4	0.35~0.6	0.03	-	0.15~0.2
화장실·탈의실	샤워장 3개월이내	0.050	-	-	-	1.3	6.2	0.6~1.0	-	0.01	0.2~0.3
	6개월	0.075	-	-	0.4	-	4.2	0.6~1.0	0.03	-	0.2~0.3
	1개년	0.100	-	-	0.6	-	3.1	0.6~1.0	0.03	-	0.2~0.3
	1개년이상	0.125	-	-	0.8	-	2.4	0.6~1.0	0.03	-	0.2~0.3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
<td></td>
<td>
[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창호 및 유리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비에 대한 비율이며, 못, 철물, 철선을 말한다.
⑤ 공구손료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의 골함석 치수는 #31, 1.8m×0.9m, 철선은 지름 4.2㎜(#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⑦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이나 루핑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루핑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특기시방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준한다.
⑧ 본 표 이외의 지붕잇기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특수 구조의 가설 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⑩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가 필요 없는 지반에서 가설 건물의 골조공사(바닥제외)에 필요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의 마감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하며 건물의 내외벽 마감재료 및 창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설건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기준>
(㎡당)
<table>
<tr><th>구분 \ 수량</th><th></th><th>소 요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사무실</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내 벽</td><td>0.5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외 벽</td><td>0.5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천 정</td><td>1.0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4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 rowspan="4">창 고</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외 벽</td><td>1.2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able>
* 사무실 창문(유리창) 크기는 1.5m×1.4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 크기는 0.9m×2.1m 여닫이 문을 기준하였음.
* 창고문은 1.3m×1.2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 쌍여닫이 문으로 2.0m×1.2m를 기준하였음.
</td>
<td>
[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창호 및 유리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자재의 손율은 포함된 것이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비에 대한 비율이며, , 철물, 철선을 말한다.
⑤ 공구손료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의 골함석 치수는 #31, 1.8m×0.9m, 철선은 지름 4.2㎜(#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⑦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이나 루핑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루핑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특기시방에서 정한 사항은 그에 준한다.
⑧ 본 표 이외의 지붕잇기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⑨ 특수 구조의 가설 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⑩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가 필요 없는 지반에서 가설 건물의 골조공사(바닥제외)에 필요한 것이며 본 표에 계상되지 않은 바닥의 마감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하며 건물의 내외벽 마감재료 및 창호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설건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기준>
(㎡당)
<table>
<tr><th>구분 \ 수량</th><th></th><th>소 요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6">사무실</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내 벽</td><td>0.5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외 벽</td><td>0.5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천 정</td><td>1.0 ㎡</td><td>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4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 rowspan="4">창 고</td><td>바 닥</td><td>1.0 ㎡</td><td>콘크리트, 보도블록, 플로링, 합판</td></tr>
<tr><td>외 벽</td><td>1.2 ㎡</td><td>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td></tr>
<tr><td>창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r><td>출 입 문</td><td>0.017 매</td><td>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td></tr>
</table>
* 사무실 창문(유리창) 크기는 1.5m×1.4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 크기는 0.9m×2.1m 여닫이 문을 기준하였음.
* 창고문은 1.3m×1.2m 미서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 쌍여닫이 문으로 2.0m×1.2m를 기준하였음.
</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td>
<td>보완</td>
<td>

[참 고]

구분 \ 사용기간별	3개월**미만** (%)	6개월**미만** (%)	1개년**미만** (%)	1개년이상 (%)
목 재	30	45	60	75
긴 비 계 목	25	35	50	75
짧 은 비 계 목	12	17	25	50
못	**100**	**100**	**100**	**100**
철 물	30	45	60	75
골 함 석	20	35	55	75
철 선	100	100	100	100
루 핑	100	100	100	100
창 호	30	40	60	75
유 리	60	65	75	100

</td>
<td>

2. 손율

구분 \ 사용기간별	3개월 (%)	6개월 (%)	1개년 (%)	1개년이상 (%)
목 재	30	45	60	75
긴 비 계 목	25	35	50	75
짧 은 비 계 목	12	17	25	50
철 물	30	45	60	75
골 함 석	20	35	55	75
철 선	100	100	100	100
루 핑	100	100	100	100
창 호	30	40	60	75
유 리	60	65	75	100
흄 관	80	100	100	100
강 재 류	15	30	50	70
돌 망 태	100	100	100	100

[주] ① 본 품에 있어서 재료의 길이가 2m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② 타이롯트는 전부 스크랩 공제한다.
③ 본 품에서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등)는 토류벽과 가교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④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
손 료 = 강재수량 × 신재단가 × 손율 + 할증량 × 신재단가 - 할증량 × 공제율 × 고재단가

</td>
<td>
- 표안 '미만' 삭제
- 표 안'못'삭제
- 주기 추가
</td>
</tr>
</table>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보완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92년 신설) 1. 조립·해체	2-2-2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92년 신설, **'09년 보완**) 1. 조립·해체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 자 재	부자재(%)	건축목공(인)	보통인부(인)
사 무 실	3 개 월	1식	16.8	0.40	0.20
	6 개 월	〃	15.4		
	1 년	〃	12.6		
	1 년 이 상	〃	11.2		
창 고	3 개 월	1식	19.5	0.30	0.15
	6 개 월	〃	16.9		
	1 년	〃	14.3		
	1 년 이 상	〃	13.0		

[주] ① 본 품은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바닥면적 ㎡당)

구 분	사용기간	주 자 재	부자재(%)	건축목공(인)	보통인부(인)
사 무 실	3 개 월	1식	16.8	0.30	0.12
	6 개 월	〃	15.4		
	1 년	〃	12.6		
	1 년 이 상	〃	11.2		
창 고	3 개 월	1식	19.5	0.23	0.10
	6 개 월	〃	16.9		
	1 년	〃	14.3		
	1 년 이 상	〃	13.0		

[주] ① 본 품은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 단층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기준한 것으로 조립 및 해체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2층일 경우에는 본 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사무소, 창고) BASE CHANNEL / 두께 : 2.0㎜이상 / m / 0.44 / 0.44 TOP CHANNEL / 두께 : 2.0㎜이상 / 〃 / 0.44 / 0.44 외부 PANEL(벽) / 1,200×2,400㎜ / 매 / 0.20 / 0.23 〃 (창문) / 〃 / 〃 / 0.12 / 0.08 〃 (철재문) / 〃 / 〃 / 0.03 / 0.04 내부 PANEL(벽) / 〃 / 〃 / 0.15 / - 〃 (목재문) / 〃 / 〃 / 0.05 / - PANEL / L=2,400㎜ / 조 / 0.31 / 0.31 JOINT(AL-BAR) CANOPY(출입구채양) / 600×1,200㎜ / 매 / 0.03 / 0.04 박공 PANEL / 〃 / 0.02 / 0.02 ROOF SHEET / 0.5㎜ COLOR SHEET / ㎡ / 1.23 / 1.23 트러스 / L=7.2m / 개 / 0.07 / 0.07 중도리(PURIN) / 두께 : 2.0이상 / 〃 / 1.52 / 1.52 천정판 / 미장합판+50㎜ GLASS WOOL / 매 / 0.69 / - T-BAR / / m / 1.53 / -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인력(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정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② 주자재는 다음과 같다. (바닥면적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사무소, 창고) BASE CHANNEL / 두께 : 2.0㎜이상 / m / 0.44 / 0.44 TOP CHANNEL / 두께 : 2.0㎜이상 / 〃 / 0.44 / 0.44 외부 PANEL(벽) / 1,200×2,400㎜ / 매 / 0.20 / 0.23 〃 (창문) / 〃 / 〃 / 0.12 / 0.08 〃 (철재문) / 〃 / 〃 / 0.03 / 0.04 내부 PANEL(벽) / 〃 / 〃 / 0.15 / - 〃 (목재문) / 〃 / 〃 / 0.05 / - PANEL / L=2,400㎜ / 조 / 0.31 / 0.31 JOINT(AL-BAR) CANOPY(출입구채양) / 600×1,200㎜ / 매 / 0.03 / 0.04 박공 PANEL / 〃 / 0.02 / 0.02 ROOF SHEET / 0.5㎜ COLOR SHEET / ㎡ / 1.23 / 1.23 트러스 / L=7.2m / 개 / 0.07 / 0.07 중도리(PURIN) / 두께 : 2.0이상 / 〃 / 1.52 / 1.52 천정판 / 미장합판+50㎜ GLASS WOOL / 매 / 0.69 / - T-BAR / / m / 1.53 / - ③ 본 품은 지정 및 하부구조를 감안하지 아니한 가설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며 본 품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 및 인력(바닥의 마감재료와 유리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부자재는 주자재의 손료에 대한 구성비율이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한다. ⑥ 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특수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창고의 경우 내부패널(벽·목재문), 천정판 및 T-BAR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3 가설울타리	삭제	2-3-1 목재 가설 울타리	<삭제>	

(m당)

재료 및 품 / 공종별		목 재 (㎥)	철 재 (kg)	못 (kg)	건축목공 (인)	보통인부 가설(인)	보통인부 철거(인)
판 장 울	1.8m	0.045	-	0.15	0.12	0.056	0.094
	2.7m	0.083	-	0.22	0.18	0.072	0.12
	3.6m	0.158	-	0.33	0.28	0.11	0.18
철조망울	1.8m	0.008	철조망 14m	0.03	0.027	0.055	0.044
골철판울	1.8m	0.063	골함석 1.6매	0.035	0.072	0.04	0.072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td><td>[주] ① 가설 울타리는 공사 현장의 관리와 보안상의 필요로 인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재료·구조·미관 등에 대하여 시방서에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에 준한다.
② 외부를 대패질할 때는 대패질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페인트 칠할 경우의 재료 및 품은 “제19장 칠공사”에 의거 별도 계상한다.
④ 출입문의 문을 설치할 경우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철조망울의 널재란의 ‘간격 20㎝ 대각선’은 철조망을 수평간격 20㎝로 하여 기둥에 U형 못으로 고정하고 기둥간을 대각선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⑥ 가설 표준
<table>
<tr><th>재료
공종별</th><th>기 둥</th><th>버팀기둥</th><th>널 재</th><th>띠 장</th></tr>
<tr><td>판장울
1.8m</td><td>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40㎝로 한다.</td><td>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3.6m (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두 께
1.2㎝</td><td>3×6㎝ 각재, 간격 90㎝</td></tr>
<tr><td>판장울
2.7m</td><td>9㎝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로 한다.</td><td>9㎝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3.6m(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두 께
1.5㎝</td><td>3×6㎝ 각재, 간격 90㎝</td></tr>
<tr><td>판장울
3.6m</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로 한다.</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m (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두 께
1.8㎝</td><td>3×10㎝ 각재, 간격 90㎝</td></tr>
<tr><td>철조망울
1.8m</td><td>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로 한다.</td><td></td><td>가시철선 지름 2㎜ (#14) 수평간격 20㎝ 대각선으로 보강한다.</td><td></td></tr>
<tr><td>골철판울
1.8m</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로 한다.</td><td>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m (기둥하나 걸름)로 한다.</td><td>골 함 석
#30
(66㎝×180㎝)</td><td></td></tr>
</table>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td><td>⑦ 공기에 대한 손율
<table>
<tr><th>재료명 \ 사용기간</th><th>3개월 (%)</th><th>4~6개월 (%)</th><th>7~8개월 (%)</th><th>9~10개월 (%)</th><th>11~12개월 (%)</th><th>1년이상 (%)</th></tr>
<tr><td>나 무 기 둥</td><td>30</td><td>45</td><td>60</td><td>75</td><td>90</td><td>100</td></tr>
<tr><td>철 물</td><td>30</td><td>45</td><td>60</td><td>75</td><td>90</td><td>100</td></tr>
<tr><td>못, 기 타</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d>100</td></tr>
</table>
* 1년이상 사용하는 가설물의 재료의 손율은 100%로 계상하며 장기를 요하는 공사(계속 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에서는 재료의 손율은 반복 계상할 수 없음.</td><td><삭제></td><td></td></tr>
<tr><td>2-3 가설울타리</td><td>보완</td><td><u>2-3-2</u> 조립식 가설 울타리('99년 보완)
(m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칼 라 철 판</td><td>800×2,000×0.45㎜</td><td>매</td><td>1.33</td><td></td></tr>
<tr><td>기 둥</td><td>각 파이프 60×60㎜</td><td>m</td><td>1.76</td><td></td></tr>
<tr><td>띠 장</td><td>C-60×30×10×2.2㎜</td><td>m</td><td>3</td><td></td></tr>
<tr><td>콘 크 리 트</td><td>기 초</td><td>㎥</td><td>0.038</td><td></td></tr>
<tr><td><u>건 축 목 공</u></td><td></td><td>인</td><td>0.1</td><td></td></tr>
<tr><td><u>인 부</u></td><td></td><td>인</td><td>0.05</td><td></td></tr>
</table>
[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⑤ 손 율
<table>
<tr><th>재 료 \ 사용기간</th><th>손 율 (%)
칼 라 철 판</th><th>기둥 및 띠장</th></tr>
<tr><td>3개월</td><td>16</td><td>6</td></tr>
<tr><td>6개월</td><td>25</td><td>10</td></tr>
<tr><td>12개월</td><td>38</td><td>19</td></tr>
<tr><td>24개월</td><td>53</td><td>37</td></tr>
<tr><td>36개월</td><td>70</td><td>55</td></tr>
<tr><td>48개월</td><td>100</td><td>73</td></tr>
</table></td><td><u>2-3-1</u> 조립식 가설 울타리<u>('09년 보완)</u>
1.설치
(m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칼 라 철 판</td><td>800×2,000×0.45mm</td><td>매</td><td>1.33</td><td></td></tr>
<tr><td>기 둥</td><td>각파이프 60×60mm</td><td>m</td><td>1.76</td><td></td></tr>
<tr><td>띠 장</td><td>C-60×30×10×2.2mm</td><td>m</td><td>3</td><td></td></tr>
<tr><td>콘 크 리 트</td><td>기초</td><td>㎥</td><td>0.038</td><td></td></tr>
<tr><td><u>비 계 공</u></td><td></td><td>인</td><td>0.1</td><td></td></tr>
<tr><td><u>보 통 인 부</u></td><td></td><td>인</td><td>0.05</td><td></td></tr>
</table>
[주] ① 출입구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⑤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가 설 표 준</th></tr>
<tr><td>높 이</td><td>2.0m</td></tr>
<tr><td>기 둥</td><td>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25cm로 한다.</td></tr>
<tr><td>버팀기둥</td><td>각파이프(60mm×60mm)를 사용하고 간격은 3.6m로 한다.</td></tr>
<tr><td>널 재</td><td>800×2,000mm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cm로 한다.</td></tr>
<tr><td>띠 장</td><td>C형강(60×30×10×2.2mm)을 사용하고 간격은 85cm로 한다.</td></tr>
</table>
⑥ 기둥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파이프 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td><td>- 품 개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3 가설울타리</td>
<td></td>
<td>⑥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 분</th><th>가 설 표 준</th></tr>
<tr><td>높 이</td><td>2.0m</td></tr>
<tr><td>기 둥</td><td>각파이프(60㎜×60㎜)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25㎝로 한다.</td></tr>
<tr><td>버 팀 기 둥</td><td>각파이프(60㎜×60㎜)를 사용하고 간격은 3.6m로 한다.</td></tr>
<tr><td>널 재</td><td>800×2,000㎜의 칼라철판을 사용하고 겹침폭은 5㎝로 한다.</td></tr>
<tr><td>띠 장</td><td>C형강(60×30×10×2.2㎜)을 사용하고 간격은 85㎝로 한다.</td></tr>
</table>
⑦ 기둥 및 띠장의 재료를 원형파이프등으로 가설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td>
<td>2. 공기에 대한 손율
<table>
<tr><th>재료 / 사용시간</th><th>손 율 (%)</th><th></th></tr>
<tr><th></th><th>칼라철판</th><th>기둥 및 띠장</th></tr>
<tr><td>3개월</td><td>16</td><td>6</td></tr>
<tr><td>6개월</td><td>25</td><td>10</td></tr>
<tr><td>12개월</td><td>38</td><td>19</td></tr>
<tr><td>24개월</td><td>53</td><td>37</td></tr>
<tr><td>36개월</td><td>70</td><td>55</td></tr>
<tr><td>48개월</td><td>100</td><td>73</td></tr>
</table></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4 규 준 틀</td><td>보완</td><td>

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

(개소당)

판 재	말 뚝	못(kg)	건축목공(인)	보통인부(인)
두께 1.2㎝ 폭 12㎝ 길이 4m	말구 6㎝ 길이 1.8m 2 본	0.03	0.2	0.2

[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td><td>

2-4-1 토공의 비탈 규준틀(‘09년 보완)

(개소당)

종 류	단 위	수 량
형틀목공	인	0.16
보통인부	인	0.14

[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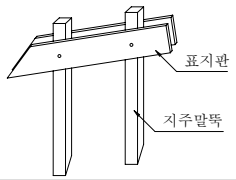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③ 추가</td></tr>
<tr><td></td><td>보완</td><td>

2-4-2 수평 규준틀

1. 개소당 규준틀

구분 \ 종별 / 단위		평 규 준 틀	귀 규 준 틀
목 재	㎥	0.014	0.022
못	kg	0.03	0.06
건 축 목 공	인	0.15	0.30
보 통 인 부	인	0.30	0.45

[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

</td><td>

2-4-2 수평 규준틀(‘09년 보완)

1. 개소당 규준틀('09년 보완)

(개소당)

구분 \ 종별 / 단위		평 규 준 틀	귀 규 준 틀
목 재	㎥	0.014	0.022
건 축 목 공	인	0.15	0.30
보 통 인 부	인	0.30	0.45

[주] ① 본 품은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td><td>- 품 개정

- 표 안‘못’삭제

- 주기
① 수정
② 수정
③ 추가</td></tr>
<tr><td></td><td></td><td>

2. 면적당 규준틀('0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목 재	㎥	0.002
건 축 목 공	인	0.018
보 통 인 부	인	0.016

[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

</td><td>

2. 면적당 규준틀('0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목 재	㎥	0.002
건 축 목 공	인	0.018
보 통 인 부	인	0.016

[주] ① 본 품은 제작,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② 목재 손율은 80%로 한다.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표 안‘못’삭제</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4 규 준 틀</td><td>보완</td><td>2-4-3 세로 규준틀
(개소당)
<table><tr><th>구분 / 종별</th><th>목재(㎥)</th><th>못(kg)</th><th>건축목공(인)</th><th>인부(인)</th></tr><tr><td>귀규준틀(1층)</td><td>0.056</td><td>0.032</td><td>0.18</td><td>0.2</td></tr><tr><td>평규준틀(1층)</td><td>0.062</td><td>0.050</td><td>0.18</td><td>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3.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③ 목재 손율은 30%로 한다.</td><td>2-4-3 세로 규준틀('09년 보완)
(개소당)
<table><tr><th>구 분 / 종 별</th><th>목재(㎥)</th><th></th><th>건축목공(인)</th><th>보통인부(인)</th></tr><tr><td>귀 규 준 틀 (1층)</td><td>0.056</td><td></td><td>0.18</td><td>0.2</td></tr><tr><td>평 규 준 틀 (1층)</td><td>0.062</td><td></td><td>0.18</td><td>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3.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② 목재 손율은 30%로 한다.</td><td>- 주기
①, ② 수정</td></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삭제</td><td>2-5-1 목재 동바리
(10공 ㎥당)
<table><tr><th>종 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통 나 무</td><td>길이 3.6~7.0m
중경12㎝
말구12㎝</td><td>㎥</td><td>0.144</td><td></td></tr><tr><td>각 재</td><td></td><td>㎥</td><td>0.096</td><td></td></tr><tr><td>꺽 쇠</td><td></td><td>kg</td><td>0.7</td><td></td></tr><tr><td>철 선</td><td>φ 4㎜</td><td>kg</td><td>0.3</td><td></td></tr><tr><td>볼 트</td><td></td><td>kg</td><td>1.0</td><td></td></tr></table></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삭제</td><td>
<table>
<tr><th>종 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24</td><td></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53</td><td></td></tr>
<tr><td>잡 재 료</td><td></td><td>식</td><td>1</td><td>재료비의 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일반건축구조물을 기준한 것으로 필요한 때에만 계상하고, 특수구조에 대한 동바리는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격쇠 및 볼트는 4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5회이상 사용시에는 4회로 계상하며 그 손율은 다음과 같고 필요한 때에만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th><th>1 회</th><th>2 회</th><th>3 회</th><th>4 회</th></tr>
<tr><td>손 율(%)</td><td>15</td><td>12.7</td><td>10.8</td><td>9.2</td></tr>
</table>
③ 본 품은 직고 7m 이하에서는 비계공을 제외한 것으로 하고 7m 이상에서는 비계공을 0.5인으로 한다.
④ 본 품은 직고 7m까지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m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⑤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
<tr><th>사용횟수</th><th>구 입 량 (%)</th><th>구입량에 대한 손율 (%)</th><th>매횟수의 손율 (%)</th></tr>
<tr><td>1</td><td>100</td><td>37.1</td><td>37.0</td></tr>
<tr><td>2</td><td>110</td><td>45.1</td><td>24.8</td></tr>
<tr><td>3</td><td>120</td><td>52.4</td><td>20.9</td></tr>
<tr><td>4</td><td>130</td><td>59.0</td><td>19.1</td></tr>
<tr><td>5</td><td>140</td><td>64.9</td><td>18.1</td></tr>
<tr><td>6</td><td>150</td><td>70.2</td><td>17.5</td></tr>
<tr><td>7</td><td>160</td><td>75.0</td><td>17.1</td></tr>
<tr><td>8</td><td>170</td><td>79.3</td><td>16.8</td></tr>
<tr><td>9</td><td>180</td><td>79.3</td><td>15.8</td></tr>
<tr><td>10</td><td>190</td><td>79.3</td><td>15.0</td></tr>
</table>
* 본 표는 거푸집 부재의 표준치수를 참작하여 동바리 설치 재료를 산정한 후 구입량에 대한 손율을 계상할 때 적용함.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삭제</td><td>* 매 회수의 손율이란 소요량에 대하여 사용하는 매회수마다의 손율을 뜻함.
* 동바리 소요량이 100이고 6회 반복 사용할 때
㉮ 구입량에 의한 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구입량 : 100개×150% = 150개
소모량 : 150개×70.2% = 105.3개
㉯ 매회수의 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모량 : 100개×17.5%×6회 = 105개
[계산예]
동 바 리 7회 사용시 (7경간)
통 나 무 0.144㎥×0.171× A1′ = A1
각 재 0.096㎥×0.171× A2′ = A2
꺽 쇠 0.7 ㎏×0.092× A3′ = A3
철 선 0.3 ㎏× A4′ = A4
볼 트 1.0 ㎏×0.092× A5′ = A5
형틀목공 0.24인× A6′ = A6
비 계 공 0.5 인× A7′ = A7 (7.0m 이상일 때 계상)
인 부 0.53인× A8′ = A8
잡 재 1식×(재료비의 5% 이내)× A9′ = A9
소 계 = A
계 A÷10공㎥당 = 1공㎥당 설계단가
※ A1′ , A2′ , A3′ , …… , A9′ = 단가
A1 + A2 + A3 + …… + A9 = A = 10공(㎥)당 단가</td><td><삭제></td><td></td></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편제 수정</td><td><u>2-5-2</u> 강관 동바리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관 동바리</td><td>내관 φ 48.6㎜×2.4㎜
외관 φ 60.5㎜×2.3㎜</td><td>본</td><td>1.34</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04</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2</td><td></td></tr>
<tr><td>잡 재</td><td>재료비의 5%</td><td>식</td><td>1</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므로 벽식구조인 경우는 본 품의 80%로 한다.</td><td><u>2-5-1</u> 강관 동바리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강관 동바리</td><td>내관 φ 48.6㎜×2.4㎜
외관 φ 60.5㎜×2.3㎜</td><td>본</td><td>1.34</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04</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2</td><td></td></tr>
<tr><td>잡 재</td><td>재료비의 5%</td><td>식</td><td>1</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한 것이므로 벽식구조인 경우는 본 품의 80%로 한다.</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보완</td><td>② 층고 4.2m 이상 또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는 재료 및 인력을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조립·해체 및 재료의 할증과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table>⑤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의 재료량 및 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52</td><td></td></tr><tr><td>이 음 철 물</td><td></td><td>개</td><td>0.32</td><td></td></tr><tr><td>조 임 철 물</td><td>직교·자재</td><td>개</td><td>2.68</td><td></td></tr><tr><td>형 틀 목 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td><td></td></tr></table>＊ 전체동바리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td><td>② 층고 4.2m 이상 또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는 재료 및 인력을 설계수량으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조립·해체 및 재료의 할증과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table>⑤ 강관동바리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위하여 높이 2m이내마다 격자로 설치하는 수평연결재의 재료량 및 인력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52</td><td></td></tr><tr><td>이 음 철 물</td><td></td><td>개</td><td>0.32</td><td></td></tr><tr><td>조 임 철 물</td><td>직교·자재</td><td>개</td><td>2.68</td><td></td></tr><tr><td>형 틀 목 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td><td></td></tr></table>＊ 전체동바리를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td><td>- 주기
⑤ 추가</td></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5-2 조립식 강관동바리('01년 신설, 09년 보완)
(10공㎥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작 업 반 장</td><td>인</td><td>0.08</td></tr><tr><td>비 계 공</td><td>인</td><td>0.28</td></tr><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0.50</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36</td></tr><tr><td>크 레 인</td><td>hr</td><td>0.14</td></tr></table>[주] ① 본 품은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슬라브두께 130㎝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의 슬라브 두께는 평균두께로 한다.
③ 본 품은 동바리 설치높이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삭제</td><td>
2-6-1 통나무 비계
1. 재료규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종 별</th><th colspan="2">규 격</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지 름(㎝)</th><th>길 이(m)</th></tr>
<tr><td>긴 비 계 목</td><td>낙 엽 송</td><td>7.5~12</td><td>5.4~7.2</td><td></td></tr>
<tr><td>짧 비 계 목</td><td>낙 엽 송</td><td>6~12</td><td>1.2~3.6</td><td></td></tr>
<tr><td>발 판</td><td>육송·삼송

P.S.P</td><td>두께 3.6
폭 21~27
폭 42</td><td>2.7~3.6

3.04</td><td></td></tr>
<tr><td>철 선</td><td>누구린 것</td><td>#8~10</td><td>50㎏ 다발
30㎏ 다발</td><td>1개소당 1.5m</td></tr>
<tr><td>새 끼</td><td></td><td>1.2~1.5</td><td>65m 다발</td><td>1개소당 8m</td></tr>
</table>
[주] ① 철선 및 새끼는 소모품으로 한다.
② 재료의 손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사용월별
구 분</th><th>3개월미만
(%)</th><th>6개월미만
(%)</th><th>1개년미만
(%)</th><th>1개년이상
(%)</th></tr>
<tr><td>긴 비 계 목</td><td>25</td><td>35</td><td>50</td><td>75~100</td></tr>
<tr><td>짧 비 계 목</td><td>10~12</td><td>15~17</td><td>20~25</td><td>30~50</td></tr>
<tr><td>발 판</td><td>25</td><td>35</td><td>50</td><td>75~100</td></tr>
<tr><td>P.S.P 철 판</td><td>10</td><td>15</td><td>20</td><td>30</td></tr>
</table>
</td><td><삭 제></td><td></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삭제	2. 비계매기	<삭 제>	

구분	단위	수량 높이(m)	비계공(인) 3~7	7~10	10~13	13~16	16~20	20~23	23~26
외부	외줄비계	㎡당	0.03	0.04	0.05	0.06	0.09	0.13	0.19
외부	겹 비 계	㎡당	0.04	0.05	0.06	0.09	0.12	0.19	0.25
외부	쌍줄비계	㎡당	0.05	0.07	0.09	0.12	0.15	0.24	0.37
내부	수평비계	㎡당	0.06						
내부	말 비 계	㎡당	0.03						
비계다리		㎡당	0.40	0.70	0.90	1.35	1.7	2.3	3.48

[주] ① 본 품은 비계높이 26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이프비계매기(강관비계매기)와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택한다.
② 본 품에서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의 높이는 지상에서 비계 최상부까지의 높이이다.

[계산예]
쌍줄비계(건물고 12m, 공사기간 9개월)
① 손료(㎡당)
긴 비 계 목 : 0.45개×0.5 = 0.225개
짧은비계목 : 0.3개×0.25 = 0.075개
발 판 : 0.15매×0.5 = 0.075매
철 선 : 0.36㎏ × 1 = 0.36㎏

② 품(㎡당)

$$\text{비계공} : \frac{0.05 \times A_1 + 0.07 \times A_2 + 0.09 \times A_3}{A_1 + A_2 + A_3}$$

A1 : 지상에서 높이 7m까지의 비계면적
A2 : 지상에서 높이 7~10m 구간의 비계면적
A3 : 지상에서 높이 10~12m 구간의 비계면적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삭제	3. 외부비계 (비계면적 ㎡당) 종 별 / 구분 / 단위 | 외 줄 비 계 | 겹 비 계 | 쌍 줄 비 계 긴 비 계 목 | 개 | 0.24 | 0.30 | 0.45 짧 은 비 계 목 | 개 | 0.1 | 0.15 | 0.3 발 판 | 매 | 0.1 | 0.1 | 0.15 철 선 | kg | 0.18 | 0.25 | 0.36 새 끼 | 다발 | 0.06 | 0.075 | 0.15 [주] ① 쌍줄비계폭은 90㎝일 때의 기준물량이다. ② 비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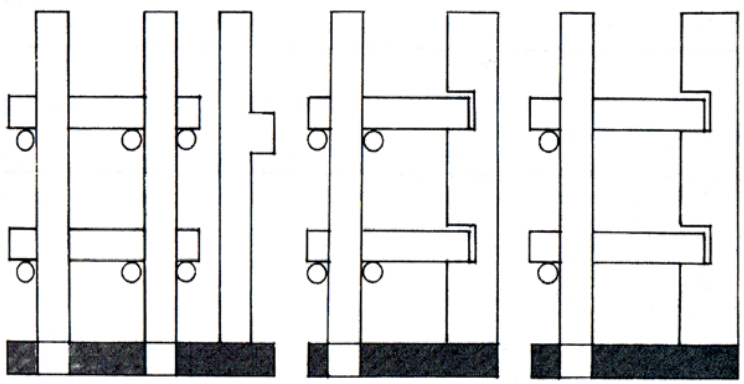 쌍줄비계 겹비계 외줄비계	<삭 제>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삭제</td><td>
③ 가설표준
<table>
<tr><th>구 분</th><th>복식비계(쌍줄비계)</th><th>단식비계(외줄비계)</th></tr>
<tr><td>비계기둥</td><td>1.8m 간격으로 배치하고 지중으로 60㎝ 매립한다.</td><td>간격 1.8~2.1m, 벽체와의 거리는 30~45㎝로 한다.</td></tr>
<tr><td>비계띠장</td><td>수평간격 1.65m이하, 지면에서 첫 번째 띠장까지 거리는 3m로 한다.</td><td>한 손으로 작업할 때는 1.2~1.5m 간격, 두 손으로 작업할 때는 0.9m 간격으로 한다.</td></tr>
<tr><td>비계장선</td><td>비계 띠장에 1.5m 간격으로 배치하고 띠장에서 양쪽 머리가 10㎝이상 나가게 한다.</td><td></td></tr>
<tr><td>가새</td><td>비계 기둥 간격 10m 내외, 각도 45° 내외로 하며 띠장 및 기둥에 긴결한다.</td><td>비계 기둥간에 45° 각도로 가설한다.</td></tr>
</table>
④ 결속재는 철선, 새끼중 한 가지만 사용한다.
⑤ 긴 비계목은 5.4m이고, 짧은 비계목은 1.8m를 표준으로 한 것이다.
⑥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는 말비계 또는 이동식 비계로 가름한다.
⑦ 경미한 페인트공사, 뿜칠공사, 청소등은 외부비계와 말비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사용한다.

4. 내부비계
(비계면적 ㎡당)
<table>
<tr><th>종 별
단위
구분</th><th></th><th>수 평 비 계</th><th>말비계(발돋움)</th></tr>
<tr><td>긴 비 계 목</td><td>개</td><td>0.27</td><td>0.02</td></tr>
<tr><td>짧 은 비 계 목</td><td>개</td><td>0.6</td><td>-</td></tr>
<tr><td>발 판</td><td>매</td><td>0.15</td><td>0.15</td></tr>
<tr><td>각 목(9㎝×9㎝×3.6m)</td><td>개</td><td>-</td><td>0.05</td></tr>
<tr><td>새 끼</td><td>다발</td><td>0.1</td><td>0.03</td></tr>
</table>
</td><td><삭 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삭제</td><td>
[주] ① 수평비계는 2가지 이상의 복합공사나 또는 단일공사로서도 작업이 복잡한 경우에 계상한다.
② 말비계는 3.6m 미만의 경미한 내부공사에 사용한다.
③ 본 품은 층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새끼 대신 철선을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5. 비계다리
<table>
<tr><th rowspan="2">면적 및 개소당 단위
구분</th><th rowspan="2"></th><th rowspan="2">비계다리면적
(㎡당)</th><th colspan="3">1 개 소 당</th></tr>
<tr><th>2 층</th><th>3 층</th><th>4 층</th></tr>
<tr><td>긴 비 계 목</td><td>개</td><td>0.3</td><td>28</td><td>68</td><td>138</td></tr>
<tr><td>짧 은 비 계 목</td><td>개</td><td>0.55</td><td>28~38</td><td>65</td><td>103</td></tr>
<tr><td>발 판</td><td>매</td><td>0.9</td><td>12</td><td>18</td><td>24</td></tr>
<tr><td>각 재</td><td>개</td><td>0.7</td><td>9.35</td><td>14.0</td><td>18.7</td></tr>
<tr><td>철 선</td><td>kg</td><td>0.3</td><td>15~21</td><td>20~30</td><td>30~40</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td><td>6</td><td>15</td><td>3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에 붙여서 비계다리를 가설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각재는 4.5㎝×9.0㎝×3.6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비계다리 가설 표준은 다음과 같다.
㉮ 폭은 90㎝이다.
㉯ 승강비탈은 30° 이하로 하고 15° 이상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슬립용 재료를 30㎝내외 간격으로 못 박아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75㎝ 내외의 손잡이(두겁대)를 가설한다.
④ 본 품의 층별 높이는 2층은 9m, 3층은 14m, 4층은 18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⑤ 가설 및 철거품은 포함되어 있다.
⑥ 각재의 손율은 2-6-1의 “1. 재료규격”의 [주] ②항의 ‘발판’ 손율에 따른다.
6. 철골조용 비계(현장 리벳팅용)
(비계발판면적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긴 비 계 목</td><td>개</td><td>0.25~0.3</td></tr>
<tr><td>발 판</td><td>매</td><td>0.1</td></tr>
<tr><td>철 선 (φ 16)</td><td>kg</td><td>0.8</td></tr>
<tr><td>철 선 (3.3㎜)</td><td>kg</td><td>0.1</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06</td></tr>
</table>
[주]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td><td><삭 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6 구조물 비계</td>
<td>보완</td>
<td>

2-6-2 파이프 비계(강관비계)

1. 강관비계매기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48.6㎜×2.4㎜	m	3.99	
이 음 철 물		개	0.5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	2.08	
받 침 철 물		〃	0.04	
철 물	앵 커 용	개	0.04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1	

[주] ① 본 품은 강관복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강관비계 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복식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기 둥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m(지상에서 첫 번째는 2.0m임)
비 계 폭	1.2m
전 면 보 강 가 새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 평 · 수 직 보 강 가 새	필요할 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2-6-1 강관비계매기('09년 보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48.6㎜×2.4㎜	m	3.99	
이 음 철 물		개	0.5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	2.08	
받 침 철 물		〃	0.04	
철 물	앵 커 용	개	0.04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08	

[주] ① 본 품은 쌍줄비계매기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강관비계 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복식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2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기 둥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m(지상에서 첫 번째는 2.0m임)
비 계 폭	1.2m
전 면 보 강 가 새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 평 · 수 직 보 강 가 새	필요할 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 방지, 작업대 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30m 이상에서 비계안전상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6 구조물 비계</td>
<td>보완</td>
<td>
2. 강관틀 비계매기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1.2m × 1.9m</td><td>개</td><td>0.36</td><td></td></tr>
<tr><td>비계장선틀</td><td>1.0m × 1.9m</td><td>〃</td><td>0.34</td><td></td></tr>
<tr><td>가 세</td><td>1.2m × 1.9m</td><td>〃</td><td>0.68</td><td></td></tr>
<tr><td>조절받침철물</td><td></td><td>〃</td><td>0.04</td><td></td></tr>
<tr><td>이음철물</td><td>삽입걸이</td><td>〃</td><td>0.68</td><td></td></tr>
<tr><td>철 물</td><td>앵커용</td><td>〃</td><td>0.04</td><td></td></tr>
<tr><td>비 계 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02</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틀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방지, 작업대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45m 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중량작업을 할 때의 비계 안전상의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2-6-2 강관틀 비계매기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1.2m × 1.9m</td><td>개</td><td>0.36</td><td></td></tr>
<tr><td>비계장선틀</td><td>1.0m × 1.9m</td><td>〃</td><td>0.34</td><td></td></tr>
<tr><td>가 세</td><td>1.2m × 1.9m</td><td>〃</td><td>0.68</td><td></td></tr>
<tr><td>조절받침철물</td><td></td><td>〃</td><td>0.04</td><td></td></tr>
<tr><td>이음철물</td><td>삽입걸이</td><td>〃</td><td>0.68</td><td></td></tr>
<tr><td>철 물</td><td>앵커용</td><td>〃</td><td>0.04</td><td></td></tr>
<tr><td>비 계 공</td><td>조립·해체</td><td>인</td><td>0.0302</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틀 비계방식의 일반적 기준이며 이외의 비계매기에서는 실설계에 의한 수량을 계상하고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② 강관틀 비계매기 면적 30m×30m(900㎡)일 때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KSF 8003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 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가설장비 설치용시설, 비계다리, 낙하물방지, 작업대시설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높이 45m 이상이거나 20m를 넘어 중량작업을 할 때의 비계 안전상의 보강재 및 기타의 보강재는 별도 계상한다.
⑦ 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td>
<td>- 주기
① 수정</td>
</tr>
<tr>
<td>2-6 구조물 비계</td>
<td>보완</td>
<td>
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1대당 높이 2m기준)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H1700×W1219</td><td>개</td><td>2</td><td></td></tr>
<tr><td>가 새</td><td>L1518-2개</td><td>조</td><td>2</td><td></td></tr>
<tr><td>수평띠장</td><td>L1829</td><td>개</td><td>4</td><td></td></tr>
<tr><td>손잡이기둥</td><td></td><td>개</td><td>4</td><td></td></tr>
<tr><td rowspan="2">손 잡 이</td><td>L1219</td><td>개</td><td>2</td><td></td></tr>
<tr><td>L1829</td><td>개</td><td>4</td><td></td></tr>
</table>
</td>
<td>
2-6-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09년 보완)
(1대당 높이 2m기준)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비계기본틀(기둥)</td><td>H1700×W1219</td><td>개</td><td>2</td><td></td></tr>
<tr><td>가 새</td><td>L1518-2개</td><td>조</td><td>2</td><td></td></tr>
<tr><td>수평띠장</td><td>L1829</td><td>개</td><td>4</td><td></td></tr>
<tr><td>손잡이기둥</td><td></td><td>개</td><td>4</td><td></td></tr>
<tr><td rowspan="2">손 잡 이</td><td>L1219</td><td>개</td><td>2</td><td></td></tr>
<tr><td>L1829</td><td>개</td><td>4</td><td></td></tr>
</table>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td><td>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보 통 인 부	가설·해체	인	1.0	

[주] ① 본 품은 도장 및 천장텍스 붙임시 적용한다.
②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③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바 퀴		개	4	
자 키		개	4	
발 판	45×200×2000	장	7	
보 통 인 부	가설·해체	인	0.6	

[주] ①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②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품 개정

- 주기
① 삭제

- 주기
③ 수정</td></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편제
수정</td><td>

4. 강관 비계다리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φ 48.6㎜×2.4㎜	m	15.0	
이 음 철 물		개	1.97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개	7.23	
받 침 철 물		개	0.26	
철 물	앙카용	개	0.04	
발 판	P.S.P 420×3,040×3	매	0.94	
각 재	육 송	㎥	0.0115	
철 선	#8~10	kg	0.265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273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다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며, 계단참은 길이 5.4m, 폭 1.8m를 기준한 것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2-6-4. 강관 비계다리

1. 슬로프식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강 관	φ 48.6㎜×2.4㎜	m	15.0	
이 음 철 물		개	1.97	
조 임 철 물	직교, 자재	개	7.23	
받 침 철 물		개	0.26	
철 물	앙카용	개	0.04	
발 판	P.S.P 420×3,040×3	매	0.94	
각 재	육 송	㎥	0.0115	
철 선	#8~10	kg	0.265	
비 계 공	조립, 해체	인	0.273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며, 계단참은 길이 5.4m, 폭 1.8m를 기준한 것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항목 수정
(‘1. 슬로프식’)</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신설</td><td></td><td>2. 계단식('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강 관</td><td>φ 48.6㎜×2.4㎜</td><td>m</td><td>28.956</td><td></td></tr><tr><td>조 임 철 물</td><td>직교, 회전</td><td>개</td><td>37.037</td><td></td></tr><tr><td>발 판</td><td>250×900</td><td>매</td><td>4.377</td><td></td></tr><tr><td>비 계 공</td><td>조립, 해체</td><td>인</td><td>0.320</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강관 비계다리(계단식)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비계다리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을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의 강관비계다리 폭은 0.9m이다.
④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소운반 및 잡재료는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30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⑥ 강관비계다리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2. 계단식’ 신설</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6 구조물 비계	보완	5. 공기에 대한 손율	2-6-5 공기에 대한 손율	- 주기 ⑤ 추가

현 행

재료 / 공기	손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손율: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손율: 조임철물 이음철물	손율: 철물 (앵커용)	비고
3 개 월	6 %	9 %	12 %	100 %	
6 개 월	10 %	15 %	20 %	100 %	
12 개 월	19 %	29 %	38 %	100 %	
18 개 월	28 %	42 %	56 %	100 %	
24 개 월	37 %	56 %	74 %	100 %	
30 개 월	46 %	69 %	92 %	100 %	
36 개 월	55 %	83 %	100 %	100 %	
42 개 월	64 %	96 %	100 %	100 %	
48 개 월	73 %	100 %	100 %	100 %	
54 개 월	84 %	100 %	100 %	100 %	
60 개 월	91 %	100 %	100 %	100 %	
66 개 월	100 %	100 %	100 %	100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 회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 보관에 대한 손율은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파이프 비계매기에 대한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등)에는 그 공사 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 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개 정

재료 / 공기	손율: 강관, 비계기본틀, 비계장선틀, 가새	손율: 받침철물, 조절받침철물	손율: 조임철물 이음철물	손율: 철물 (앵커용)	비고
3 개 월	6 %	9 %	12 %	100 %	
6 개 월	10 %	15 %	20 %	100 %	
12 개 월	19 %	29 %	38 %	100 %	
18 개 월	28 %	42 %	56 %	100 %	
24 개 월	37 %	56 %	74 %	100 %	
30 개 월	46 %	69 %	92 %	100 %	
36 개 월	55 %	83 %	100 %	100 %	
42 개 월	64 %	96 %	100 %	100 %	
48 개 월	73 %	100 %	100 %	100 %	
54 개 월	84 %	100 %	100 %	100 %	
60 개 월	91 %	100 %	100 %	100 %	
66 개 월	100 %	100 %	100 %	100 %	

[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② 사용 조작 회수는 400회 기준이며 운반 보관에 대한 손율은 계상된 것이다.
③ 일반적인 파이프 비계매기에 대한 기준이다.
④ 간단한 공사 및 보수공사(도장, 청소등)에는 그 공사 성질에 따라 목재 및 철재 이동식 비계를 비교 설계하여 경제적인 것을 계상한다.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7 낙하물 방지</td><td>삭제</td><td>
2-7-1 비계목 사용

(㎡당)
<table>
<tr><th>구 분
종 별</th><th>철망(㎡)</th><th>발(㎡)</th><th>비계목(개)</th><th>못(kg)</th><th>철선(kg)</th><th>비계공(인)</th></tr>
<tr><td>철 망</td><td>1.1</td><td>-</td><td>1</td><td>0.05</td><td>0.28</td><td>0.03</td></tr>
<tr><td>발</td><td>-</td><td>1.1</td><td>-</td><td>0.05</td><td>-</td><td>0.0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기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철망 및 발치기 품은 높이 7m 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철망 및 발치기에 있어서 높이 7m 이상일 때는 외부비계중 외줄 비계매기품에 준한다.
④ 비계목은 짧은 비계목(길이 3.6m)이다.
⑤ 철망의 규격은 #21 아연도금 철망이며 손율은 30~50%이다.
⑥ 발은 소모품으로 한다.
⑦ 목재 손율은 외부비계에 준한다.
⑧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3.5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5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10㎜ 눈크기 이하의 철망 또는 이와 동등한 발이나 망 등을 친다.
</td><td><삭제></td><td></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7 낙하물 방지	보완	**2-7-2** 강관사용	**2-7-1** 강관 사용**('09년 보완)**	- 품 개정 - 주기 ① 수정 - 주기 개정안 ② 추가 - 주기 ②, ③ 삭제 - 주기 ⑥ ㉮ 수정

현 행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ϕ 48.6㎜×2.4㎜	m	2.7
브 라 켓		개	0.26
철 선		kg	0.25
클 램 프		개	0.27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발	90합	㎡	1.24
비 계 공		인	0.04

[주] ① 본 품은 **기존의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본 품은 높이 8m 이내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높이 8m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높 이 (m)	8~20	20~30	비 고
비 계 공 (인)	0.07	0.10	

단, 3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5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씩 가산한다.

④ 철선 및 발은 소모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⑥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8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20~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0m 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은 가로×세로 35㎜ 그물코 이하의 합성섬유(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개 정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강 관	ϕ 48.6㎜×2.4㎜	m	2.7
브 라 켓		개	0.26
철 선		kg	0.25
클 램 프		개	0.27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그 물 망		㎡	1.24
비 계 공		인	0.03

[주] ① 본 품은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구조물 첫 단(지상으로부터 약 8m)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의 재료 및 품이다.

② 설치에 필요한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철선 및 **그물망**은 소모품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⑤ 가설기준

㉮ 지상에서 높이 8m 되는 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20~30° 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에 높이 10m 이내마다 **2-7-2 플라잉넷을** 설치한다.

㉯ 낙하물 방지망(그물망)은 가로×세로 35㎜ 그물코 이하의 합성섬유(폴리에틸렌)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이어야 한다.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8 보호막 설치</td>
<td>보완</td>
<td>
<u>2-8 보호막 설치</u>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
</table>
[주] ① 본 품에는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u>② 보호막의 손율은 60%이다.</u>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호막이란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시공안전 및 미관 등을 목적으로 시공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
</td>
<td>
<u>2-8-1 비계주위 보호막</u>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보 호 막</td><td>㎡</td><td>1.05</td></tr>
<tr><td>비 계 공</td><td>인</td><td>0.02</td></tr>
</table>
[주] ① 본 품에는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u>② 보호막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u>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호막이란 기존비계를 이용하여 시공안전 및 미관 등을 목적으로 시공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이다.
</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주기
② 수정</td>
</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	건축 품 발췌		2-2-3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09년 보완)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③ 수정

길이 / 폭	3M		6M		9M		12M		비 고
	비계공	특별인부	비계공	특별인부	비계공	특별인부	비계공	특별인부	
2.4M	0.17	0.08	0.28	0.15	0.35	0.11	0.36	0.18	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
3.0M	0.20	0.09	0.29	0.17	0.39	0.20	0.38	0.19	
3.5M	0.20	0.13	0.31	0.17	0.42	0.21	0.50	0.25	
4.8M	0.25	0.13	0.38	0.19	0.47	0.24	0.70	0.35	
6.0M	0.28	0.14	0.40	0.20	0.51	0.26	0.75	0.38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1시간 기준이다. 두 개 이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예: 2개 연결시 2시간, 3개 연결시 3시간).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구조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3 가설울타리	건축 품 발췌		2-3-2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 울타리('09년 보완)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m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E G I 철 판	500×2400	매	2	
강관 파이프	ϕ48.6	m	6.6	
클 램 프	자동	개	0.28	
	고정	개	2.26	
연 결 핀		개	0.56	
볼트/ 넛트		개	13.33	
비 계 공		인	0.04	
보통인부		인	0.02	
굴 삭 기	0.2 ㎥	hr	0.05	

[주] ① 본 품은 0.2㎥ 굴삭기(브레이커 사용)를 사용하여 EGI 휀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품이다."
②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울타리 상단에 설치하는 분진망은 별도 계상한다.
④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본 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 품의 40%를 별도 가산한다.
⑦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손율은 "2-3-1 조립식 가설울타리"의 손율을 적용한다
⑨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가 설 표 준
높 이	2.4m
기 둥	기둥간격은 1.8m, 지중 매립은 1.5m를 기준으로 한다.
버 팀 기 둥	버팀기둥 간격은 3.6m로 한다.
띠 장	띠장은 강관파이프를 사용하고 간격은 100㎝로 한다.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3 가설울타리	건축 품 발췌		2-3-3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09년 신설) (m당)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비 계 공 / 인 / 0.20 보 통 인 부 / 인 / 0.07 굴 삭 기 / 0.2㎥ / hr / 0.05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hr / 0.12 [주] ① 본 품은 재생플라스틱 가설 울타리 설치에 대한 품으로 지반평탄작업, 소운반, 강관 매입, 지주(H형강) 설치 및 띠장 매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타설에 소요되는 재료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재생플라스틱 판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사용월수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손 율(%) / 6 / 12 / 24 / 48 / 72 / 100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3 가설울타리</td><td>토목
품
발췌</td><td></td><td>2-3-4 가설방음벽('09년 보완)
1. 지주 설치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1</td></tr>
<tr><td>굴삭기(0.2㎥)</td><td>hr</td><td>0.05</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매입강관 및 지주(수직, 수평, 보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평탄작업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강관의 규격은 Ø48×2.3T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
2. 방음판 설치
(방음벽길이 m당)
<table>
<tr><th rowspan="2">지주높이</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수량</th></tr>
<tr><th>지주간격(1.5~2m)</th></tr>
<tr><td rowspan="2">4~6m</td><td>철공</td><td>인</td><td>0.12</td></tr>
<tr><td>트럭탑재형크레인
(5ton)</td><td>hr</td><td>0.2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가설방음벽의 방음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기구 설치 및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방음판의 규격은 500㎜×30T×1,980㎜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르며, 손율은 별도 산정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2-5 구조물동바리	건축 품 발췌		2-5-2 조립식 강관동바리('01년 신설, 09년 보완) (10공㎥당)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⑦ 추가

구 분	단 위	수 량
작 업 반 장	인	0.08
비 계 공	인	0.28
형 틀 목 공	인	0.50
보 통 인 부	인	0.36
크 레 인	hr	0.14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슬라브두께 130㎝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단면이 변화하는 경우의 슬라브 두께는 평균두께로 한다.

③ 본 품은 동바리 설치높이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므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높 이	10m초과~20m이하	20m초과~30m이하
할증률(%)	10	20

④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⑤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⑥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사 용 월 수	3개월	6개월	12개월
손 율(%)	6	10	19

⑦ 크레인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높 이	20m이하	20m초과~30m이하
크레인규격	15톤	20톤

⑧ 동바리 설치를 위한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로 계상한다.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5 구조물동바리</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5-3 알루미늄 폼 동바리('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0.028</td></tr><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10</td></tr></table>[주] ①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알루미늄 폼 동바리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알루미늄 폼 동바리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h>사 용 월 수</th><th>3개월</th><th>6개월</th><th>12개월</th></tr><tr><td>손 율(%)</td><td>6</td><td>10</td><td>19</td></tr></table></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r><td>2-6 구조물 비계</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6-6 비계용 브라켓 설치
(10개소당)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비 계 공 (인)</th></tr><tr><th>설 치</th><th>해 체</th><th>계</th></tr><tr><td>벽 용 브 라 켓</td><td>0.45</td><td>0.34</td><td></td></tr><tr><td>스 라 브 발 코 니
난 간 용 브 라 켓
지 지 보 수 대</td><td>0.34</td><td>0.26</td><td></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손율은 2-6-2의 “5.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td><td></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7 낙하물 방지	신설		2-7-2 플라잉넷('09년 신설) (㎡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강관 / φ 48.6㎜×2.4㎜ / m / 0.167 브라켓 / / 개 / 0.116 사다리 / 폭 30㎝×길이 3m 기준 / m / 0.111 와이어로프 / φ 6 / m / 0.764 클램프 / / 개 / 0.127 그물망 / 5cm 이하 / ㎡ / 1.39 구분 / 단위 / 수량 비계공 / 인 / 0.02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첫 단 이후(8m 이상)에 설치하는 플라잉넷의 설치에 대한 품이다. ② 해체품은 설치품의 40%로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5%이며,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④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⑤ 사용된 그물망은 1회 사용 후 손율 100%로 한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2-8 보호막 설치	신설		2-8-2 갱폼 주위 보호막('09년 신설)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보 호 막 / ㎡ / 1.05 비 계 공 / 인 / 0.004 [주] ① 본 품은 갱폼 주위 보호막 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막의 손율은 1회 사용후 100%로 한다. ③ 보호막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재료 할증을 포함한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2-11 방진망 설치</td>
<td>건축
품
발췌</td>
<td></td>
<td>2-11 방진망 설치및 철거<u>('09년 보완)</u>
(㎡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방 진 망</td><td></td><td>㎡</td><td>1.06</td><td></td></tr>
<tr><td>철 선</td><td></td><td>kg</td><td>0.115</td><td></td></tr>
<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u>0.019</u></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소운반·설치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u>②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후 100%로 한다.</u>
③ 방진망 설치를 위해 비계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td>
<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② 내용 개정</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2 엘리베이터형자재운반용 타워설치</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12 엘리베이터형 자재운반용 타워(호이스트) 설치(‘09년 보완)
(m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tr><td>특수비계공</td><td>인</td><td>0.26</td><td>0.13</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EV형 자재운반용 타워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5ton 지게차를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타워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6.4㎥) 및 전기 인입공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며,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호시설 설치비용은 별도 계상한다.</td><td>- 품 개정</td></tr>
<tr><td>2-13 자동세륜기 설치</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13 자동세륜기 설치(‘09년 보완)
(대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h>비 고</th></tr><tr><td>비 계 공</td><td>인</td><td>2</td><td>2</td><td></td></tr><tr><td>지 게 차</td><td>hr</td><td>1</td><td>1</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 설치 또는 해체시 적용한다.
② 본 품은 5ton 지게차를 이용하여 세륜기를 설치할 때의 품이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세륜기의 기초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사용장비의 사양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과 급수배관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품 개정
- 주기
② 내용 수정</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4 쓰레기슈트 설치 ('99년 신설)</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14 쓰레기슈트 설치('99년 신설, 09년 보완)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폴리에틸렌관</td><td>Y관 φ450㎜</td><td>m</td><td>1.20</td></tr><tr><td>난간용브라켓</td><td></td><td>개</td><td>0.77</td></tr><tr><td>철 선</td><td>#8</td><td>kg</td><td>0.19</td></tr><tr><td>비 계 공</td><td></td><td>인</td><td>0.04</td></tr><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4</td></tr></table>[주] ① 본 품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난간용 브라켓에 대한 손율은 2-6-5의 “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른다.
④ 설치시 사용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을 기준한 것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 주기
③ 내용 수정</td></tr>
<tr><td>2-15 축중계, 계측기 설치</td><td>건축
품
발췌</td><td></td><td>2-15 축중계('09년 신설)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설 치</th><th>해 체</th></tr><tr><td>비 계 공</td><td>인</td><td>0.127</td><td>0.127</td></tr></table>[주] ①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이다.
②축중계의 손율은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table><tr><td>개월수</td><td>3</td><td>6</td><td>9</td><td>12</td><td>24</td><td>36</td><td>48</td><td>60</td><td>120</td></tr><tr><td>손율(%)</td><td>3</td><td>5</td><td>8</td><td>10</td><td>20</td><td>30</td><td>40</td><td>50</td><td>100</td></tr></table></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16 파이프 루프공	토목 품 발췌		2-16 파이프 루프공('09년 보완) 1. 장비조립해체 (회당) 구분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편성 인원: 기계운전사 / 인 / 1 / 파이프추진기 기계설치공 / 〃 / 1 보통인부 / 〃 / 2 편성장비: 트럭크레인 / 20톤 / 대 / 1 소요 일수: 조립 / 일 / 3 해체 / 일 / 2 2. 강관추진공 가. 작업편성인원 (일당) 명칭 / 단위 / 추진관경 300~600㎜ / 700~900㎜ / 1,000~1,200㎜ / 1,300~1,500mm 중급기술자 / 인 / 1 / 1 / 1 / 1 특별인부 / 인 / 2 / 2 / 2 / 2 보통인부 / 인 / 1 / 1 / 2 / 3 용접공 / 인 / 2 / 2 / 2 / 2 나. 작업편성장비 (일당)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파이프추진기 / 140~300톤 / 대 / 1 / 강관추진 트럭크레인 / 20톤 / 대 / 1 / 강관거치, 오거연결 운반 발전기 / 50kW / 대 / 1 용접기 / 200AMP / 대 / 2 / 강관 및 기타용접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2-16 파이프 루프공	토목 품 발췌		다. 작업능력 / 3. 기계이동 설치 (아래 참조)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

다. 작업능력

(m/일)

토 질 별	관 경(mm)	추 진 장				
		0~10m	0~20m	0~30m	0~40m	0~50m
점토・실트	300~500	13	12	11	10.5	10
	600~700	10.5	10	8.5	8	8
	800~1,000	7.5	7	6.5	6	6
	1,100~1,200	6.5	6	5	4.5	4.5
사 질 토	300~500	11.5	10.5	9.5	9	9
	600~700	9	8.5	7.5	7	7
	800~1,000	6.5	6	5.5	5	5
	1,100~1,200	5.5	5	4.5	4	4
자갈모래층 풍 화 암	300~500	8.5	7.5	7	6.5	6.5
	600~700	6.5	6	5.5	5	5
	800~1,000	4.5	4	4	4	3.5
	1,100~1,200	4	3.5	3	3	3
호박돌 섞인 자갈모래층	300~500	-	-	-	-	-
	600~700	5	4.5	4	4	4
	800~1,000	3.5	3	3	3	3
	1,100~1,200	3	2.5	2.5	2.5	2.5

3. 기계이동 설치

(회당)

이 동 구 분	이 동 용 장 비	소 요 시 간(분)	비 고
수 평 이 동	크레인(20톤)	90	
수 직 이 동	크레인(20톤)	120	
	잭	180	
경 사 이 동	크레인(20톤)	150	
	잭	240	

[주] ① 강관의 용접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추진기의 이동설치에 필요한 인원편성은 강관추진공과 같다.
③ 강관SET, 추진, 오거인발 및 오거스크류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④ 본품은 강관장 6.0m를 기준한 것이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td><td>토목
품
발췌</td><td></td><td>2-17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9년 보완)
(100㎡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물탱크(살수차)</td><td>16,000ℓ</td><td>시간</td><td>0.008</td></tr></table>[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 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살수면적 계산예>
○ 폭이 6m이고 길이가 1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 10일 = 30,000㎡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td><td>※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통</td></tr>
</table>

- 제5장 기초공사(토목, 건축)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정목차 (기초품셈)

개정 목차	
토목분야	**건축분야**
5-1 기초다짐 및 지정	5-1 기초다짐 및 지정
5-1-1 기초다짐 및 뒤채움	5-1-1 기초다짐 및 뒤채움
5-3 흙막기 및 물막기	5-3 흙막기 및 물막기
5-3-1 P.P 마대 쌀기 및 헐기	5-3-1 P.P 마대 쌀기 및 헐기
5-3-2 H-Beam 설치 및 철거	5-3-2 H-Beam 설치 및 철거
5-3-3 흙막이판 설치	5-3-3 흙막이판 설치
5-5 고압분사 주입공법(J.S.P)	5-5 고압분사 주입공법(J.S.P)
5-6 S.C.W 공법	5-6 S.C.W 공법
5-7 지하연속벽공	5-7 지하연속벽공
5-9 말뚝두부정리	5-9 말뚝두부정리
5-9-1 강관말뚝 두부정리	5-9-1 강관말뚝 두부정리
5-9-2 콘크리트말뚝 두부정리	5-9-2 콘크리트말뚝 두부정리
5-10 매입말뚝공법(S.I.P)	5-10 매입말뚝공법(S.I.P)
5-16 차수재공	5-16 차수재공
5-18 E.P.S 블록성토 공법	5-18 E.P.S 블록성토 공법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토,건5-1-1</td><td>보완</td><td>5-1-1 기초다짐 및 뒤채움 (㎥당)
<table><tr><th>종 별</th><th>보통인부(인)</th><th>비 고</th></tr><tr><td>모래 기초다짐</td><td></td><td></td></tr><tr><td>두 께 3cm</td><td>0.5</td><td>10㎡당 0.15인</td></tr><tr><td>두 께 6cm</td><td>0.4</td><td>10㎡당 0.24인</td></tr><tr><td>자갈 기초다짐</td><td></td><td></td></tr><tr><td>지름 1~3cm</td><td>0.5</td><td></td></tr><tr><td>조약돌 기초다짐</td><td></td><td></td></tr><tr><td>지름 9~15cm</td><td>0.5~0.7</td><td></td></tr><tr><td>돌쌓기 뒤채움</td><td></td><td></td></tr><tr><td>지름 9~15cm</td><td>0.5~0.8</td><td></td></tr></table>[주] ① 본 품에는 소운반 및 고르기가 포함되어 있다.</td><td>5-1-1 기초다짐 및 뒤채움 (㎥당)
<table><tr><th>종별</th><th>규격</th><th>보통인부(인)</th><th>굴삭기(0.2m3)</th><th>살수차 (5500L)</th><th>플레이트 콤팩트 (1.5ton)</th></tr><tr><td rowspan="2">기초다짐 뒤채움</td><td>75mm미만</td><td>0.019</td><td>0.076</td><td>0.019</td><td>0.115</td></tr><tr><td>75mm이상</td><td>0.022</td><td>0.087</td><td>0.022</td><td>0.132</td></tr></table>[주] ① "현행과 동일"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지력 Test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td><td></td></tr>
<tr><td>토,건5-3
토,건5-3-1</td><td>보완</td><td>5-3 흙막기 및 물막기

5-3-1 P.P마대 쌓기 및 헐기
(보통인부 1인당 P.P 마대수)
<table><tr><th>규 격</th><th>만 들 기</th><th>쌓 기</th><th>헐 기</th><th>비 고</th></tr><tr><td>45×70㎝</td><td>61개</td><td>139개</td><td>139개</td><td>0.024㎥/개</td></tr></table>[주] ① 본 품은 흙을 기준한 것이며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조수 및 유수의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1㎥당 마대수를 가산할 수 있다.</td><td>5-3 흙막기 및 물막기

5-3-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
<table><tr><th>종 별</th><th>규 격</th><th>만 들 기</th><th>쌓 기</th><th>헐 기</th><th>비 고</th></tr><tr><td>P.P마대</td><td>45×70㎝</td><td>61개</td><td>139개</td><td>139개</td><td>0.024㎥/개</td></tr><tr><td>톤마대</td><td>100×100㎝</td><td>49개</td><td>71개</td><td>71개</td><td>0.7㎥/개</td></tr></table>[주]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P.P 마대의 경우 보통인부 1인당 P.P 마대 수를 기준하며, 톤마대의 경우 보통인부 2인, 굴삭기 1대당 마대 수를 기준 한다.
④ 톤마대 쌓기 및 헐기 품에 투입되는 굴삭기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table><tr><th>구 분</th><th>굴삭기 규격</th></tr><tr><td>만들기</td><td>0.2㎥</td></tr><tr><td>쌓기 및 헐기</td><td>1.0㎥</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토,건5-3-2</td><td>보완</td><td>5-3-2 H-Beam 설치 및 철거
1.작업능력
(일당)
<table>
<tr><th>길이(m)</th><th>규 격</th><th>단위</th><th>설 치</th><th>철 거</th></tr>
<tr><td>3-5m</td><td>H=300～500
H=600～800</td><td>본
〃</td><td>13.71
11.58</td><td>17.0
14.36</td></tr>
<tr><td>6-8m</td><td>H=300～500
H=600～800</td><td>〃
〃</td><td>11.71
9.71</td><td>15.65
12.81</td></tr>
<tr><td>9-11m</td><td>H=300～500
H=600～800</td><td>〃
〃</td><td>10.91
7.87</td><td>14.40
11.24</td></tr>
<tr><td>12-14m</td><td>H=300～500
H=600～800</td><td>〃
〃</td><td>9.00
7.00</td><td>13.07
10.17</td></tr>
<tr><td>15-18m</td><td>H=300～500
H=600～800</td><td>〃
〃</td><td>7.29
5.71</td><td>11.67
9.00</td></tr>
</table>
2. 품
(일당)
<table>
<tr><th>구분</th><th>비계공(인)</th><th>철골공(인)</th><th>특별인부(인)</th><th>보통인부(인)</th></tr>
<tr><td>설치</td><td>3</td><td>2</td><td>1</td><td>2</td></tr>
<tr><td>철거</td><td>3</td><td>1</td><td>1</td><td>2</td></tr>
</table>
[주] H-Beam 설치 및 철거시 사용장비는 25ton트럭크레인을 기준하였다.</td><td>5-3-2 H-Beam 설치 및 철거
1.작업능력
(일당)
<table>
<tr><th>길이(m)</th><th>규 격</th><th>단위</th><th>설 치</th><th>철 거</th></tr>
<tr><td>3-5m</td><td>H=300～500
H=600～800</td><td>본
〃</td><td>16.45
13.90</td><td>20.40
17.23</td></tr>
<tr><td>6-8m</td><td>H=300～500
H=600～800</td><td>〃
〃</td><td>14.05
11.65</td><td>18.83
15.38</td></tr>
<tr><td>9-11m</td><td>H=300～500
H=600～800</td><td>〃
〃</td><td>13.09
9.44</td><td>17.28
13.50</td></tr>
<tr><td>12-14m</td><td>H=300～500
H=600～800</td><td>〃
〃</td><td>10.80
8.40</td><td>15.66
12.18</td></tr>
<tr><td>15-18m</td><td>H=300～500
H=600～800</td><td>〃
〃</td><td>8.75
6.85</td><td>14.00
10.83</td></tr>
</table>
2. 품
(일당)
<table>
<tr><th>구분</th><th>비계공(인)</th><th>철골공(인)</th><th>특별인부(인)</th><th>보통인부(인)</th></tr>
<tr><td>설치</td><td>1</td><td>2</td><td>1</td><td>2</td></tr>
<tr><td>철거</td><td>1</td><td>1</td><td>1</td><td>2</td></tr>
</table>
[주] "현행과 동일"</td><td></td></tr>
<tr><td>토,건5-3-3</td><td>개정</td><td>5-3-3 흙막이판 설치
(10㎡당)
<table>
<tr><th>종 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판 재</td><td>육송 100×150×2,000</td><td>㎥</td><td>1.05</td></tr>
<tr><td>철 선</td><td>#8</td><td>kg</td><td>1.03</td></tr>
<tr><td>못</td><td></td><td>kg</td><td>0.5</td></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82</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1.54</td></tr>
</table>
[주]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뒷채움등 잡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본 품은 굴삭기 지원시의 품이며 굴삭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손율(%)</th><th>비 고</th></tr>
<tr><td rowspan="3">사용횟수별</td><td>1회</td><td>50</td><td rowspan="3">1회당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td></tr>
<tr><td>2회</td><td>75</td></tr>
<tr><td>3회</td><td>90</td></tr>
<tr><td rowspan="2">사용기간별</td><td>3월이상- 6월미만</td><td>75</td><td rowspan="2">1회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td></tr>
<tr><td>6월이상-12월까지</td><td>90</td></tr>
</table>
⑤ 흙막이판 철거는 설치의 80%로 한다.
⑥ 본 품은 건축물의 지하 터파기용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td><td>5-3-3 흙막이판 설치
(10㎡당)
<table>
<tr><th>종 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판 재</td><td>육송 100×150×2,000</td><td>㎥</td><td>1.05</td></tr>
<tr><td>철 선</td><td>#8</td><td>kg</td><td>1.03</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형 틀 목 공</td><td></td><td>인</td><td>0.29</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77</td></tr>
</table>
[주]①～④ "현행과 동일"</td><td></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토,건5-5	보완	5-5 고압분사 주입공법(J・S・P)	5-5 고압분사 주입공법(J・S・P)	

나. 보링기(4.2톤) : 자갈층・호박돌층

(시간당)

종 별	규격	단 위	수 량 (자갈층・호박돌층)	비고
기 계 운 전 사		**인**	**삭제**	
보 링 공		〃	0.125	
특 별 인 부		〃	0.125	
보 통 인 부		〃	0.25	
생 크 어 댑 터		개	0.029	
파 카 숀 비 트		〃	0.058	
링 크 라 운		〃	0.058	
후 레 싱 헤 드		〃	0.015	
케 이 싱		〃	0.029	
니 플		〃	0.015	
로 드		〃	0.015	
커 플 링		〃	0.015	
손 료		시간	1	

나. 보링기(4.2톤) : 자갈층・호박돌층

(시간당)

종 별	규격	단 위	수 량 (자갈층・호박돌층)	비고
삭제		**삭제**	**삭제**	
보 링 공		〃	0.125	
특 별 인 부		〃	0.125	
보 통 인 부		〃	0.25	
생 크 어 댑 터		개	0.029	
파 카 숀 비 트		〃	0.058	
링 크 라 운		〃	0.058	
후 레 싱 헤 드		〃	0.015	
케 이 싱		〃	0.029	
니 플		〃	0.015	
로 드		〃	0.015	
커 플 링		〃	0.015	
손 료		시간	1	

마. 이토처리

(시간당)

종 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그 라 우 팅 펌 프	50-200ℓ/min	시간	1	
모 터	5.60kW	〃	1	
보 통 인 부		인	0.25	

[주] ① 기계기구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기계기구설치비는 20-1(기계기구설치)을 적용한다.
③ 혼화제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본 품셈 적용기준에 의거 계상할 수 있다.
⑤ J.S.P용 믹서에서는 아지테이터가 포함되었다.
⑥ 자재에 대해서는 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이토(Slime)를 폐기물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 신설〃

마. 이토처리

(시간당)

종 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그 라 우 팅 펌 프	50-200ℓ/min	시간	1	
모 터	5.60kW	〃	1	
보 통 인 부		인	0.25	

[주]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 분사압을 높여 시공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토,건5-6	보완	5-6 S.C.W공법(Soil Cement Wall)	5-6 S.C.W공법(Soil Cement Wall)	

2. 편성인원 (인/일)

구 분		작업반장	보 링 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 원	포 대	1	2	2	7
	BULK	1	2	2	3

3. 사용장비 (1회당)

명 칭	규 격	대수	비고
파일드라이버	74.60kW	1	굴삭 및 교반
발 전 기	350kW	1	파일드라이버 구동용
발 전 기	150kW	1	믹서플랜트 구동용
믹 서	1㎥	1	모르타르생산
그라우팅펌프	50-200ℓ/min	2	모르타르주입
공기압축기	10.3㎥/min	1	굴삭 및 교반
굴 삭 기	0.4㎥	1	잔토처리
크 레 인	25TON	1	작업 보조용
양 수 기	100mm	1	
B I T			소모율 참조

2. 편성인원 (인/일)

구 분		작업반장	기계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 원	포 대	1	2	2	7
	BULK	1	2	2	1

3. 사용장비 (1회당)

명 칭	규 격	대수	비고
파일드라이버	100.71kW	1	굴삭 및 교반
발 전 기	500kW	1	파일드라이버 구동용
발 전 기	350kW	1	믹서플랜트 구동용
믹 서	1㎥	1	모르타르생산
그라우팅펌프	50-200ℓ/min	2	모르타르주입
공기압축기	10.3㎥/min	1	굴삭 및 교반
굴 삭 기	0.8㎥	1	잔토처리
삭제	삭제		
양 수 기	100mm	1	
플랜트사일로	50TON	1	시멘트 저장용
B I T			소모율 참조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토,건5-7	보완	5-7 지하연속벽공 2. 작업편성 인원 및 장비	5-7 지하연속벽공 2. 작업편성 인원 및 장비	

(판넬당)

구분	명칭	규격	단위	T_1 크램쉘 버킷식	T_1 유압회전식	T_2	비고
편성인원	작업반장		인	0.5	0.5	0.5	
	건설기계운전기사		〃	**1**	**1**	**1**	
	건설기계조수		〃	**1**	**1**	**1**	
	기계운전사		〃	2	1	2	
	용접공		〃	1	2	-	
	계장공		〃	-	1	1	
	특별인부		〃	2	3	-	
	보통인부		〃	2	2	3	
편성장비	무한궤도크레인	50~80TON	대	1	-	1	크람쉘버켓조합
	〃	120TON	〃	-	1	-	유압회전식조합
	크램쉘버킷	B=400~1,000mm	〃	1	-	-	
	유압회전식커터	B=800~1,200mm	〃	-	1	-	
	안정액믹서	1.5KW	〃	1	1	-	안정액 생산
	전기용접기	200A	〃	2	**2**	-	
	펌프	ϕ100m/m50HP	〃	2	-	-	안정액공급
	〃	ϕ150m/m30HP	〃	-	3	-	〃
	〃	ϕ150m/m75HP	〃	-	2	-	〃
	발전기	150KW	〃	1	-	-	
	〃	500KW	〃	-	1	-	
	강재탱크	25㎥	기	6	15	-	안정액 저장
	이수분리기	76HP	대	-	-	1	
	〃	100HP	〃	-	1	-	
	공기압축기	10.3㎥/min	〃	-	1	1	안정액침전방지
	샌드펌프	100m/m	〃	-	-	1	
	유압잭	100TON	기	-	-	1	
	인토록킹파이프	**600~1,000m/m**	**M**	-	-	-	
	트레미파이프	200m/m	M	-	-	-	
	벤토나이트사일로	35㎥	대	-	1	-	벤토나이트저장

(판넬당)

구분	명칭	규격	단위	T_1 크램쉘 버킷식	T_1 유압회전식	T_2	비고
편성인원	작업반장		인	0.5	0.5	0.5	
	삭제		-	-	-	-	
	삭제		-	-	-	-	
	기계운전사		〃	2	1	2	
	용접공		〃	1	2	-	
	계장공		〃	-	1	1	
	특별인부		〃	2	3	-	
	보통인부		〃	2	2	3	
편성장비	무한궤도크레인	50~80TON	대	1	-	1	크람쉘버켓조합
	〃	120TON	〃	-	1	-	유압회전식조합
	크램쉘버킷	B=400~1,000mm	〃	1	-	-	
	유압회전식커터	B=800~1,200mm	〃	-	1	-	
	안정액믹서	1.5KW	〃	1	1	-	안정액 생산
	전기용접기	200A	〃	2	**1**	-	
	펌프	ϕ100m/m50HP	〃	2	-	-	안정액공급
	〃	ϕ150m/m30HP	〃	-	3	-	〃
	〃	ϕ150m/m75HP	〃	-	2	-	〃
	발전기	150KW	〃	1	-	-	
	〃	500KW	〃	-	1	-	
	강재탱크	25㎥	기	6	15	-	안정액 저장
	이수분리기	76HP	대	-	-	1	
	〃	100HP	〃	-	1	-	
	공기압축기	10.3㎥/min	〃	-	1	1	안정액침전방지
	샌드펌프	100m/m	〃	-	-	1	
	유압잭	100TON	기	-	-	1	
	삭제						
	트레미파이프	200m/m	M	-	-	-	
	벤토나이트사일로	35㎥	대	-	1	-	벤토나이트저장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토,건5-7</td>
<td>보완</td>
<td>
나. 벽체조성 소요시간(T_2)
T_2 ={C+패널당 안정액 수량(㎥)/25(㎥/h)}+Dℓ_1+ENℓ_1 +Fℓ_2 +GX +Va
T_2 : 벽체조성에 소요되는 시간(h)
ㅇ 계수의 값
<table>
<tr><th>부 호</th><th>C(h)</th><th>D(h/m)</th><th>E(h/m)</th><th>F(h/m)</th><th>G(h/개소)</th><th>a(h/㎥)</th><th>비고</th></tr>
<tr><td>시 간</td><td>0.7</td><td>0.17</td><td>0.03</td><td>0.07</td><td>1.0</td><td>0.04</td><td></td></tr>
</table>
○ C+패널당 안정액 수량(㎥)/25(㎥/h)
C : 파이프설치, 인발시간(h)
25(㎥/h) : 슬라임 처리속도
ㅇ Dℓ_1 D : 인터록킹 파이프설치, 인발시간(h)
ℓ1 : 굴착깊이(m)
○ ENℓ_1 E : 트레미관 1m당 설치시간(h)
N : 트레미관 설치 개소수(개소)
ℓ_1 : 굴착깊이(m)
○ Fℓ_2 F : 철근망 1m당 설치시간(h)
ℓ_2 : 철근망길이(m)
○ GX G : 철근망 이음 1개소당 소요시간(h)
X : 철근망 이음개소수(개소
○ Va V : 콘크리트 타설량(할증포함㎥)
a : 콘크리트 1㎥당 타설시간(h)
</td>
<td>
나. 벽체조성 소요시간(T_2)
T2 ={C+패널당 안정액 수량(㎥)/25(㎥/h)}+ENℓ1 +Fℓ2 +GX +Va
T_2 : 벽체조성에 소요되는 시간(h)
ㅇ 계수의 값
<table>
<tr><th>부 호</th><th>C(h)</th><th>E(h/m)</th><th>F(h/m)</th><th>G(h/개소)</th><th>a(h/㎥)</th><th>비고</th></tr>
<tr><td>시 간</td><td>0.7</td><td>0.03</td><td>0.07</td><td>1.0</td><td>0.04</td><td></td></tr>
</table>
○ C+패널당 안정액 수량(㎥)/25(㎥/h)
C : 파이프설치, 인발시간(h)
25(㎥/h) : 슬라임 처리속도
ㅇ Dℓ_1 D : 삭제
ℓ1 : 삭제
○ ENℓ_1 E : 트레미관 1m당 설치시간(h)
N : 트레미관 설치 개소수(개소)
ℓ_1 : 굴착깊이(m)
○ Fℓ_2 F : 철근망 1m당 설치시간(h)
ℓ_2 : 철근망길이(m)
○ GX G : 철근망 이음 1개소당 소요시간(h)
X : 철근망 이음개소수(개소
○ Va V : 콘크리트 타설량(할증포함㎥)
a : 콘크리트 1㎥당 타설시간(h)
</td>
<td></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토,건5-7	보완	[설 계 요 령] • C+패널당 안정액 수량(㎥)/25(㎥/h)의 계산 0.7(h) +V(1+a)(㎥)/25(㎥/h) • **Dℓ1의 계산** **Dℓ1 = 0.17h/m x굴착깊이(m)** **인터록킹 파이프는 선행패널만 계상하고 후행패널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 ENℓ1 의 계산 ENℓ1 = 0.03(h/m)x트레미관설치개소수(개소)x굴착깊이(m) • Fℓ2의 계산 Fℓ2 = 0.07(h/m)x철근망길이(m) • GX의 계산 GX=1.0(h/개소)x철근망 이음개소수(개소) • Vα의 계산 Vα = 할증을 고려한 패널당 콘크리트 타설량(㎥)x0.04(h/㎥) • 안정액 수량계산(V) $V = \frac{X}{Y} + \frac{X}{Y}(1-K_1)(Y-1) + K_2X$ V : 총 안정액 소요량 X : 총 굴착토량 {설계굴착량×(1+a)} K_1 : 회수율(0.55~0.85) K_2 : 소모율(0.10~0.30) Y : 패널수 패널 안정액 수량은 $\frac{V}{Y}$로 한다. [주] ① 철근망 제작에 따른 자재 및 인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폐액 및 이토(Slime)를 폐기물 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③ 연속벽의 두부정리 및 돌출부 깨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안내벽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패널길이는 5~6m 기준한 것이다.	[설 계 요 령] • C+패널당 안정액 수량(㎥)/25(㎥/h)의 계산 0.7(h) +V(1+a)(㎥)/25(㎥/h) • **Dℓ1: 삭제** **Dℓ1 : 삭제** • ENℓ1 의 계산 ENℓ1 = 0.03(h/m)x트레미관설치개소수(개소)x굴착깊이(m) • Fℓ2의 계산 Fℓ2 = 0.07(h/m)x철근망길이(m) • GX의 계산 GX=1.0(h/개소)x철근망 이음개소수(개소) • Vα의 계산 Vα = 할증을 고려한 패널당 콘크리트 타설량(㎥)x0.04(h/㎥) • 안정액 수량계산(V) $V = \frac{X}{Y} + \frac{X}{Y}(1-K_1)(Y-1) + K_2X$ V : 총 안정액 소요량 X : 총 굴착토량 {설계굴착량×(1+a)} K_1 : 회수율(0.55~0.85) K_2 : 소모율(0.10~0.30) Y : 패널수 패널 안정액 수량은 $\frac{V}{Y}$로 한다. [주] ① ~⑤ " 현행과 동일"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토,건5-9
토,건5-9-1</td><td>보완</td><td>5-9 말뚝두부정리
5-9-1 강관말뚝 두부정리
(1본당)
<table>
<tr><th>구 분</th><th>단위</th><th>㎜
ϕ400</th><th>㎜
ϕ500</th><th>㎜
ϕ600</th><th>㎜
ϕ700</th><th>㎜
ϕ800</th><th>㎜
ϕ900</th><th>㎜
ϕ1,000</th><th>비
고</th></tr>
<tr><td>용 접 공</td><td>인</td><td>0.29</td><td>0.36</td><td>0.86</td><td>1.01</td><td>1.16</td><td>1.30</td><td>1.45</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0.17</td><td>0.21</td><td>0.56</td><td>0.65</td><td>0.75</td><td>0.84</td><td>0.94</td><td></td></tr>
<tr><td>산 소</td><td>ℓ</td><td>493</td><td>621</td><td>744</td><td>873</td><td>1,001</td><td>1,124</td><td>1,252</td><td></td></tr>
<tr><td>아 세 틸 렌</td><td>kg</td><td>0.22</td><td>0.28</td><td>0.33</td><td>0.39</td><td>0.45</td><td>0.50</td><td>0.56</td><td></td></tr>
<tr><td>기 구 손 료</td><td>식</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강관말뚝 항타 완료후 설계 높이에 맞게 자르는 품이며 말뚝두부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는 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③ “신설”</td><td>5-9 말뚝두부정리
5-9-1 강관말뚝 두부정리
(1본당)
<table>
<tr><th>구 분</th><th>단위</th><th>㎜
ϕ400</th><th>㎜
ϕ500</th><th>㎜
ϕ600</th><th>㎜
ϕ700</th><th>㎜
ϕ800</th><th>㎜
ϕ900</th><th>㎜
ϕ1,000</th><th>비
고</th></tr>
<tr><td>용 접 공</td><td>인</td><td>0.29</td><td>0.36</td><td>0.44</td><td>0.51</td><td>0.59</td><td>0.6</td><td>0.73</td><td></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0.17</td><td>0.21</td><td>0.25</td><td>0.29</td><td>0.34</td><td>0.38</td><td>0.42</td><td></td></tr>
<tr><td>산 소</td><td>ℓ</td><td>95</td><td>113</td><td>138</td><td>185</td><td>220</td><td>287</td><td>317</td><td></td></tr>
<tr><td>L P G</td><td>kg</td><td>0.1</td><td>0.13</td><td>0.15</td><td>0.18</td><td>0.21</td><td>0.23</td><td>0.26</td><td></td></tr>
<tr><td>기 구 손 료</td><td>식</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1</td><td></td></tr>
</table>
[주]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용접시 아세틸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 분</th><th>단위</th><th>㎜
ϕ400</th><th>㎜
ϕ500</th><th>㎜
ϕ600</th><th>㎜
ϕ700</th><th>㎜
ϕ800</th><th>㎜
ϕ900</th><th>㎜
ϕ1,000</th><th>비고</th></tr>
<tr><td>아세틸렌</td><td>ℓ</td><td>0.22</td><td>0.28</td><td>0.33</td><td>0.39</td><td>0.45</td><td>0.50</td><td>0.56</td><td></td></tr>
</table></td><td></td></tr>
<tr><td>토,건5-9-2</td><td>보완</td><td>5-9-2 콘크리트말뚝 두부정리
(본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위</th><th>ϕ300mm</th><th>ϕ350mm</th><th>ϕ400mm</th><th>ϕ450mm</th><th>ϕ500mm</th></tr>
<tr><td>그라인더날</td><td>10.16cm</td><td>개</td><td>0.002</td><td>0.003</td><td>0.004</td><td>0.005</td><td>0.005</td></tr>
<tr><td>파 일 캡</td><td>PVC</td><td>개</td><td>1</td><td>1</td><td>1</td><td>1</td><td>1</td></tr>
<tr><td>철 선</td><td>#8</td><td>KG</td><td>0.007</td><td>0.007</td><td>0.007</td><td>0.007</td><td>0.007</td></tr>
<tr><td>할 석 공</td><td></td><td>인</td><td>0.056</td><td>0.072</td><td>0.090</td><td>0.109</td><td>0.130</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43</td><td>0.055</td><td>0.069</td><td>0.084</td><td>0.100</td></tr>
</table>
[주]①본 품은 콘크리트파일 항타 완료 후 설계높이에 맞게 자르는 품이며, 말뚝머리 보강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본 품은 굴삭기(압쇄기 부착)를 사용하여 절단할 때의 품으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굴삭기의 규격기준은 0.2㎥이며, 작업량은 14.7본/hr을 기준한 것이다.</td><td>5-9-2 콘크리트말뚝 두부정리
(본당)
<table>
<tr><th>구 분</th><th>규 격</th><th>단위</th><th>ϕ300mm</th><th>ϕ350mm</th><th>ϕ400mm</th><th>ϕ450mm</th><th>ϕ500mm</th></tr>
<tr><td>그라인더날</td><td>18cm</td><td>개</td><td>0.002</td><td>0.003</td><td>0.004</td><td>0.005</td><td>0.005</td></tr>
<tr><td>파 일 캡</td><td>PVC</td><td>개</td><td>1</td><td>1</td><td>1</td><td>1</td><td>1</td></tr>
<tr><td>철 선</td><td>#8</td><td>KG</td><td>0.007</td><td>0.007</td><td>0.007</td><td>0.007</td><td>0.007</td></tr>
<tr><td>할 석 공</td><td></td><td>인</td><td>0.017</td><td>0.025</td><td>0.032</td><td>0.043</td><td>0.051</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12</td><td>0.016</td><td>0.02</td><td>0.024</td><td>0.029</td></tr>
<tr><td>굴 삭 기</td><td>0.2㎥</td><td>시간</td><td>0.006</td><td>0.008</td><td>0.01</td><td>0.012</td><td>0.014</td></tr>
</table>
[주]① 〃현행과 동일〃
② 삭제
②본 품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할 때의 품이며, 압쇄기 등의 기계조합 시는 별도 계상한다.
③ 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토건5-10</td><td>보완</td><td>
5-10 매입말뚝공법 (S.I.P)

1. 장비조립・해체 (회당)
<table>
<tr><th>구 분</th><th>명 칭</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5">편 성 인 원</td><td><u>건 설 기 계 운 전 기 사</u></td><td><u>인</u></td><td><u>1</u></td><td></td></tr>
<tr><td><u>건 설 기 계 조 수</u></td><td><u>〃</u></td><td><u>1</u></td><td></td></tr>
<tr><td>기 계 설 치 공</td><td>〃</td><td>1</td><td></td></tr>
<tr><td>비 계 공</td><td>〃</td><td>2</td><td></td></tr>
<tr><td>용 접 공</td><td>〃</td><td>1</td><td></td></tr>
<tr><td rowspan="2">소 요 일 수</td><td>조 립</td><td>일</td><td><u>3</u></td><td></td></tr>
<tr><td>해 체</td><td>〃</td><td><u>2</u></td><td></td></tr>
</table>

4. 작업능력 산정

<N치별 1m당 굴착시간(a1)> (min/m)
<table>
<tr><th>N치 \ 말뚝직경(mm)</th><th>300~450</th><th>500~600</th></tr>
<tr><td>20미만</td><td><u>0.3</u></td><td><u>0.5</u></td></tr>
<tr><td>20이상~40미만</td><td><u>0.65</u></td><td><u>0.8</u></td></tr>
<tr><td>40이상~50미만</td><td><u>1.0</u></td><td>-</td></tr>
<tr><td>50이상</td><td><u>2.0</u></td><td>-</td></tr>
</table>
</td><td>
5-10 매입말뚝공법 (S.I.P)

1. 장비조립・해체 (회당)
<table>
<tr><th>구 분</th><th>명 칭</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5">편 성 인 원</td><td><u>삭제</u></td><td>-</td><td>-</td><td></td></tr>
<tr><td><u>삭제</u></td><td>-</td><td>-</td><td></td></tr>
<tr><td>기 계 설 치 공</td><td>〃</td><td>1</td><td></td></tr>
<tr><td>비 계 공</td><td>〃</td><td>2</td><td></td></tr>
<tr><td>용 접 공</td><td>〃</td><td>1</td><td></td></tr>
<tr><td rowspan="2">소 요 일 수</td><td>조 립</td><td>일</td><td><u>1.5</u></td><td></td></tr>
<tr><td>해 체</td><td>〃</td><td><u>1</u></td><td></td></tr>
</table>

<u>[주] 장비조립 및 해체 시 필요한 장비는 별도 계상한다.</u>

4. 작업능력 산정

<N치별 1m당 굴착시간(a1)> (min/m)
<table>
<tr><th>N치 \ 말뚝직경(mm)</th><th>300~450</th><th>500~600</th></tr>
<tr><td>20미만</td><td><u>0.12</u></td><td><u>0.2</u></td></tr>
<tr><td>20이상~40미만</td><td><u>0.27</u></td><td><u>0.33</u></td></tr>
<tr><td>40이상~50미만</td><td><u>0.42</u></td><td>-</td></tr>
<tr><td>50이상</td><td><u>0.83</u></td><td>-</td></tr>
</table>
</td><td></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토,건5-16	보완	5-16 차수재공	5-16 차수재공	

(㎡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 재	시 트		㎡	1.1	
	부 직 포		㎡	1.1	
	용 접 봉	ϕ 3㎜	m	0.67	
인 력	방 수 공		인	0.0075	
	특 별 인 부		인	0.0050	
	보 통 인 부		인	0.0085	
장 비	발 전 기	50kW	시간	0.035	
	용 접 기	용접봉	시간	0.018	
	용 접 기	자동	시간	0.018	
	열 풍 기		시간	0.018	

[주]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정리 작업시 필요한 굴삭기 등의 장비 비용은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지반고르기,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⑤ 부직포는 필요한 경우만 계상한다.
⑥ 본 품은 HDPE Sheet(고밀도 폴리에틸렌)를 기준한 것이다.
⑦ 시트의 규격은 두께 1.5㎜, 폭 4.5m를 기준한 것이다.

(㎡당)

구 분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자 재	시 트		㎡	1.1	
	부 직 포		㎡	1.1	
	용 접 봉	ϕ 3㎜	m	0.25	
	벤토나이트매트	**6.0mm**	**㎡**	**1.1**	
	지오콤포지트	**6.0mm**	**㎡**	**1.1**	
인 력	방 수 공		인	0.0075	
	특 별 인 부		인	0.0050	
	보 통 인 부		인	0.0085	
장 비	발 전 기	10kW	시간	0.015	
	용 접 기	용접봉	시간	0.003	
	용 접 기	자동	시간	0.015	
	삭 제		-	삭제	

[주]①~⑥ "현행과 동일"
⑦ 시트의 규격은 두께 2.0㎜, 폭 4.5m를 기준한 것이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토,건5-18</td><td>보완</td><td>

5-18 E.P.S (Expanded Poly Styrene) 블록 성토공법

(10㎡당)

구 분	명 칭	단 위	규 격	수 량	비 고
자 재	E.P.S블록	개	1,800×900×600	10.3	
	연 결 핀	〃		40.0	
인 력	작업반장	인		0.11	
	특별인부	〃		0.53	
	보통인부	〃		0.37	
장 비	발전기	시간	20kW	0.55	

[주] ① E.P.S블록의 재료할증률은 6%로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E.P.S블록 설치품이므로 바닥면고르기, 뒷채움, 콘크리트타설 등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E.P.S블록 규격 1,800×900×600에 대한 설치품이므로 블록규격이 다른 경우 본 품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td><td>

5-18 E.P.S (Expanded Poly Styrene) 블록 성토공법

(10m³당)

구 분	명 칭	단 위	규 격	수 량	비 고
자 재	E.P.S블록	개	1,800×900×600	10.3	
	연 결 핀	〃		21.0	
인 력	작업반장	인		0.05	
	특별인부	〃		0.19	
	보통인부	〃		0.09	
장 비	발전기	시간	10kW	0.55	

[주] ①~④ "현행과 동일"

</td><td></td></tr>
</table>

-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6. 철근콘크리트 공사

6-1. 콘크리트</td><td>보 완</td><td>
6-1-2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table>
<tr><th>타설구분</th><th>구조물종류</th><th>콘크리트공</th><th>보통인부</th></tr>
<tr><td rowspan="2">붐 타 설</td><td>무근구조물</td><td>0.44</td><td>0.21</td></tr>
<tr><td>철근구조물</td><td><u>0.52</u></td><td><u>0.26</u></td></tr>
<tr><td rowspan="2">배관타설</td><td>무근구조물</td><td>0.74</td><td>0.41</td></tr>
<tr><td>철근구조물</td><td>0.81</td><td>0.46</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다짐이 포함된 것이며, 다짐을 위한 콘크리트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콘크리트펌프차의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합계액의 1%까지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양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단, 다음의 양생품은 물을 뿌려 양생하는 정도의 일반양생을 기준한 것이므로, 특수양생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0㎥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무근구조물</th><th>철근구조물</th></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22</td><td>0.07</td></tr>
<tr><td>제잡비
(양생재료,기구손료)</td><td>%</td><td>31</td><td>41</td></tr>
</table>
③ 상기 배관 타설품에는 압송관조립, 철거, 인력품(40m 정도)이 포함된 것이며, 40m이상의 압송관조립,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3”항의 표에 의거 별도 가산한다.
④ 제치장 콘크리트, 곡면 ; 경사면, 최소폭 15㎝미만의 난간 및 파라펫트와 벽체 등의 돌출부분 또는 요철부분은 10%범위내에서 품을 가산할 수 있다.
⑤ 독립굴뚝 ; 싸이로 ; 고가수조 및 이에 준하는 구조물로서 높이 10~50m인 경우에는 품을 높이에 따라 50%까지 할증할 수 있으며, 특수비계공을 적용한다.
⑥ 슬래브 없는 <월가다>구조로서 기둥과 보에 있어서는 품을 20%범위내에서가산할 수 있다.
</td><td>
6-1-2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table>
<tr><th>타설구분</th><th>구조물종류</th><th>콘크리트공</th><th>보통인부</th></tr>
<tr><td rowspan="2">붐 타 설</td><td>무근구조물</td><td>0.44</td><td>0.21</td></tr>
<tr><td>철근구조물</td><td><u>0.49</u></td><td><u>0.24</u></td></tr>
<tr><td rowspan="2">배관타설</td><td>무근구조물</td><td>0.74</td><td>0.41</td></tr>
<tr><td>철근구조물</td><td>0.81</td><td>0.46</td></tr>
</table>
[주]
① ~⑥ ″ 현행과 동일
</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6-2 철근</td><td>보 완</td><td>

6-2-2. 공장 가공

(ton당)

구조별	철근공	보통인부
보통가공	0.23	0.03
복잡한 가공	0.30	0.04

[주]① 본 품에는 가공품 상차인원 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td><td>

6-2-2. 공장 가공('09년 보완)

(ton당)

구조별	철근공	보통인부
간 단	0.18	0.03
보 통	0.23	0.03
복 잡	0.30	0.04
매우복잡	0.38	0.06

[주] [주]① 본 품에는 가공품 상차인원 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②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④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등을 말한다.
⑥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td>
<td>보 완</td>
<td>6-3-2 합판거푸집
(m^2당)
<table>
<tr><th rowspan="2">종별</th><th rowspan="2">단위</th><th rowspan="2">기준수량
(1회사용시)</th><th colspan="3">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횟수별</th><th>재료비(%)</th><th>노무비(%)</th></tr>
<tr><td>합판</td><td>㎡</td><td>1.030</td><td rowspan="6">1회사용시
2회사용시
3회사용시
4회사용시
5회사용시
6회사용시</td><td rowspan="6">100.0
57.0
46.1
40.1
37.1
34.7</td><td rowspan="6">100.0
60.0
47.1
40.0
34.2
32.0</td><td rowspan="6">12㎜내수
합판기준

제작조립
철거포함</td></tr>
<tr><td>각재</td><td>㎥</td><td>0.038</td></tr>
<tr><td>철선</td><td>kg</td><td>0.29</td></tr>
<tr><td>못</td><td>kg</td><td>0.20</td></tr>
<tr><td>박리제</td><td>ℓ</td><td>0.19</td></tr>
<tr><td>형틀목공</td><td>인</td><td>0.22</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u>0.13</u></td><td colspan="4"></td></tr>
<tr><td>사용고재 평가기준</td><td>%</td><td>23</td><td colspan="2"></td><td colspan="2">목재와 합판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td></tr>
</table>
[주]
① ~ ⑫ 내용생략</td>
<td>6-3-2 합판거푸집
(m^2당)
<table>
<tr><th rowspan="2">종별</th><th rowspan="2">단위</th><th rowspan="2">기준수량
(1회사용시)</th><th colspan="3">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횟수별</th><th>재료비(%)</th><th>노무비(%)</th></tr>
<tr><td>합판</td><td>㎡</td><td>1.030</td><td rowspan="6">1회사용시
2회사용시
3회사용시
4회사용시
5회사용시
6회사용시</td><td rowspan="6">100.0
57.0
46.1
40.1
37.1
34.7</td><td rowspan="6">100.0
60.0
47.1
40.0
34.2
32.0</td><td rowspan="6">12㎜내수
합판기준

제작조립
철거포함</td></tr>
<tr><td>각재</td><td>㎥</td><td>0.038</td></tr>
<tr><td>철선</td><td>kg</td><td>0.29</td></tr>
<tr><td>못</td><td>kg</td><td>0.20</td></tr>
<tr><td>박리제</td><td>ℓ</td><td>0.19</td></tr>
<tr><td>형틀목공</td><td>인</td><td>0.22</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u>0.12</u></td><td colspan="4"></td></tr>
<tr><td>사용고재 평가기준</td><td>%</td><td>23</td><td colspan="2"></td><td colspan="2">목재와 합판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td></tr>
</table>
[주]
① ~ ⑫ "현행과 동일"</td>
<td></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	보 완	6-3-5 유로폼 ($10m^2$당)	6-3-5 유로폼 ($10m^2$당)	

현 행

구분	규격	단위	벽	바닥
패 널	600×1,800㎜	매	-	0.47
패 널	600×1,200 〃	매	0.71	-
슬 라 브 코 너 패 널	220×1,500 〃	매	-	0.13
내 부 〃	(200+200)×1,200㎜	매	0.02	-
보	100×1,650 〃	매	-	0.064
웨 이 지 핀(WEDGE PIN)		개	19.002	6.567
드 롭 헤 드(DROP HEAD)		개	-	0.074
볼 트(너 트 포 함)		조	-	0.377
플 랫 타 이(FLAT TIE)	L= 200㎜	개	20.026	-
강 관 파 이 프	D 48.6 〃	m	0.773	-
훅크.크램프(HOOK CLAMP)		개	2.827	-
목 재		㎥	-	0.007
박 리 제		ℓ	0.125	0.125
형 틀 목 공	조립.해체	인	<u>1.03</u>	
보 통 인 부		인	<u>0.54</u>	

[주]
① ~ ⑨ 내용생략

개 정

구분	규격	단위	벽	바닥
패 널	600×1,800㎜	매	-	0.47
패 널	600×1,200 〃	매	0.71	-
슬 라 브 코 너 패 널	220×1,500 〃	매	-	0.13
내 부 〃	(200+200)×1,200㎜	매	0.02	-
보	100×1,650 〃	매	-	0.064
웨 이 지 핀(WEDGE PIN)		개	19.002	6.567
드 롭 헤 드(DROP HEAD)		개	-	0.074
볼 트(너 트 포 함)		조	-	0.377
플 랫 타 이(FLAT TIE)	L= 200㎜	개	20.026	-
강 관 파 이 프	D 48.6 〃	m	0.773	-
훅크.크램프(HOOK CLAMP)		개	2.827	-
목 재		㎥	-	0.007
박 리 제		ℓ	0.125	0.125
형 틀 목 공	조립.해체	인	<u>0.96</u>	
보 통 인 부		인	<u>0.45</u>	

[주]
① ~ ⑨ "현행과 동일"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td>
<td>보 완</td>
<td>6-3-6 갱폼
(m^2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073</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031</u></td></tr>
</table>
[주]
①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청소, 기름칠 및 보수품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td>
<td>6-3-6 갱폼
(m^2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067</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029</u></td></tr>
</table>
[주]
① ~④ "현행과 동일"</td>
<td></td>
</tr>
</table>

항 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6-8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보안	6-8.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6-8-1. U형플륨 (본당) 중량(kg/개)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크레인운전(시간) 50~150미만 / 0.015 / 0.036 / 0.14 150~300 〃 / 0.021 / 0.048 / 0.15 300~500 〃 / 0.030 / 0.066 / 0.17 500~700 〃 / 0.040 / 0.086 / 0.19 700~900 〃 / 0.050 / 0.106 / 0.21 900~1,100 〃 / 0.060 / 0.126 / 0.23 1,100~1,300 〃 / 0.070 / 0.146 / 0.25 [주]① 본 품은 소운반을 포함한 품이며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및 이음 모르타르는 인력품의 2%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③ 본 품의 규격 및 품질은 관련 KS 규정에 따른다. ④ 본 품은 크레인규격 10t을 기준한 것이다. ⑤ 유용(有用)할 목적으로 해체할 경우 해체공은 설치공의 50%를 계상한다.	6-8.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09년 보완) 6-8-1. U형플륨 (본당) 중량(kg/개)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크레인운전(시간) 50~150미만 / 0.010 / 0.027 / 0.10 150~300 〃 / 0.014 / 0.036 / 0.11 300~500 〃 / 0.020 / 0.049 / 0.12 500~700 〃 / 0.027 / 0.064 / 0.14 700~900 〃 / 0.033 / 0.079 / 0.15 900~1,100 〃 / 0.040 / 0.093 / 0.16 1,100~1,300 〃 / 0.047 / 0.108 / 0.18 [주] ①~⑤ "현행과 동일"	

-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건축)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6. 철근콘크리트 공사

6-1. 콘크리트</td><td>보 완</td><td>6-1-2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table>
<tr><th>타설구분</th><th>구조물종류</th><th>콘크리트공</th><th>보통인부</th></tr>
<tr><td rowspan="2">붐 타 설</td><td>무근구조물</td><td>0.44</td><td>0.21</td></tr>
<tr><td>철근구조물</td><td><u>0.52</u></td><td><u>0.26</u></td></tr>
<tr><td rowspan="2">배관타설</td><td>무근구조물</td><td>0.74</td><td>0.41</td></tr>
<tr><td>철근구조물</td><td>0.81</td><td>0.46</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다짐이 포함된 것이며, 다짐을 위한 콘크리트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콘크리트펌프차의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합계액의 1%까지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양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단, 다음의 양생품은 물을 뿌려 양생하는 정도의 일반양생을 기준한 것이므로, 특수양생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0㎥ 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무근구조물</th><th>철근구조물</th></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22</td><td>0.07</td></tr>
<tr><td>제잡비
(양생재료,기구손료)</td><td>%</td><td>31</td><td>41</td></tr>
</table>
③ 상기 배관 타설품에는 압송관조립, 철거, 인력품(40m 정도)이 포함된 것이며, 40m이상의 압송관조립,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3”항의 표에 의거 별도 가산한다.
④ 제치장 콘크리트, 곡면 ; 경사면, 최소폭 15㎝미만의 난간 및 파라펫트와 벽체 등의 돌출부분 또는 요철부분은 10%범위내에서 품을 가산할 수 있다.
⑤ 독립굴뚝 ; 싸이로 ; 고가수조 및 이에 준하는 구조물로서 높이 10~50m인 경우에는 품을 높이에 따라 50%까지 할증할 수 있으며, 특수비계공을 적용한다.
⑥ 슬래브 없는 <월가다>구조로서 기둥과 보에 있어서는 품을 20%범위내에서가산할 수 있다.</td><td>6-1-2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table>
<tr><th>타설구분</th><th>구조물종류</th><th>콘크리트공</th><th>보통인부</th></tr>
<tr><td rowspan="2">붐 타 설</td><td>무근구조물</td><td>0.44</td><td>0.21</td></tr>
<tr><td>철근구조물</td><td><u>0.49</u></td><td><u>0.24</u></td></tr>
<tr><td rowspan="2">배관타설</td><td>무근구조물</td><td>0.74</td><td>0.41</td></tr>
<tr><td>철근구조물</td><td>0.81</td><td>0.46</td></tr>
</table>
[주]
① ~⑥ ″ 현행과 동일</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td>
<td>보 완</td>
<td>
6-3-2 합판거푸집
(m^2당)
<table>
<tr><th rowspan="2">종별</th><th rowspan="2">단위</th><th rowspan="2">기준수량
(1회사용시)</th><th colspan="3">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횟수별</th><th>재료비(%)</th><th>노무비(%)</th></tr>
<tr><td>합판</td><td>㎡</td><td>1.030</td><td rowspan="6">1회사용시
2회사용시
3회사용시
4회사용시
5회사용시
6회사용시</td><td rowspan="6">100.0
57.0
46.1
40.1
37.1
34.7</td><td rowspan="6">100.0
60.0
47.1
40.0
34.2
32.0</td><td rowspan="6">12㎜내수 합판기준

제작조립 철거포함</td></tr>
<tr><td>각재</td><td>㎥</td><td>0.038</td></tr>
<tr><td>철선</td><td>kg</td><td>0.29</td></tr>
<tr><td>못</td><td>kg</td><td>0.20</td></tr>
<tr><td>박리제</td><td>ℓ</td><td>0.19</td></tr>
<tr><td>형틀목공</td><td>인</td><td>0.22</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u>0.13</u></td><td colspan="3"></td></tr>
<tr><td>사용고재 평가기준</td><td>%</td><td>23</td><td colspan="3"></td><td>목재와 합판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td></tr>
</table>
[주]
① ~ ⑫ 내용생략
</td>
<td>
6-3-2 합판거푸집
(m^2당)
<table>
<tr><th rowspan="2">종별</th><th rowspan="2">단위</th><th rowspan="2">기준수량
(1회사용시)</th><th colspan="3">사용횟수별기준수량에대한 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횟수별</th><th>재료비(%)</th><th>노무비(%)</th></tr>
<tr><td>합판</td><td>㎡</td><td>1.030</td><td rowspan="6">1회사용시
2회사용시
3회사용시
4회사용시
5회사용시
6회사용시</td><td rowspan="6">100.0
57.0
46.1
40.1
37.1
34.7</td><td rowspan="6">100.0
60.0
47.1
40.0
34.2
32.0</td><td rowspan="6">12㎜내수 합판기준

제작조립 철거포함</td></tr>
<tr><td>각재</td><td>㎥</td><td>0.038</td></tr>
<tr><td>철선</td><td>kg</td><td>0.29</td></tr>
<tr><td>못</td><td>kg</td><td>0.20</td></tr>
<tr><td>박리제</td><td>ℓ</td><td>0.19</td></tr>
<tr><td>형틀목공</td><td>인</td><td>0.22</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u>0.12</u></td><td colspan="3"></td></tr>
<tr><td>사용고재 평가기준</td><td>%</td><td>23</td><td colspan="3"></td><td>목재와 합판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td></tr>
</table>
[주]
① ~ ⑫ "현행과 동일"
</td>
<td></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	보 완	6-3-3 제치장 거푸집(제물치장 거푸집) (m^2당)	6-3-3 제치장 거푸집(제물치장 거푸집) (m^2당)	

현 행

종별	단위	기준수량		사용횟수별 기준수량에 대한 비율(%)			
		목재	합판	구분		목재	합판
판 재	m^3	0.03	-	1회 사용시	재료비	100 %	100 %
합 판	m^2	-	1.03		노무비	100 %	100 %
각 재	m^3	0.038	0.038				
철 선	kg	0.29	0.29				
못	kg	0.25	0.2				
볼 트	개	2	2	2회 사용시	재료비	57.7 %	57%
나무덧쇠	개	2	2		노무비	63%	60%
박 리 재	ℓ	0.19	0.19				
형틀목공	인	0.42	**0.25**	제작·조립·철거 포함			
보통인부	인	0.24	**0.15**				
사용고재 평가기준	(%)	23	23	판재 ; 합판 및 각재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주]
① 본 품에는 제치장 거푸집(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의 제작·조립·설치에 소요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서 2회의 사용고재량은 횟수별 비율속에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의 기준수량은 1회 사용시를 기준한 것이므로 2회 사용시의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하고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만을 적용한다.
④ 동바리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곡면 및 특수형상부분(와플슬래브, 난간 등)의 거푸집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볼트의 손율은 15%이다.
⑦ 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
⑧ 합판규격은 12㎜ 내수합판을 기준한 것이다.

개 정

종별	단위	기준수량		사용횟수별 기준수량에 대한 비율(%)			
		목재	합판	구분		목재	합판
판 재	m^3	0.03	-	1회 사용시	재료비	100 %	100 %
합 판	m^2	-	1.03		노무비	100 %	100 %
각 재	m^3	0.038	0.038				
철 선	kg	0.29	0.29				
못	kg	0.25	0.2				
볼 트	개	2	2	2회 사용시	재료비	57.7 %	57%
나무덧쇠	개	2	2		노무비	63%	60%
박 리 재	ℓ	0.19	0.19				
형틀목공	인	0.42	**0.23**	제작·조립·철거 포함			
보통인부	인	0.24	**0.14**				
사용고재 평가기준	(%)	23	23	판재 ; 합판 및 각재의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함			

[주]
① ~⑧ "현행과 동일"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	보 완	6-3-5 유로폼 ($10m^2$당)	6-3-5 유로폼 ($10m^2$당)	

현 행

구분	규격	단위	벽	바닥
패 널	600×1,800㎜	매	-	0.47
패 널	600×1,200 〃	매	0.71	-
슬 라 브 코 너 패 널	220×1,500 〃	매	-	0.13
내 부 〃	(200+200)×1,200㎜	매	0.02	-
보	100×1,650 〃	매	-	0.064
웨 이 지 핀(WEDGE PIN)		개	19.002	6.567
드 롭 헤 드(DROP HEAD)		개	-	0.074
볼 트(너 트 포 함)		조	-	0.377
플 랫 타 이(FLAT TIE)	L= 200㎜	개	20.026	-
강 관 파 이 프	D 48.6 〃	m	0.773	-
훅크.크램프(HOOK CLAMP)		개	2.827	-
목 재		㎥	-	0.007
박 리 제		ℓ	0.125	0.125
형 틀 목 공	조립.해체	인	<u>1.03</u>	
보 통 인 부		인	<u>0.54</u>	

[주]
① ~ ⑨ 내용생략

개 정

구분	규격	단위	벽	바닥
패 널	600×1,800㎜	매	-	0.47
패 널	600×1,200 〃	매	0.71	-
슬 라 브 코 너 패 널	220×1,500 〃	매	-	0.13
내 부 〃	(200+200)×1,200㎜	매	0.02	-
보	100×1,650 〃	매	-	0.064
웨 이 지 핀(WEDGE PIN)		개	19.002	6.567
드 롭 헤 드(DROP HEAD)		개	-	0.074
볼 트(너 트 포 함)		조	-	0.377
플 랫 타 이(FLAT TIE)	L= 200㎜	개	20.026	-
강 관 파 이 프	D 48.6 〃	m	0.773	-
훅크.크램프(HOOK CLAMP)		개	2.827	-
목 재		㎥	-	0.007
박 리 제		ℓ	0.125	0.125
형 틀 목 공	조립.해체	인	<u>0.96</u>	
보 통 인 부		인	<u>0.45</u>	

[주]
① ~ ⑨ "현행과 동일"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6. 철근콘크리트 공사

6-3. 거푸집</td>
<td>보 완</td>
<td>6-3-6 갱폼
(m²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073</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031</u></td></tr>
</table>
[주]
①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청소, 기름칠 및 보수품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갱폼용 핸드레일 및 작업발판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td>
<td>6-3-6 갱폼
(m²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
<tr><td>형 틀 목 공</td><td>인</td><td><u>0.067</u></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u>0.029</u></td></tr>
</table>
[주]
① ~④ "현행과 동일"</td>
<td></td>
</tr>
</table>

- 제10장 기계화 시공(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10. 기계화시공</td><td>보완</td><td>10-5 굴삭기
1. 버킷계수(내용생략)
2. 작업효율(내용생략)
3. 1회 사이클시간(cm)
<table><tr><th>각도(도)
규격(㎥)</th><th colspan="4">싸 이 클 시 간(Sec)</th></tr><tr><th></th><th>45</th><th>90</th><th>135</th><th>180</th></tr><tr><td>0.12</td><td>13</td><td>15</td><td>18</td><td>20</td></tr><tr><td>0.2</td><td>13</td><td>15</td><td>18</td><td>20</td></tr><tr><td>0.4</td><td>13</td><td>15</td><td>18</td><td>20</td></tr><tr><td>0.7</td><td>16</td><td>18</td><td>20</td><td>22</td></tr><tr><td>1.0</td><td>17</td><td>19</td><td>21</td><td>23</td></tr><tr><td>2.0</td><td>22</td><td>25</td><td>27</td><td>30</td></tr></table></td><td>10-5 굴삭기('09년 보완)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1회 사이클시간(cm)
<table><tr><th>각도(도)
규격(㎥)</th><th colspan="4">싸 이 클 시 간(Sec)</th></tr><tr><th></th><th>45</th><th>90</th><th>135</th><th>180</th></tr><tr><td>0.12～0.4</td><td>13</td><td>15</td><td>18</td><td>20</td></tr><tr><td>0.6～0.8</td><td>16</td><td>18</td><td>20</td><td>22</td></tr><tr><td>1.0～1.2</td><td>17</td><td>19</td><td>21</td><td>23</td></tr><tr><td>2.0</td><td>22</td><td>25</td><td>27</td><td>30</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10. 기계화시공</td><td>보 완</td><td>
10-30 콘크리트 펌프차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table>
<tr><th>타설구분</th><th>구조물종류</th><th>콘크리트공</th><th>보통인부</th></tr>
<tr><td rowspan="2">붐 타 설</td><td>무근구조물</td><td>0.44</td><td>0.21</td></tr>
<tr><td>철근구조물</td><td><u>0.52</u></td><td><u>0.26</u></td></tr>
<tr><td rowspan="2">배관타설</td><td>무근구조물</td><td>0.74</td><td>0.41</td></tr>
<tr><td>철근구조물</td><td>0.81</td><td>0.46</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다짐이 포함된 것이며, 다짐을 위한 콘크리트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콘크리트펌프차의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합계액의 1%까지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양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단, 다음의 양생품은 물을 뿌려 양생하는 정도의 일반양생을 기준한 것이므로, 특수양생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0㎥당)
<table>
<tr><th>구분</th><th>단위</th><th>무근구조물</th><th>철근구조물</th></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22</td><td>0.07</td></tr>
<tr><td>제잡비
(양생재료,기구손료)</td><td>%</td><td>31</td><td>41</td></tr>
</table>
③ 상기 배관 타설품에는 압송관조립, 철거, 인력품(40m 정도)이 포함된 것이며, 40m이상의 압송관조립,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거 별도 가산한다.
(m당)
<table>
<tr><th rowspan="2">종류</th><th rowspan="2">직종</th><th colspan="2">품(인)</th><th rowspan="2">계(인)</th></tr>
<tr><th>조립</th><th>철거</th></tr>
<tr><td>압송관</td><td>비계공</td><td>0.009</td><td>0.006</td><td>0.015</td></tr>
</table>
* 압송관의 고정비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를 별도 계상함.
* 소운반은 별도 계상함.
</td><td>
10-30 콘크리트 펌프차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table>
<tr><th>타설구분</th><th>구조물종류</th><th>콘크리트공</th><th>보통인부</th></tr>
<tr><td rowspan="2">붐 타 설</td><td>무근구조물</td><td>0.44</td><td>0.21</td></tr>
<tr><td>철근구조물</td><td><u>0.49</u></td><td><u>0.24</u></td></tr>
<tr><td rowspan="2">배관타설</td><td>무근구조물</td><td>0.74</td><td>0.41</td></tr>
<tr><td>철근구조물</td><td>0.81</td><td>0.46</td></tr>
</table>
[주]①~③"현행과 동일"
</td><td></td></tr>
</table>

- 제11장 기계경비 산정(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11. 기계경비 산정	보완	11-2 손료산정	11-2 손료산정	

(2101) 크레인(무한궤도)

분류번호	규격(ton)	내용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시간당(10-7) 상각비계수	장비비계수	관리비계수	계
2101-0010	10	11,200	1,600	0.9	0.65	0.1	804	580	384	1,768
0015	15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20	20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25	25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30	30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35	35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40	4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050	5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070	7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080	8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100	10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150	15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220	220	14,000	1,400	0.9	0.88	0.1	643	629	425	1,697
0280	280	14,000	1,400	0.9	0.88	0.1	643	629	425	1,697
0300	300	14,000	1,400	0.9	0.88	0.1	643	629	425	1,697

[주] ① 규격은 표준붐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인양 하중을 **말한다.**
② 위의 표는 기중기 작업상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101) 크레인(무한궤도)

분류번호	규격(ton)	내용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시간당(10-7) 상각비계수	장비비계수	관리비계수	계
2101-0010	10 (0.29)	11,200	1,600	0.9	0.65	0.1	804	580	384	1,768
0015	15 (0.38)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20	20 (0.57)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25	25 (0.76)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30	30 (1.15)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35	35 (1.33)	12,800	1,600	0.9	0.65	0.1	703	508	379	1,590
0040	40 (1.53)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050	50 (1.91)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070	70 (2.29)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080	80 (2.68)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100	10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150	150	14,000	1,400	0.9	0.75	0.1	643	536	425	1,604
0220	220	14,000	1,400	0.9	0.88	0.1	643	629	425	1,697
0280	280	14,000	1,400	0.9	0.88	0.1	643	629	425	1,697
0300	300	14,000	1,400	0.9	0.88	0.1	643	629	425	1,697

[주] ① 규격은 표준붐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인양 하중을 **말하며, ( ) 내는 버킷용량을 ㎥로 표시한 것이다.**
② 위의 표는 기중기 작업상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11. 기계경비 산정	보완	11-3 운전경비 산정 (2101) 크레인(무한궤도)	11-3 운전경비 산정 (2101) 크레인(무한궤도)	

현 행

분류번호	기 계 명	규 격	주연료 (ℓ/hr)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건설기계 조장 (인/일)
2101-0010	크레인	10ton	5.8	20	1	0.2
0015	(무한궤도)	15	7.2	20	1	0.2
0020		20	8.6	20	1	0.2
0025		25	9.6	20	1	0.2
0030		30	10.5	20	1	0.2
0035		35	11.2	20	1	0.2
0040		40	11.5	20	1	0.2
0050		50	12.0	20	1	0.2
0070		70	17.2	20	1	0.2
0080		80	19.1	20	1	0.2
0100		100	23.9	20	1	0.2
0150		150	24.4	20	1	0.2
0220		220	25	20	1	0.2
0280		280	28	20	1	0.2
0300		300	28	20	1	0.2

개 정

분류번호	기 계 명	규 격	주연료 (ℓ/hr)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건설기계 조장 (인/일)
2101-0010	크레인	10ton	5.8	20	1	0.2
	(무한궤도)	(0.29)				
0015		15	7.2	20	1	0.2
		(0.38)				
0020		20	8.6	20	1	0.2
		(0.57)				
0025		25	9.6	20	1	0.2
		(0.76)				
0030		30	10.5	20	1	0.2
		(1.15)				
0035		35	11.2	20	1	0.2
		(1.33)				
0040		40	11.5	20	1	0.2
		(1.53)				
0050		50	12.0	20	1	0.2
		(1.91)				
0070		70	17.2	20	1	0.2
		(2.29)				
0080		80	19.1	20	1	0.2
		(2.68)				
0100		100	23.9	20	1	0.2
0150		150	24.4	20	1	0.2
0220		220	25	20	1	0.2
0280		280	28	20	1	0.2
0300		300	28	20	1	0.2

-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 포장유지보수 12-4-1 일반 및 특수 재료 덧씌우기 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가.연속구간	보완	**12-4 포장유지보수** **12-4-1 일반 및 특수재료 덧씌우기** **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일당)	**12-4 포장유지보수** **12-4-1 일반 및 특수재료 덧씌우기** **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09년 보완)** **가. 연속구간('09년 보완)** (일당)	

현 행

배치인원(인)		사용기계 명칭	수량(대)	규격	시공량(㎡) 형식	시공량
보통인부(절삭)	1	노면파쇄기	2	2m	밀링깊이 50mm	5,000
		로우더(타이어)	2	0.57㎥		
		아스팔트 피니셔	1	3.0m		
보통인부(청소)	1	머케덤 로울러	1	10-12 t		
		타이어 로울러	1	8-15 t		
포장공	4	텐덤 로울러	1	5-8 t	밀링깊이 70mm	4,400
		살수차	1	16,000ℓ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절삭, 청소,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③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개 정

배치인원(인)		사용기계 명칭	수량(대)	규격	시공량(㎡) 형식	시공량
보통인부(절삭)	1	노면파쇄기	2	2m	밀링깊이 50mm	5,000
		로우더(타이어)	2	0.57㎥		
		아스팔트 피니셔	1	3.0m		
보통인부(청소)	1	머케덤 로울러	1	10-12 t		
		타이어 로울러	1	8-15 t		
포장공	4	텐덤 로울러	1	5-8 t	밀링깊이 70mm	4,400
		살수차	1	16,000ℓ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 절삭 후 청소, 아스팔트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포함), 활주로 등과 같이 시공범위가 크고 공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공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텍코팅은 12-3-1의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을 적용한다.
④ 지장물, 맨홀주변 등 부분적인 기존 포장면의 파쇄가 필요할 경우, 굴삭기(0.6㎥) 및 대형 브레이커(0.6㎥용)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
포장유지보수

12-4-1
일반 및 특수 재료 덧씌우기

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나.불연속구간</td>
<td>보완</td>
<td>12-4 포장유지보수
12-4-2 일상유지보수
3. 소파보수
가. 절삭 후 아스팔트 소파보수
(일당)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배치인원(인)</th><th colspan="2">사용기계 (1대)</th><th rowspan="2">시공량
(㎡)</th></tr>
<tr><th>명칭</th><th>규격</th></tr>
<tr><td rowspan="4">보통인부(절삭)
1

보통인부(청소)
1

포장공
4</td><td rowspan="4"></td><td>노면파쇄기
로우더(타이어)
아스팔트 피니셔
머케덤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
텐덤 로울러
살수차</td><td>2m
0.57㎥
3.0m
10~12t
8~15t
5~8t
16,000ℓ</td><td>2,00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보수구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구간에 대한, 포장면 절삭후 아스팔트로 덧씌우기하는 소파보수의 절삭, 청소,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③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td>
<td>12-4 포장유지보수
12-4-1 일반 및 특수재료 덧씌우기
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나. 불연속구간('09년 보완)
(일당)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배치인원(인)</th><th colspan="2">사용기계 (1대)</th><th rowspan="2">시공량
(㎡)</th></tr>
<tr><th>명칭</th><th>규격</th></tr>
<tr><td rowspan="4">보통인부(절삭)
1

보통인부(청소)
1

포장공
4</td><td rowspan="4"></td><td>노면파쇄기
로우더(타이어)
아스팔트 피니셔
머케덤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
텐덤 로울러
살수차</td><td>2m
0.57㎥
3.0m
10~12t
8~15t
5~8t
16,000ℓ</td><td>2,00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 절삭 후 청소, 아스팔트 포설,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일반국도, 지방도 및 도심지내 도로 등과 같이 시공범위가 작고 공구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시공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텍코팅은 12-3-1의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을 적용한다.
④ 지장물, 맨홀주변 등 부분적인 기존 포장면의 파쇄가 필요할 경우, 굴삭기(0.6㎥) 및 대형 브레이커(0.6㎥용)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
포장유지보수

12-4-2
일상유지보수

3. 소파보수

가. 소규모 포장복구</td>
<td></td>
<td>
12-4 포장유지보수
12-4-2 일상유지보수
3.소파보수
나. 소규모 포장복구
(일당)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배치인원(인)</th><th colspan="2">사용기계 (1대)</th><th rowspan="2">시공량
(㎡)</th></tr>
<tr><th>명칭</th><th>규격</th></tr>
<tr><td>포장공
보통인부</td><td>1
3</td><td>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로우더(타이어)</td><td>1.5ton
0.7ton
0.57㎥</td><td>5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상하수도 공사 등에서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 포장복구에 대한 품이며, 포장하부에서부터 표층까지의 복구에 적용한다.
② 일당 포장면적이 10㎡ 이하이거나, 작업개소간 이동시간이 일당 2시간 이상 소용되는 소규모 포장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보수율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④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본 품은 유제살포 및 청소가 포함된 품이다.
⑥ 본 품은 표층의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td>
<td>
12-4 포장유지보수
12-4-2 일상유지보수
3. 소파보수
<u>가. 소규모 포장복구('09년 보완)</u>
(일당)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배치인원(인)</th><th colspan="2">사용기계 (1대)</th><th rowspan="2">시공량
(㎡)</th></tr>
<tr><th>명칭</th><th>규격</th></tr>
<tr><td>포장공
보통인부</td><td>1
3</td><td>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로우더(타이어)
<u>트럭</u></td><td>1.5ton
0.7ton
0.57㎥
<u>2.5ton</u></td><td>50</td></tr>
</table>
[주] <u>① 본 품은 상하수도 공사 등에서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 포장복구시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에 대한 품이다.</u>
<u>② 일당 포장면적이 10㎡ 이하의 소규모 포장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을 3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u>
③ 본 품은 보수율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u>④ 유제살포를 위한 용해기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u>
⑤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은 표층의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4
포장유지보수

12-4-2
일상유지보수

3. 소파보수

나. 소규모 도로긴급복구</td>
<td>신설</td>
<td></td>
<td>
12-4 포장유지보수
12-4-2 일상유지보수
3. 소파보수('09년 신설)
<u>나. 소규모 도로긴급복구</u>('09년 신설)
(일당)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배치인원(인)</th><th colspan="2">사용기계 (1대)</th><th rowspan="2">시공량
(㎡)</th></tr>
<tr><th>명칭</th><th>규격</th></tr>
<tr><td>포장공
특별인부
보통인부</td><td>2
1
3</td><td>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로울러(자주식)
굴삭기(대형브레이커 부착)
트럭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td><td>1.5ton
2.5ton
0.18㎥(0.2㎥용)
2.5ton
320-400</td><td>30</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기존 도로 파손에 의한 소규모 응급 복구시 파쇄,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에 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보수율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③ 유제살포를 위한 용해기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다짐시 공사시방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td>
<td></td>
</tr>
</table>

- 제16장 궤도공사(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16. 궤도공사	보완	16-1 궤도공사(일반철도) 16-1-1 궤도부설	16-1 궤도공사(일반철도)('09년 보완) 16-1-1 궤도부설	

현 행

공종별	레일종류(kg/m)	레일한개길이(m)	단위	궤도공(인)	특별인부(인)	보통인부(인)	목도(인)	형틀목공(인)	재료	건설기계조종원(인)	건설기계조수(인)	건설기계조장(인)	비고
궤도부설(목침목구간)				[내	용	생	략]						
궤도부설(목침목구간, 신설설)	50	20~50	km	63.0	-	81	58	-	-	14.0	2.8	0.5	재료상차 기계화
	60	20~50	km	71.0	-	96	72	-	-	14.5	3.3	0.6	
궤도이설(목침목구간)	**30~37**	**9~12**	**km**	**121**	**-**	**224**	**43**						
	30~37	**20**	**km**	**121**	**-**	**243**	**74**						
	50	**12**	**km**	**125**	**-**	**280**	**87**						
	50	**20**	**km**	**125**	**-**	**299**	**112**						
궤도철거(목침목구간)				[내	용	생	략]						
궤도부설(PCT구간)				[내	용	생	략]						
궤도부설(PCT구간, 신설설)	50	20~50	km	58	-	80	80			13.9	2.8	0.5	재료상차 기계화
	60	20~50	km	66	-	94	94			14.4	3.3	0.6	
궤도이설(PCT구간)	**30~37**	**9~12**	**km**	**126**	**-**	**92**	**123**						
	30~37	**20**	**km**	**126**	**-**	**111**	**154**						
	50	**12**	**km**	**130**	**-**	**148**	**162**						
	50	**20**	**km**	**130**	**-**	**167**	**192**						
				[이	하	생	략]						
궤도정정(목침목구간)	**30~50**	**-**	**km**	**70.6**	**-**	**70**							**다지기고저, 궤간 및 방향정정**
궤도정정(PCT구간)	**30~50**	**-**	**km**	**65.6**	**-**	**67.8**							**다지기,고저 및방향정정**
				[이	하	생	략]						

[주] ① 레일절단, 레일천공, 볼트조임풀기 및 침목천공에 소요되는 품(기계화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열차운행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할증(지장 및 대피할증)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대피 할증은 적용기준의 운전빈도별 할증)

개 정

공종별	레일종류(kg/m)	레일한개길이(m)	단위	궤도공(인)	특별인부(인)	보통인부(인)	목도(인)	형틀목공(인)	재료	측량중급기술자(인)	측량초급기능사(인)	비고
궤도부설(목침목구간)				[내	용	생	략]					
궤도부설(목침목구간, 신설설)	50	20~50	km	63.0	-	81	58	-	-			재료상차 기계화
	60	20~50	km	71.0	-	96	72	-	-			
궤도이설(WT/PCT구간)	**50~60**	**20~50**	**km**	**189.58**	**-**	**49.75**	**-**			**3.5**	**3.5**	**기계화시공**
궤도철거(목침목구간)				[내	용	생	략]					
궤도부설(PCT구간)				[내	용	생	략]					
궤도부설(PCT구간, 신설설)	50	20~50	km	58	-	80	80					재료상차 기계화
	60	20~50	km	66	-	94	94					
궤도이설(PCT구간)					**[삭 제]**							
				[이	하	생	략]					
궤도정정(WT/PCT구간)	**50~60**	**20~50**	**km**	**50.55**	**-**	**6**				**3.5**	**3.5**	**기계화시공**
궤도정정(PCT구간)					**[삭 제]**							
				[이	하	생	략]					

[주] ① 레일절단, 레일천공, 볼트조임풀기 및 침목천공에 소요되는 품(기계화품)은 별도 계상한다. **단, 궤도이설 및 정정(기계화시공)은 레일절단, 레일천공, 볼트조임풀기 및 침목천공에 소요되는 품을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본 품은 열차운행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에 따른 할증(지장 및 대피할증)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대피 할증은 적용기준의 운전빈도별 할증)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16. 궤도공사</td><td>보완</td><td>③ 기계상차시 레일은 트럭크레인 25톤을 기준으로 하고, 침목은 지게차 5톤을 기준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장비명</th><th>규격</th><th>단위</th><th>구분</th><th>소요시간</th><th><u>건설기계 조종원</u></th><th><u>건설기계 조수</u></th><th><u>건설기계 조장</u></th></tr>
<tr><td rowspan="2">트 럭
크레인</td><td rowspan="2">25톤</td><td rowspan="2">km</td><td>50kg</td><td>22.66</td><td><u>2.8</u></td><td><u>2.8</u></td><td><u>0.5</u></td></tr>
<tr><td>60kg</td><td>26.75</td><td><u>3.3</u></td><td><u>3.3</u></td><td><u>0.6</u></td></tr>
<tr><td rowspan="2">지게차</td><td rowspan="2">5톤</td><td rowspan="2">km</td><td>P.C.T
구 간</td><td>89.03</td><td><u>11.1</u></td><td></td><td></td></tr>
<tr><td>목침목
구 간</td><td>89.61</td><td><u>11.2</u></td><td></td><td></td></tr>
</table></td><td>③ 기계상차시 레일은 트럭크레인 25톤을 기준으로 하고, 침목은 지게차 5톤을 기준으로 하며, <u>궤도이설 및 정정(기계화시공)에 투입되는 장비는 굴삭기(0.7㎥, 0.2㎥), 양로기(11.94㎾)를 기준으로 한다</u>. 또한 각 장비의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장비명</th><th>규격</th><th>단위</th><th>구분</th><th>소요시간
(hr)</th></tr>
<tr><td rowspan="2">트 럭
크레인</td><td rowspan="2">25톤</td><td rowspan="2">km</td><td>50kg</td><td>22.66</td></tr>
<tr><td>60kg</td><td>26.75</td></tr>
<tr><td rowspan="2">지게차</td><td rowspan="2">5톤</td><td rowspan="2">km</td><td>P.C.T
구 간</td><td>89.03</td></tr>
<tr><td>목침목
구 간</td><td>89.61</td></tr>
<tr><td rowspan="2"><u>굴삭기</u></td><td rowspan="2"><u>0.7㎥</u></td><td rowspan="2"><u>km</u></td><td><u>궤도이설</u></td><td><u>111.67</u></td></tr>
<tr><td><u>궤도정정</u></td><td><u>80.88</u></td></tr>
<tr><td><u>굴삭기</u></td><td><u>0.2㎥</u></td><td><u>km</u></td><td><u>궤도이설</u></td><td><u>111.67</u></td></tr>
<tr><td><u>양로기</u></td><td><u>11.94㎾</u></td><td><u>km</u></td><td><u>궤도이설</u></td><td><u>111.67</u></td></tr>
</table></td><td></td></tr>
</table>

- 20장 지반조사(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20. 지반조사</td><td>신설</td><td></td><td>20-9 콘관입시험('09년 신설)
(개소당)
<table><tr><th>종 별</th><th>단위</th><th>수 량</th></tr><tr><td>중 급 기 술 자</td><td>인</td><td>1.5</td></tr><tr><td>고 급 기 능 사</td><td>인</td><td>1.5</td></tr><tr><td>중 급 기 능 사</td><td>인</td><td>1.0</td></tr><tr><td>초 급 기 능 사</td><td>인</td><td>1.0</td></tr></table>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td><td></td></tr>
</table>

- 13장 방수공사(건축, 토목)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개정목차 】

현 행			개정편제	개 정
건축 부문	13-1 아스팔트방수 1. 지붕공사 2. 지하실 저수조 및 실내방수	13-1 1. 삭제	13-4 13-4	13-1 바탕처리(신설)
	13-2 내산 모르타르 1. 아스팔트 모르타르 2. 내산 모르타르	삭제 삭제 삭제		13-2 프라이머 바름(신설)
	13-3 아스팔트바름	13-3	13-9	13-3 방수층 보호재 깔기(신설)
	13-4 액체방수 1. 시멘트 액체방수 2. 로터스 방수 모르타르 바름 3. 실리콘 방수	13-4 1. 삭제 3.	13-7 13-7-2 13-8	13-4 아스팔트 방수
	13-5 시트방수('01년 보완)	13-5	13-6	13-5 도막 방수
	13-6 방수모르타르 1. 방수모르타르 2. 방수모르타르 바름	13-6 1. 2.	13-7 13-7-1 13-7-4	13-6 시트 방수 13-6-1 개량아스팔트 시트 13-6-2 합성고분자 시트(신설)
	13-7 자갈뿌림	삭제		13-7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13-7-1 방수모르타르 비빔 13-7-2 시멘트 액체방수 13-7-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신설) 13-7-4 방수 모르타르 바름 13-7-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신설) 13-7-6 규산질계 도포 방수(신설)
	13-8 코킹 및 신축줄눈 1. 수밀코킹('04년 보완) 2. 익스팬션 조인트(간단한 경우) 3. 익스팬션 조인트 4. 컨스트럭션 조인트 5. 컨트롤(블록벽체) 조인트 6. 익스팬션 조인트(기성형)	13-8 1. 2. 3. 4. 5. 6.	13-12 13-12-1 13-12-2 13-12-3 13-12-4 13-12-5 13-12-6	13-8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13-9 아스팔트 바름
	13-9 지수판 설치	13-9	13-11	13-10 벤토나이트 방수
	13-10 도막방수	13-10	13-5	13-11 지수판 설치
	13-11 벤토나이트 방수	13-11	13-10	13-12 코킹 및 신축줄눈 13-12-1 수밀코킹 13-12-2 익스팬션 조인트(간단한 경우) 13-12-3 익스팬션 조인트 13-12-4 컨스트럭션 조인트 13-12-5 컨트롤(블록벽체) 조인트 13-12-6 익스팬션 죠인트(기성형)
토목 부문	6-7-4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	6-7-4	6-7-4 1.	6-7-4 교면 방수(신설) 1. 도막 방수 2. 시트 방수(신설)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

13-1 아스팔트 방수
1. 지붕방수
(㎡당)

<table>
<tr><th>구 분 \ 공종별 / 단위</th><th>단위</th><th>A-1
10층
(4겹)
방수</th><th>A-2
8층
(3겹)
방수</th><th>A-3
8층
(3겹)
방수</th><th>A-4
8층
(3겹)
방수</th><th>A-5
6층
(2겹)
방수</th><th>A-6
6층
(2겹)
방수</th></tr>
<tr><td>아스팔트프라이머</td><td>ℓ</td><td>0.4</td><td>0.4</td><td>0.4</td><td>0.4</td><td>0.4</td><td>0.4</td></tr>
<tr><td>콤 파 운 드</td><td>kg</td><td>9.1</td><td>7.1</td><td></td><td></td><td>4.3</td><td></td></tr>
<tr><td>1급블로운아스팔트</td><td>kg</td><td></td><td></td><td>7.1</td><td></td><td></td><td></td></tr>
<tr><td>2급블로운아스팔트</td><td>kg</td><td></td><td></td><td></td><td>7.1</td><td></td><td>3.4</td></tr>
<tr><td>아 스 팔 트 펠 트</td><td>㎡</td><td>1.1</td><td>1.1</td><td>1.1</td><td>1.1</td><td>1.1</td><td>1.1</td></tr>
<tr><td>아 스 팔 트 루 핑</td><td>㎡</td><td>1.1</td><td>1.1</td><td>1.1</td><td>2.2</td><td>1.1</td><td>1.1</td></tr>
<tr><td>특 수 루 핑</td><td>㎡</td><td>2.2</td><td>1.1</td><td>1.1</td><td></td><td></td><td></td></tr>
<tr><td>연 료(火 木)</td><td>㎥</td><td>0.022</td><td>0.015</td><td>0.015</td><td>0.015</td><td>0.012</td><td>0.012</td></tr>
<tr><td>연 료(중 유)</td><td>ℓ</td><td>1.0</td><td>0.8</td><td>0.8</td><td>0.8</td><td>0.6</td><td>0.6</td></tr>
<tr><td>방 수 공</td><td>인</td><td>0.28</td><td>0.23</td><td>0.23</td><td>0.23</td><td>0.17</td><td>0.17</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28</td><td>0.23</td><td>0.23</td><td>0.23</td><td>0.17</td><td>0.17</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공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에는 품을 50% 가산할 수 있다.
③ 방수공에는 프라이머 바르기공 및 루핑, 펠트 깔기공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바탕처리 및 방수층누름 모르타르는 별도 계상한다.
⑤ 연료는 화목, 중요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⑥ 직각부위(귀, 모서리등)처리 및 화로설치의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다.
⑦ A-1 : 중요한 방수(발전소, 변전소, 전화교환실, 충전실 등)
⑧ A-2, A-3, A-4 : 보통정도의 방수(사무실, 학교, 병원, 창고, 상점 등)
⑨ A-5, A-6 : 중요도가 비교적 적은 곳(자동차 차고, 옥외경기장 등)

</td><td>

13-4 아스팔트 방수('09년 보완)
(㎡당)

<table>
<tr><th>구 분</th><th>단위</th><th>10층(4겹)
방수</th><th>8층(3겹)
방수</th><th>6층(2겹)
방수</th></tr>
<tr><td>방 수 공</td><td>인</td><td>0.17</td><td>0.14</td><td>0.11</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08</td><td>0.06</td><td>0.05</td></tr>
</table>

[주] **① 아스팔트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냉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열공법의 경우 품을 30% 가산한다.
④ 본 품은 바닥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에는 품의 30%를 가산한다.
⑤ 본 품은 아스팔트 방수재와 루핑류(펠트, 루핑, 메쉬 등)를 적층하는 품에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td><td></td></tr>
</table>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13.방수공사	삭제	**2. 지하실 저수조 및 실내방수** (㎡당)		

구 분 \ 공종별	단위	B-1 10층방수		B-2 8층방수		B-3 8층방수		B-4 6층방수	B-5 6층방수
		일반면	치켜올린면	일반면	치켜올린면	일반면	치켜올린면		
아스팔트프라이머	ℓ	0.4	0.4	0.4	0.4	0.4	0.4	0.4	0.4
콤파운드	kg	9.1	10.6	7.1	8.6			5.1	
2급블로운아스팔트	kg					7.1	8.6		4.3
아스팔트펠트	㎡							1.1	1.1
아스팔트루핑	㎡	2.2	2.2	2.2	2.2	2.2	2.2		1.1
특수루핑	㎡	2.2	3.3	1.1	2.2	1.1	2.2	1.1	
연료(火木)	㎥	0.022	0.024	0.015	0.022	0.015	0.022	0.012	0.012
연료(중유)	ℓ	1.0	1.2	0.8	1.0	0.8	1.0	0.6	0.6
방수공	인	0.40	0.53	0.33	0.44	0.33	0.44	0.25	0.24
보통인부	인	0.25	0.34	0.21	0.29	0.21	0.27	0.16	0.16

[주] ① 방수공에는 프라이머 바르기공 및 루핑펠트 깔기공이 포함되어 있다.
② 연료는 화목, 중유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③ 직각부위(귀, 모서리 등)처리 및 화로설치의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다.
④ B-1 : 중요한 지하실, 수압이 큰 곳(지하금고실, 고압수조실)
⑤ B-2, B-3 : 보통정도의 지하실 또는 수압이 적은 곳(보통지하실, 보통수조)
⑥ B-4, B-5 : 수압을 받지 않는 지하실 및 옥내바닥(욕실, 변소 등)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삭제</td><td>
13-2 내산모르타르
1. 아스팔트 모르타르

(바름두께 2㎝ ㎡당)
<table>
<tr><th rowspan="2">구분 ＼ 공종별 ／ 단위</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스트레이트아스팔트사용</th><th colspan="2">블로운아스팔트사용</th></tr>
<tr><th>바 닥</th><th>벽</th><th>바 닥</th><th>벽</th></tr>
<tr><td>스트레이트아스팔트</td><td>kg</td><td>6.5</td><td>8.5</td><td></td><td></td></tr>
<tr><td>블로운아스팔트</td><td>kg</td><td></td><td></td><td>8.5</td><td>11.3</td></tr>
<tr><td>돌 가 루</td><td>kg</td><td>10.86</td><td>11.89</td><td>10.86</td><td>11.89</td></tr>
<tr><td>모 래</td><td>㎥</td><td>0.021</td><td>0.023</td><td>0.021</td><td>0.023</td></tr>
<tr><td>연 료 (火 木)</td><td>㎥</td><td>0.0021</td><td>0.0021</td><td>0.0021</td><td>0.0021</td></tr>
<tr><td>미 장 공</td><td>인</td><td>0.12</td><td>0.18</td><td>0.12</td><td>0.18</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12</td><td>0.18</td><td>0.12</td><td>0.18</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공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석면은 별도 계상한다.
③ 상시 산·알칼리·염류에 접촉하지 않는 곳에 사용한다.
</td><td>"삭제"</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삭제</td><td>
2. 내산 모르타르
(㎡당)
<table>
<tr><th rowspan="2">구 분 ＼ 공종 ／ 바름두께 ／ 단위</th><th rowspan="2">단위</th><th>바 닥</th><th>벽</th></tr>
<tr><th>20~25㎜</th><th>12~15㎜</th></tr>
<tr><td>아스팔트프라이머</td><td>ℓ</td><td>0.4</td><td>0.4</td></tr>
<tr><td>블로운아스팔트</td><td>kg</td><td>13.1</td><td>10.8</td></tr>
<tr><td>활 석 분</td><td>kg</td><td>5.3</td><td>3.8</td></tr>
<tr><td>규 석 분</td><td>kg</td><td>19</td><td>13.6</td></tr>
<tr><td>규 사</td><td>kg</td><td>8.5</td><td>2.8</td></tr>
<tr><td>석 면</td><td>kg</td><td>7.2</td><td>2.4</td></tr>
<tr><td>숯 (목 탄)</td><td>kg</td><td>1</td><td>1.5</td></tr>
<tr><td>연 료 (경 유)</td><td>ℓ</td><td>2.6</td><td>2.7</td></tr>
<tr><td>방 수 용</td><td>인</td><td>0.15</td><td>0.2</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17</td><td>0.2</td></tr>
</table>
[주] 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② 상시 산・알칼리・염류에 접촉하는 곳에 사용한다.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
13-3 아스팔트 바름
(㎡당)
<table>
<tr><th>구 분 \ 공종별</th><th>단 위</th><th>솔 칠 (1회바름) 바 닥</th><th>솔 칠 (1회바름) 벽</th><th>바 름 (두께 2㎝) 바 닥</th><th>바 름 (두께 2㎝) 벽</th></tr>
<tr><td>아 스 팔 트</td><td>kg</td><td>1.5</td><td>2.0</td><td>9.5</td><td>10.5</td></tr>
<tr><td>방 수 공</td><td>인</td><td>0.015</td><td>0.017</td><td>0.12</td><td>0.25</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2</td><td>0.02</td><td>0.06</td><td>0.12</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공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모래, 돌가루 및 연료(火木)는 별도 계상한다.
</td><td>
13-9 아스팔트 바름('09년 보완)
(㎡당)
<table>
<tr><th>구 분 \ 공종별</th><th>단 위</th><th>솔 칠 (1회바름) 바 닥</th><th>솔 칠 (1회바름) 벽</th><th>바 름 (두께 2㎝) 바 닥</th><th>바 름 (두께 2㎝) 벽</th></tr>
<tr><td>방 수 공</td><td>인</td><td>0.01</td><td>0.02</td><td>0.09</td><td>0.14</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01</td><td>0.01</td><td>0.05</td><td>0.08</td></tr>
</table>
[주] ① 아스팔트 바름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및 프라이머 바름이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냉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열공법의 경우 품을 30% 가산한다.
⑤ 솔칠」의 경우 솔칠, 롤러바름 등 액상바름을 의미하며, 「바름」의 경우 모르타르 바름과 같이 일정두께를 갖는 바름을 의미한다.
</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
13-4 액체방수
1. 시멘트 액체방수
(방수면적㎡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1 종</th><th>2 종</th><th>비 고</th></tr>
<tr><td>시 멘 트</td><td>kg</td><td>13.050</td><td>7.200</td><td rowspan="5">배합비는
1 : 50 기준
(방수액 : 물)</td></tr>
<tr><td>모 래</td><td>㎥</td><td>0.017</td><td>0.010</td></tr>
<tr><td>방 수 액</td><td>ℓ</td><td>0.655</td><td>0.460</td></tr>
<tr><td>방 수 공</td><td>인</td><td>0.10</td><td>0.08</td></tr>
<tr><td>보 통 인 부</td><td>인</td><td>0.08</td><td>0.06</td></tr>
</table>
[주] ① 보호층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② 바탕파쇄 및 정리품은 필요에 따라 방수면적 ㎡당 보통인부 0.1인 이내로 별도 계상한다.
③ 급결액이 필요시에는 ㎡당 급결액 0.3ℓ, 방수공 0.01인, 보통인부 0.01인을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표 중의 1, 2종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멘트방수 표 14015.1 공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td><td>
13-7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
13-7-2 시멘트 액체 방수('09년 보완)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바 닥</th><th>벽</th></tr>
<tr><td>방 수 공</td><td>인</td><td>0.09</td><td>0.07</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05</td><td>0.04</td></tr>
</table>
[주] ① 시멘트 액체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가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⑤ 본 품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11040.1 시멘트 액체 방수 시공 공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삭제</td><td>
2. 로터스 방수 모르타르 바름
(배합 1 : 2일 때, ㎡당)
<table>
<tr><th rowspan="2">구 분
바름두께(㎜)</th><th colspan="2">로 터 스(kg)</th><th rowspan="2">모르타르
(㎥)</th><th rowspan="2">미장공
(인)</th><th rowspan="2">보통인부
(인)</th></tr>
<tr><th>시멘트의
5%(kg)</th><th>시멘트의
3%(kg)</th></tr>
<tr><td>9</td><td>0.297</td><td>0.178</td><td>0.009</td><td>0.10</td><td>0.10</td></tr>
<tr><td>12</td><td>0.388</td><td>0.244</td><td>0.012</td><td>0.10</td><td>0.10</td></tr>
<tr><td>15</td><td>0.488</td><td>0.290</td><td>0.015</td><td>0.11</td><td>0.11</td></tr>
<tr><td>18</td><td>0.585</td><td>0.352</td><td>0.018</td><td>0.12</td><td>0.12</td></tr>
<tr><td>21</td><td>0.675</td><td>0.406</td><td>0.021</td><td>0.13</td><td>0.13</td></tr>
<tr><td>24</td><td>0.773</td><td>0.464</td><td>0.024</td><td>0.14</td><td>0.14</td></tr>
<tr><td>27</td><td>0.865</td><td>0.524</td><td>0.027</td><td>0.15</td><td>0.15</td></tr>
<tr><td>30</td><td>0.974</td><td>0.582</td><td>0.03</td><td>0.15</td><td>0.15</td></tr>
</table>
[주] ① 방수모르타르의 할증은 벽 및 천정일 때 15%, 바닥일 때 5%를 가산한다.
② 로터스는 시멘트 중량의 5% 및 3%중 1종만을 선택 적용한다.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13.방수공사</td>
<td>보완</td>
<td>

3. 실리콘 방수

(㎡당)

구분 / 바탕별	1 회 칠		2 회 칠	
	실리콘(ℓ)	방수공(인)	실리콘(ℓ)	방수공(인)
콘크리트면솔칠	0.15	0.02	0.30	0.04
모르타르면솔칠	0.19	0.02	0.36	0.04
모르타르면뿜칠	0.23	0.02	0.42	0.04
리싱벽면솔칠	0.23	0.02	0.42	0.04
나무면솔칠	0.17	0.02	0.32	0.04
플라스터진회면솔칠	0.15	0.02	0.30	0.04
블록면솔칠	0.29	0.02	0.54	0.04
슬레이트면솔칠	0.12	0.02	0.22	0.04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② 뿜기 시공일 때는 본 품에 재료를 10% 가산한다.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구분 / 층	1,2,3층	4,5,6층	7,8,9층	10,11,12층	13,14,15층	16,17,18층
방수공	0	5%	8%	12%	16%	20%

④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함.

</td>
<td>

13-8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0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1회 도포	2회 도포
방수공	인	0.02	0.03

[주] **①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구분 / 층	1,2,3층	4,5,6층	7,8,9층	10,11,12층	13,14,15층	16,17,18층
방수공	0	5%	8%	12%	16%	20%

⑤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함.
⑥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는 KS F 4930 규격에 준하는 방수재를 의미한다.

</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

13-5 시트방수('01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시 트	㎡	1.2	시트두께 2.5~3㎜, 폭 1.0m, 1겹 시공시를 기준한 것임.
프 라 이 머	ℓ	0.3	
연 료 (L.P.G)	kg	0.08	
방 수 공	인	**0.09**	
보 통 인 부	인	**0.043**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바탕고르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바닥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에는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시트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직각부위(모서리등)의 곡면처리에 소요되는 잡자재비는 재료비에 3%를 가산한다.
⑦ 시트 두께에 따라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⑧ 시트 상호 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⑨ 본 품은 자착성을 가지고 있는 시트를 사용하여 모체와 시트를 밀착시키는 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td><td>

13-6 시트 방수

13-6-1 개량아스팔트 시트('0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개량아스팔트 시트	비고
시 트	㎡	1.2	시트두께 2.5~3㎜, 폭 1.0m, 1겹 시공시를 기준한 것임.
방 수 공	인	**0.06**	
보통인부	인	**0.03**	

[주] **①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토치공법에 의한 모체와 시트를 전면 접착시키는 단층 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바닥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에는 품의 **30%**를 가산한다.
⑤ 시트 상호 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⑥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시트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편제 수정</td><td>

13-6 방수모르타르

1. 방수모르타르

(㎥당)

구 분 / 배합비	시 멘 트(kg)	모 래(㎥)	보통인부(인)
1 : 1	1,093	0.78	1.2
1 : 2	680	0.98	1.2
1 : 3	510	1.1	1.2

[주] 방수제(액체, 분말)는 별도 계상하고 본 표는 재료 할증, 공구손료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td><td>

13-7 시멘트 방수모르타르계 방수

13-7-1 방수모르타르 비빔

(㎥당)

구 분 / 배합비	시 멘 트(kg)	모 래(㎥)	보통인부(인)
1 : 1	1,093	0.78	1.2
1 : 2	680	0.98	1.2
1 : 3	510	1.1	1.2

[주] 방수제(액체, 분말)는 별도 계상하고 본 표는 재료 할증, 공구손료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

2. 방수모르타르 바름

(㎡당)

구분	바탕면		바름 두께 단 위	12㎜	15㎜	18㎜	21㎜	24㎜	27㎜	30㎜
모르타르량	벽돌콘크리트		㎥	0.012	0.015	0.018	0.021	0.024	0.027	0.030
	라 스		㎥	0.023	0.025	0.030	0.036	0.041	0.046	0.050
품	미장공	벽돌콘크리트	인	0.06	0.07	0.08	0.09	0.10	0.11	0.12
		라 스	인	0.09	0.10	0.11	0.12	0.13	0.14	0.15
	보통인부	벽돌콘크리트	인	0.045	0.0475	0.05	0.0525	0.055	0.0575	0.06
		라 스	인	0.06	0.0625	0.065	0.0675	0.07	0.0725	0.075

[주] ① 방수모르타르의 할증은 미장공사의 모르타르바름에 준하여 계상한다.
② 외벽은 16-1의 “3. 모르타르 바름 [주] ④”에 따라 품을 가산할 수 있다.

</td><td>

13-7-4 방수 모르타르 바름('09년 보안)

(㎡당)

구분	바탕면		바름 두께 단 위	10㎜	12㎜	15㎜	18㎜	21㎜	24㎜	27㎜	30㎜
모르타르량	벽돌콘크리트		㎥	0.010	0.012	0.015	0.018	0.021	0.024	0.027	0.030
	라 스		㎥	0.020	0.023	0.025	0.030	0.036	0.041	0.046	0.050
품	미장공	벽돌콘크리트	인	0.047	0.051	0.060	0.068	0.077	0.085	0.094	0.102
		라 스	인	0.071	0.077	0.085	0.094	0.102	0.111	0.119	0.128
	보통인부	벽돌콘크리트	인	0.033	0.038	0.041	0.043	0.045	0.047	0.049	0.051
		라 스	인	0.050	0.051	0.054	0.055	0.058	0.060	0.062	0.064

[주] ① 방수모르타르의 할증은 미장공사의 모르타르바름에 준하여 계상한다.
② 외벽은 16-1의 “3. 모르타르 바름 [주] ④”에 따라 품을 가산할 수 있다.

</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삭제</td><td>

13-7 자갈뿌림

(㎥당)

구 분	수 량 (㎥)	보통인부 (인)
자 갈 연 료 (火 木)	0.02 0.013	0.05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공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자갈크기는 지름 10㎜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td><td>"삭제"</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편제
수정</td><td>13-8 코킹 및 신축줄눈
1. 수밀코킹('04년 보완)
(m당)<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코 킹 공</td><td>인</td><td>0.03</td></tr></table>[주] ① 본 품은 공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재료량은 정미수량에 할증률 2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td><td>13-12 코킹 및 신축줄눈
13-12-1 수밀코킹('04년 보완)
(m당)<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코 킹 공</td><td>인</td><td>0.03</td></tr></table>[주] ① 본 품은 공구손료 및 소운반품이 포함된 것이다.
② 재료량은 정미수량에 할증률 2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2. 익스팬션 조인트(간단한 경우)
(m당)<table><tr><th>아 스 팔 트(ℓ)</th><th>모 래(㎥)</th><th>조 인 트 재(m)</th><th>방 수 공(인)</th></tr><tr><td>0.124</td><td>0.0004</td><td>텍스재(9㎜×150㎜)1.1</td><td><u>0.015</u></td></tr></table></td><td>13-12-2 익스팬션 조인트(간단한 경우)('09년 보완)
(m당)<table><tr><th>아 스 팔 트(ℓ)</th><th>모 래(㎥)</th><th>조 인 트 재(m)</th><th>방 수 공(인)</th></tr><tr><td>0.124</td><td>0.0004</td><td>텍스재(9㎜×150㎜)1.1</td><td><u>0.01</u></td></tr></table></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3. 익스팬션 조인트
(m당)<table><tr><th>아스팔트(ℓ)</th><th>조인트재(m)</th><th>파이프(ϕ 25)(m)</th><th>철근(ϕ 19)(m)</th><th>페인트 또는 기름(ℓ)</th><th>방수공(인)</th><th>철공(인)</th></tr><tr><td>0.124</td><td>텍스재(9㎜×150㎜)1.1</td><td>0.17</td><td>1</td><td>0.005</td><td><u>0.016</u></td><td><u>0.033</u></td></tr></table>[주] 본 품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설계에 따라 품 및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td><td>13-12-3 익스팬션 조인트('09년 보완)
(m당)<table><tr><th>아스팔트(ℓ)</th><th>조인트재(m)</th><th>파이프(ϕ 25)(m)</th><th>철근(ϕ 19)(m)</th><th>페인트 또는 기름(ℓ)</th><th>방수공(인)</th><th>철공(인)</th></tr><tr><td>0.124</td><td>텍스재(9㎜×150㎜)1.1</td><td>0.17</td><td>1</td><td>0.005</td><td><u>0.01</u></td><td><u>0.03</u></td></tr></table>[주] 본 품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설계에 따라 품 및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4. 컨스트럭션 조인트
(m당)<table><tr><th>아스팔트프라이머(ℓ)</th><th>모 래(㎥)</th><th>방 수 공(인)</th></tr><tr><td>0.986</td><td>0.0006</td><td><u>0.016</u></td></tr></table></td><td>13-12-4 컨스트럭션 조인트('09년 보완)
(m당)<table><tr><th>아스팔트프라이머(ℓ)</th><th>모 래(㎥)</th><th>방 수 공(인)</th></tr><tr><td>0.986</td><td>0.0006</td><td><u>0.01</u></td></tr></table></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5. 컨트롤(블록벽체) 조인트
(m당)
<table><tr><th>아스팔트펠트(m)</th><th>콤파운드(ℓ)</th><th>시멘트(kg)</th><th>모래(㎥)</th><th>방수공(인)</th></tr><tr><td>1.0</td><td>0.091</td><td>2.57</td><td>0.0063</td><td><u>0.033</u></td></tr></table></td><td>13-12-5 컨트롤(블록벽체) 조인트('09년 보완)
(m당)
<table><tr><th>아스팔트펠트(m)</th><th>콤파운드(ℓ)</th><th>시멘트(kg)</th><th>모래(㎥)</th><th>방수공(인)</th></tr><tr><td>1.0</td><td>0.091</td><td>2.57</td><td>0.0063</td><td><u>0.03</u></td></tr></table></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6. 익스팬션 조인트(기성형)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조인트재</td><td>가교발포폴리에틸렌폼 20×80㎜</td><td>m</td><td>1.05</td><td></td></tr><tr><td>시 멘 트</td><td></td><td>kg</td><td>6.227</td><td></td></tr><tr><td>모 래</td><td></td><td>㎥</td><td>0.0135</td><td></td></tr><tr><td>방 수 공</td><td></td><td>인</td><td><u>0.064</u></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u>0.068</u></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조인트재의 설치를 위한 먹매김 품은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 부위에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td><td>13-12-6 익스팬션 조인트(기성형)('09년 보완)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조인트재</td><td>가교발포폴리에틸렌폼 20×80㎜</td><td>m</td><td>1.05</td><td></td></tr><tr><td>시 멘 트</td><td></td><td>kg</td><td>6.227</td><td></td></tr><tr><td>모 래</td><td></td><td>㎥</td><td>0.0135</td><td></td></tr><tr><td>방 수 공</td><td></td><td>인</td><td><u>0.07</u></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u>0.05</u></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조인트재의 설치를 위한 먹매김 품은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 부위에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이다.</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편제
수정</td><td>13-9 지수판 설치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PVC 지수판</td><td>200×5t</td><td>m</td><td>1.04</td><td></td></tr><tr><td>PVC 용접봉</td><td></td><td>kg</td><td>0.042</td><td></td></tr><tr><td>철 선</td><td>#8</td><td>kg</td><td>0.21</td><td></td></tr><tr><td>특별인부</td><td></td><td>인</td><td>0.151</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0.116</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이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td><td>13-11 지수판 설치
(m당)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tr><td>PVC 지수판</td><td>200×5t</td><td>m</td><td>1.04</td><td></td></tr><tr><td>PVC 용접봉</td><td></td><td>kg</td><td>0.042</td><td></td></tr><tr><td>철 선</td><td>#8</td><td>kg</td><td>0.21</td><td></td></tr><tr><td>특별인부</td><td></td><td>인</td><td>0.151</td><td></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0.116</td><td></td></tr></table>[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경우이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보완</td><td>

13-10 도막방수

(㎡당)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규 격</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3">수 량</th></tr>
<tr><th>고무아스팔트에멀션계</th><th>우레탄계</th><th>무기질 탄성계</th></tr>
<tr><td>고무아스팔트에멀션</td><td>고형분</td><td>ℓ</td><td>5.075</td><td></td><td></td></tr>
<tr><td>우 레 탄 방 수 재</td><td>60%</td><td>kg</td><td></td><td>3.90</td><td></td></tr>
<tr><td>에 멀 션</td><td>주제・경</td><td>kg</td><td></td><td></td><td>1.496</td></tr>
<tr><td>마 감 코 팅 제</td><td>화제포함</td><td>kg</td><td></td><td>0.295</td><td>0.455</td></tr>
<tr><td>프 라 이 머</td><td></td><td>ℓ</td><td>0.402</td><td>0.402</td><td></td></tr>
<tr><td>부 직 포</td><td></td><td>㎡</td><td>1.110</td><td></td><td>1.11</td></tr>
<tr><td>희 석 제</td><td></td><td>kg</td><td></td><td>0.41</td><td></td></tr>
<tr><td>파 우 더</td><td></td><td>kg</td><td></td><td></td><td>1.16</td></tr>
<tr><td>시 멘 트</td><td></td><td>kg</td><td>2.500</td><td></td><td></td></tr>
<tr><td>모 래</td><td></td><td>㎥</td><td>0.005</td><td></td><td></td></tr>
<tr><td>방 수 공</td><td></td><td>인</td><td>0.152</td><td>0.088</td><td>0.178</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187</td><td>0.135</td><td>0.179</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방수공사후 보호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바닥면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 품은 20%, 재료비는 부직포를 제외하고 15%까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바탕 청소・정리・표면의 요철부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⑥ 우레탄계 및 무기질 탄성계는 노출방수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바탕고르기 모르타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계 및 우레탄계의 방수도막 두께는 3㎜를 기준한 것이며 무기질 탄성계의 공정은 6공정을 기준한 것이다.
⑧ 부직포의 상호연결 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td><td>

13-5 도막 방수('09년 보완)

(㎡당)

구 분	단 위	노출 공법	비노출 공법
방 수 공	인	0.07	0.06
보통인부	인	0.04	0.03

[주] **① 도막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② 노출공법의 품은 바탕처리 및 프라이머바름이 제외되어 있다.
③ 비노출 공법의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⑤ 본 품은 두께 3㎜ 및 보강포 1회를 기준으로 한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의 도막 방수공사 품에 적용한다.
⑥ 본 품은 바닥면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 품은 **30%** 가산한다.
⑦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13.방수공사</td>
<td>보완</td>
<td>
13-11 벤토나이트 방수
(㎡당)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규 격</th><th rowspan="2">단 위</th><th colspan="2">벤토나이트 매트</th><th colspan="2">벤토나이트 시트</th></tr>
<tr><th>바닥</th><th>벽</th><th>바닥</th><th>벽</th></tr>
<tr><td>벤토나이트 방수재</td><td></td><td>㎡</td><td>1.18</td><td>1.20</td><td>1.15</td><td>1.20</td></tr>
<tr><td>벤토나이트 씰 재</td><td></td><td>ℓ</td><td>0.45</td><td>0.50</td><td>0.15</td><td>0.42</td></tr>
<tr><td>벤토나이트 알갱이</td><td></td><td>kg</td><td>3.38</td><td>1.46</td><td>0.80</td><td>0.80</td></tr>
<tr><td>마 감 졸 대</td><td></td><td>m</td><td></td><td>0.30</td><td>1.1</td><td>1.1</td></tr>
<tr><td>P E 필 름</td><td>0.04㎜</td><td>㎡</td><td>1.20</td><td>1.20</td><td>0.6</td><td>0.8</td></tr>
<tr><td>카 트 리 지</td><td>화약</td><td>개</td><td>10</td><td>10</td><td>10.5</td><td>10.5</td></tr>
<tr><td>콘 크 리 트 못</td><td>32㎜</td><td>개</td><td>10</td><td>10</td><td>10.5</td><td>10.5</td></tr>
<tr><td>와 셔</td><td></td><td>개</td><td>10</td><td>10</td><td>10.5</td><td>10.5</td></tr>
<tr><td>조 인 트 테 이 프</td><td></td><td>m</td><td>-</td><td>-</td><td>1.1</td><td>1.1</td></tr>
<tr><td>방 수 공</td><td></td><td>인</td><td>0.09</td><td>0.10</td><td>0.08</td><td>0.09</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5</td><td>0.05</td><td>0.04</td><td>0.04</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 방수공사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방수공사후 보호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바탕청소, 정리, 표면의 요철부 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바탕고르기 모르타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⑥ 방수재의 상호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⑦ 벤토나이트 매트의 규격은 1219×4570×6.4㎜ 기준이며, 벤토나이트 시트 규격은 1220×6700×4.5㎜를 기준한 것이다.
</td>
<td>
13-10 벤토나이트 방수('09년 보완)
(㎡당)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규 격</th><th rowspan="2">단 위</th><th colspan="2">벤토나이트 매트</th><th colspan="2">벤토나이트 시트</th></tr>
<tr><th>바닥</th><th>벽</th><th>바닥</th><th>벽</th></tr>
<tr><td>벤토나이트 방수재</td><td></td><td>㎡</td><td>1.18</td><td>1.20</td><td>1.15</td><td>1.20</td></tr>
<tr><td>벤토나이트 씰 재</td><td></td><td>ℓ</td><td>0.45</td><td>0.50</td><td>0.15</td><td>0.42</td></tr>
<tr><td>벤토나이트 알갱이</td><td></td><td>kg</td><td>3.38</td><td>1.46</td><td>0.80</td><td>0.80</td></tr>
<tr><td>마 감 졸 대</td><td></td><td>m</td><td></td><td>0.30</td><td>1.1</td><td>1.1</td></tr>
<tr><td>P E 필 름</td><td>0.04㎜</td><td>㎡</td><td>1.20</td><td>1.20</td><td>0.6</td><td>0.8</td></tr>
<tr><td>카 트 리 지</td><td>화약</td><td>개</td><td>10</td><td>10</td><td>10.5</td><td>10.5</td></tr>
<tr><td>콘 크 리 트 못</td><td>32㎜</td><td>개</td><td>10</td><td>10</td><td>10.5</td><td>10.5</td></tr>
<tr><td>와 셔</td><td></td><td>개</td><td>10</td><td>10</td><td>10.5</td><td>10.5</td></tr>
<tr><td>조 인 트 테 이 프</td><td></td><td>m</td><td>-</td><td>-</td><td>1.1</td><td>1.1</td></tr>
<tr><td>방 수 공</td><td></td><td>인</td><td>0.04</td><td>0.05</td><td>0.03</td><td>0.04</td></tr>
<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3</td><td>0.03</td><td>0.02</td><td>0.02</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바탕처리가 제외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지하구조물 외부 방수공사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방수공사후 보호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방수재의 상호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⑦ 벤토나이트 매트의 규격은 1219×4570×6.4㎜ 기준이며, 벤토나이트 시트 규격은 1220×6700×4.5㎜를 기준한 것이다.
</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 rowspan="3">13.방수공사</td><td>신 설</td><td></td><td>13-1 바탕처리('09년 신설)
(㎡당)<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방 수 공</td><td>인</td><td>0.05</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바탕처리는 면정리, 퍼티, 커팅, 모서리 각처리 및 청소 품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td><td></td></tr>
<tr><td>신 설</td><td></td><td>13-2 프라이머 바름('09년 신설)
(㎡당)<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방 수 공</td><td>인</td><td>0.01</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1</td></tr></table>[주] ① 프라이머 바름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프라이머의 1회 도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은 공구손료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td><td></td></tr>
<tr><td>신 설</td><td></td><td>13-3 방수층 보호재 깔기('09년 신설)
(㎡당)<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방 수 공</td><td>인</td><td>0.01</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1</td></tr></table>[주] ① 본 품은 공구손료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호재는 PE 필름, 발포 PE시트, EVA시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u>보호재는 별도 계상한다.</u></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신설</td><td></td><td>

13-7-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09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1종	2종
방 수 공	인	0.06	0.04
보통인부	인	0.04	0.02

[주]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⑤ 본 품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11040.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공 공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신설</td><td></td><td>

13-7-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09년 신설)

(㎡당)

구 분	단 위	**노출 공법**	비노출 공법
방 수 공	인	**0.10**	0.09
보통인부	인	**0.07**	0.06

[주] ①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⑥ 본 품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표 11040.1 시멘트 혼입 폴리머 방수 시공 공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13.방수공사</td><td>신설</td><td></td><td>13-7-6 규산질계 도포 방수('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방 수 공</td><td>인</td><td>0.05</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4</td></tr></table>[주] ① 규산질계 도포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표 11045.1의 방수 시공 공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td><td></td></tr>
<tr><td>13.방수공사</td><td>신설</td><td></td><td>13-6-2 합성고분자 시트('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합성고분자 시트</th><th>비고</th></tr><tr><td>시 트</td><td>㎡</td><td>1.2</td><td rowspan="3">시트두께 1~2㎜, 폭 1.0m, 1겹 시공시를 기준한 것임.</td></tr><tr><td>방 수 공</td><td>인</td><td>0.04</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시트부착 전용 접착제에 의한 모체와 시트를 전면 접착시키는 단층공법을 기준한 것이다.
④ 본 품은 바닥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에는 품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⑤ 시트 상호 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⑥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시트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td><td></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토목]
6.콘크리트
공사</td>
<td>보완</td>
<td>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7-4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방수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미장공</td><td>인</td><td>0.05</td><td></td></tr>
<tr><td>방수공</td><td>〃</td><td>0.08</td><td></td></tr>
<tr><td>보통인부</td><td>〃</td><td>0.12</td><td></td></tr>
<tr><td>고무아스팔트에멀션</td><td>kg</td><td>2.5</td><td></td></tr>
<tr><td>프라이머</td><td>〃</td><td>0.35</td><td></td></tr>
<tr><td>시멘트</td><td>〃</td><td>1.4</td><td></td></tr>
<tr><td>부직포</td><td>㎡</td><td>1.05</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방수공사후 보호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④ 본 품은 바닥면을 기준한 것이며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 인력품은 20%, 재료비는 부직포를 제외하고 15%까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본 품에는 바탕 청소·정리·표면의 요철부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가열하지 않은 고무아스팔트에멀션을 기준한 것이다.
⑦ 부직포의 상호연결 부분은 5cm이상 겹치도록 한다.
</td>
<td>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7-4 교량방수

1. 도막 방수('09년 보완)
(㎡당)
<table>
<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
<tr><td>방수공</td><td>인</td><td>0.06</td></tr>
<tr><td>보통인부</td><td>인</td><td>0.03</td></tr>
</table>
[주] <u>① 도막 방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u>
<u>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u>
<u>③ 본 품은 방수층의 보호를 위한 누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u>
<u>④ 본 품은 클로로프렌 고무계 바름회수 4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u>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td>
<td></td>
</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토목]
6.콘크리트
공사</td><td>신설</td><td></td><td>2. 시트 방수('09년 신설)
(㎡당)
<table><tr><th>구 분</th><th>단 위</th><th>수 량</th></tr><tr><td>시 트</td><td>㎡</td><td>1.2</td></tr><tr><td>방 수 공</td><td>인</td><td>0.05</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2</td></tr></table>[주] ①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② 본 품은 재료의 할증 및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토치공법에 의한 모체와 시트를 전면 접착시키는 단층공법을 기준한 것으로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시트 상호 연결부분은 10㎝이상 겹치도록 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시트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td><td></td></tr>
</table>

- 제3장 위생 및 소화설비공사(기계설비)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able>
<tr><th>항 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
<td>3. 위생및소화설비</td>
<td>보완</td>
<td>3-2-6 완강기 설치
(개당)
<table>
<tr><th>직 종</th><th>설치품</th><th>비 고</th></tr>
<tr><td>기계설치공</td><td><u>0.5</u></td><td></td></tr>
</table>
[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td>
<td>3-2-6 완강기 설치('09년 보안)
(개당)
<table>
<tr><th>직 종</th><th>설치품</th><th>비 고</th></tr>
<tr><td>기계설치공</td><td><u>0.14</u></td><td></td></tr>
</table>
[주] ①, ② 현행과 동일</td>
<td></td>
</tr>
</table>

- 단순문구 및 오기수정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3. 토공사 (토목,건축)		3-1-2 암석절취 [주]① ~ **건설교통부** ~	3-1-2 암석절취 [주]①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3-1-2 암석절취 [주]① 나. ~ **건설교통부** ~	3-1-2 암석절취 [주]① 나.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4. 조경공사 (토목,건축)		4-7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주]① ~ **건설교통부** ~	4-7 암절개면 보호식재공 [주]①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10. 기계화시공 (토목)		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3. 운반 및 수송 (2) ~ **건설교통부** ~	10-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3. 운반 및 수송 (2)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12. 도로포장및유지 (토목)		12-4-2 일상유지보수 1. 맨홀보수 [주]⑧ ~ **건설교통부** ~	12-4-2 일상유지보수 1. 맨홀보수 [주]⑧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12-5-3 경계블록 2.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콘크리트) [주]⑧ ~ **건설교통부** ~	12-5-3 경계블록 2. 보차도 및 도로 경계블록(콘크리트) [주]⑧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17. 철강및철골 (토목)		17-2-1 표면처리 **나.** 제품표면처리 [주]② ~ **건설교통부** ~	17-2-1 표면처리 **2.** 제품표면처리 [주]②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7. 철골공사 (건축)		7-8 철골 내화 피복뿜칠 [주]⑨ ~ **건설교통부** ~	7-8 철골 내화 피복뿜칠 [주]⑨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1. 적용기준 (설비)		1-27 운반 및 수송 1. 운반 차량의 구분 나. ~ **건설교통부** ~	1-27 운반 및 수송 1. 운반 차량의 구분 나. ~ **국토해양부** ~	기관명칭 변경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1. 적용기준
(토목,건축,설비)</td><td></td><td>1-15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u>제49조</u>, <u>제55조</u>,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td><td>1-15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u>제50조</u>, <u>제56조</u>,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td><td>관련법 조항번호 변경</td></tr>
<tr><td>5. 기초
(토목,건축)</td><td></td><td><u>5-2-5</u>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내용생략”</td><td><u>5-3-4</u>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내용생략”</td><td>오기수정</td></tr>
<tr><td>5. 기초
(토목,건축)</td><td></td><td>5-18 E.P.S(Expanded Poly Styrene) 블록 성토공법
(<u>10㎡당</u>)
<table>
<tr><th>구 분</th><th>명 칭</th><th>단 위</th><th>규 격</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2">자 재</td><td>E.P.S블록</td><td>개</td><td rowspan="2">1,800×900×600</td><td>10.3</td><td></td></tr>
<tr><td>연 결 핀</td><td>〃</td><td>40.0</td><td></td></tr>
<tr><td rowspan="3">인 력</td><td>작업반장</td><td>인</td><td rowspan="3"></td><td>0.11</td><td rowspan="3"></td></tr>
<tr><td>특별인부</td><td>〃</td><td>0.53</td></tr>
<tr><td>보통인부</td><td>〃</td><td>0.37</td></tr>
<tr><td>장 비</td><td>발전기</td><td>시간</td><td>20kW</td><td>0.55</td><td></td></tr>
</table>
[주] 내용생략</td><td>5-18 E.P.S(Expanded Poly Styrene) 블록 성토공법
(<u>10㎡당</u>)
<table>
<tr><th>구 분</th><th>명 칭</th><th>단 위</th><th>규 격</th><th>수 량</th><th>비 고</th></tr>
<tr><td rowspan="2">자 재</td><td>E.P.S블록</td><td>개</td><td rowspan="2">1,800×900×600</td><td>10.3</td><td></td></tr>
<tr><td>연 결 핀</td><td>〃</td><td>40.0</td><td></td></tr>
<tr><td rowspan="3">인 력</td><td>작업반장</td><td>인</td><td rowspan="3"></td><td>0.11</td><td rowspan="3"></td></tr>
<tr><td>특별인부</td><td>〃</td><td>0.53</td></tr>
<tr><td>보통인부</td><td>〃</td><td>0.37</td></tr>
<tr><td>장 비</td><td>발전기</td><td>시간</td><td>20kW</td><td>0.55</td><td></td></tr>
</table>
[주] 내용생략</td><td>오기수정</td></tr>
<tr><td>10. 기계화시공
토목)</td><td></td><td>10-40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4. 1회 사이클 시간
cm = T1 + T2
T1 = 1스트록 시간
T2 = 정치시간(10분)
$T1 = \frac{\ell}{R + Pe} \times 100$
R : 굴착면의 분당 회전속도
Pe: 굴착면 1회전당 컷터의 투과깊이(cm/회)
[주] 내용생략</td><td>10-40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4. 1회 사이클 시간
cm = T1 + T2
T1 = 1스트록 시간
T2 = 정치시간(10분)
$T1 = \frac{\ell}{R \times Pe} \times 100$
R : 굴착면의 분당 회전속도
Pe: 굴착면 1회전당 컷터의 투과깊이(cm/회)
[주] 내용생략</td><td>T1의 “+”를 “×”로 오기수정</td></tr>
<tr><td>11. 기계경비
(토목)</td><td></td><td>11-3 운전경비산정
<table>
<tr><th>분류번호</th><th>기 계 명</th><th>규 격</th><th>주연료
(ℓ/hr)</th><th>잡재료
(주연료의%)</th><th>조종원
(인/일)</th><th>건설기계
조장
(인/일)</th></tr>
<tr><td>3801-<u>0200</u></td><td>콘크리트조면마무리기</td><td>7.95m
12</td><td>3.9
휘발유5.1</td><td>18
6</td><td>1
1</td><td>-
-</td></tr>
</table></td><td>11-3 운전경비산정
<table>
<tr><th>분류번호</th><th>기 계 명</th><th>규 격</th><th>주연료
(ℓ/hr)</th><th>잡재료
(주연료의%)</th><th>조종원
(인/일)</th><th>건설기계
조장
(인/일)</th></tr>
<tr><td>3801-<u>0795</u>
<u>0120</u></td><td>콘크리트조면마무리기</td><td>7.95m
12</td><td>3.9
휘발유5.1</td><td>18
6</td><td>1
1</td><td>-
-</td></tr>
</table></td><td>오기수정</td></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고</th></tr>
<tr><td>11. 기계경비
(토목)</td><td></td><td>11-4 건설기계 가격표
<table>
<tr><th rowspan="2">기 종</th><th rowspan="2">분류번호</th><th colspan="2">가격</th></tr>
<tr><th>₩</th><th>$</th></tr>
<tr><td>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td><td>0610-0150</td><td></td><td><u>1,250</u></td></tr>
</table></td><td>11-4 건설기계 가격표
<table>
<tr><th rowspan="2">기 종</th><th rowspan="2">분류번호</th><th colspan="2">가격</th></tr>
<tr><th>₩</th><th>$</th></tr>
<tr><td>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td><td>0610-0150</td><td><u>1,250</u></td><td></td></tr>
</table></td><td>오기수정</td></tr>
<tr><td>11. 기계경비
(토목)</td><td></td><td>11-4 건설기계 가격표
<table>
<tr><th rowspan="2">기 종</th><th rowspan="2">분류번호</th><th colspan="2">가격</th></tr>
<tr><th>₩</th><th>$</th></tr>
<tr><td>콘크리트롤러페이버</td><td>3805-<u>0012</u></td><td></td><td>63,357</td></tr>
</table></td><td>11-4 건설기계 가격표
<table>
<tr><th rowspan="2">기 종</th><th rowspan="2">분류번호</th><th colspan="2">가격</th></tr>
<tr><th>₩</th><th>$</th></tr>
<tr><td>콘크리트롤러페이버</td><td>3805-<u>0120</u></td><td></td><td>63,357</td></tr>
</table></td><td>오기수정</td></tr>
<tr><td>19. 관부설및접합
(토목)</td><td></td><td>19-14-2 강관접합
<table>
<tr><th rowspan="2">구분
관경
(mm)</th><th colspan="2">두께
(mm)</th><th rowspan="2">바깥
지름
(mm)</th><th colspan="2">용 접 봉
(kg)</th><th colspan="2">용 접 공
(인)</th><th colspan="2">장비가동시간
(hr)</th></tr>
<tr><th>A종</th><th>B종</th><th>A종</th><th>B종</th><th>A종</th><th>B종</th><th>A종</th><th>B종</th></tr>
<tr><td>700</td><td>7.0</td><td>6.0</td><td>711.2</td><td>1.60</td><td>1.30</td><td>1.21</td><td>0.98</td><td>1.52</td><td>1.24</td></tr>
<tr><td>800</td><td>8.0</td><td>7.0</td><td>812.8</td><td>2.30</td><td>1.90</td><td>1.58</td><td>1.31</td><td>2.33</td><td>1.92</td></tr>
<tr><td>900</td><td>8.0</td><td>7.0</td><td>914.4</td><td>2.60</td><td>2.10</td><td>1.95</td><td>1.57</td><td>3.50</td><td>2.83</td></tr>
<tr><td>1,000</td><td>9.0</td><td>8.0</td><td>1,016</td><td>3.50</td><td>2.90</td><td>2.33</td><td><u>1.93</u></td><td>4.67</td><td>3.87</td></tr>
<tr><td>1,100</td><td>10.0</td><td>8.0</td><td>1,117.6</td><td>4.60</td><td>3.20</td><td>2.73</td><td><u>1.90</u></td><td>5.83</td><td>4.06</td></tr>
</table></td><td>19-14-2 강관접합
<table>
<tr><th rowspan="2">구분
관경
(mm)</th><th colspan="2">두께
(mm)</th><th rowspan="2">바깥
지름
(mm)</th><th colspan="2">용 접 봉
(kg)</th><th colspan="2">용 접 공
(인)</th><th colspan="2">장비가동시간
(hr)</th></tr>
<tr><th>A종</th><th>B종</th><th>A종</th><th>B종</th><th>A종</th><th>B종</th><th>A종</th><th>B종</th></tr>
<tr><td>700</td><td>7.0</td><td>6.0</td><td>711.2</td><td>1.60</td><td>1.30</td><td>1.21</td><td>0.98</td><td>1.52</td><td>1.24</td></tr>
<tr><td>800</td><td>8.0</td><td>7.0</td><td>812.8</td><td>2.30</td><td>1.90</td><td>1.58</td><td>1.31</td><td>2.33</td><td>1.92</td></tr>
<tr><td>900</td><td>8.0</td><td>7.0</td><td>914.4</td><td>2.60</td><td>2.10</td><td>1.95</td><td>1.57</td><td>3.50</td><td>2.83</td></tr>
<tr><td>1,000</td><td>9.0</td><td>8.0</td><td>1,016</td><td>3.50</td><td>2.90</td><td>2.33</td><td><u>1.90</u></td><td>4.67</td><td>3.87</td></tr>
<tr><td>1,100</td><td>10.0</td><td>8.0</td><td>1,117.6</td><td>4.60</td><td>3.20</td><td>2.73</td><td><u>1.93</u></td><td>5.83</td><td>4.06</td></tr>
</table></td><td>오기수정</td></tr>
</table>